



탄탄한 조세재정  
튼튼한 미래한국

202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 KIPF

International Symposium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2022.11.03 (목) 14:00 ~ 16:50



### 프로그램

#### 개 회

14:00~14:30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주제발표

14:30~15:00	발표 1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15:00~15:30	발표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15:30~15:40	휴식	

#### 종합토론

15:40~16:40	좌장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최성훈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Ross Smith IPSASB 국장		
16:40~16:50	폐회	

### 발표자 및 토론자

#### 개회

##### 개회사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2021 - 현 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2021 - 현 재 기획재정부 세세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14 - 현 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2018 -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축사



**유승원** | 한국회계학회 회장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회계학 박사

- 2021 - 현 재 한국회계학회 회장
- 2005 - 현 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1 - 2003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997 - 2005 홍콩 과기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 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 발표

##### 발표 1



**최연식** |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전공)/한국공인회계사

- 2011 - 현 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 교수
- 2016 - 현 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자문위 자문위원
- 2015 -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상임이사
- 2006 - 2007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행정사무관
- 2003 - 2006 KPMG 삼정회계법인 시니어

##### 발표 2



**Manj Kalar** | Kalar Consulting 대표  
캔터베리대학교 학사/영국공인회계사, 공인재정회계사, Prince2 Practitioner

- 2021 - 현 재 Kalar Consulting 대표
- 2016 - 2017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 공공부문장
- 2011 - 2016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 중앙정부·재정관리 기술매니저
- 2007 - 2011 영국 지역사회·지방행정부 정부통합결산서 서브매니저

### 발표자 및 토론자

#### 종합토론

##### 좌장



**김봉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회계학 박사

2012 - 현 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0 - 2012 미국 American University 경영학과 조교수  
2006 - 2006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2002 - 2005 한국 다우케미칼 자금부장  
1993 - 1998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 토론자



**박성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 회계학 박사/미국공인회계사

2022 - 현 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2016 - 2022 인디애나대학교 사우스 밴드 경영대학 부교수  
2015 - 2016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 회계학과 강사  
2008 - 2010 BGBC 파트너스 Associate

##### 토론자



**이은경**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석사/한국공인회계사

2020 - 현 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2004 - 2020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분석관  
1997 - 2004 PWC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 발표자 및 토론자

#### 종합토론

##### 토론자



**최성훈** |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사/한국공인회계사

2012 - 현 재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  
2022 - 현 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2006 - 2012 PwC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 토론자



**Ivor Beazley**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캠브리지 대학교 학사/영국공인회계사

2017 - 현 재 OECD 예산공공지출국 재무관리및보고 팀장  
2003 - 2017 세계은행(WB) 재정정책 및 지속가능성장부 수석공공정책분석관  
1995 - 2003 영국 국제개발부(DFID) - 영국원조프로그램 부국장

##### 토론자



**Ross Smith**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  
맥마스터대학교 학사/캐나다공인회계사

2020 - 현 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프로그램 및 실무국장  
2017 - 2020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부국장  
2013 - 2017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실무 총괄  
2006 - 2013 KPMG 캐나다·일본 시니어 매니저

### Program

#### Opening Ceremony

14:00~14:30	Opening Remarks	<b>Kim, Jae Jin</b>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ongratulatory Remarks	<b>Yoo, Seung Weon</b> President of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MoU Signing Ceremony	KIPF – KAA

#### Presentation

14:30~15:00	Presentation 1	<b>Korea cas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b> <b>Choi, Youn-Sik</b>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15:00~15:30	Presentation 2	<b>UK case: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b> <b>Manj Kalar</b> (Principal Consultant, Kalar Consulting)
15:30~15:40	Break	

#### Discussion

15:40~16:40	Chair	<b>Kim, Bong Hwan</b> (Professor, SNU)
	Panel	<b>Park, Sung Joo</b> (Director, MOEF) <b>Lee, Eun Kyung</b> (Director, NABO) <b>Choi, Sung Hoon</b> (Auditor, BAI) <b>Ivor Beazley</b> (Lead, OECD) <b>Ross Smith</b> (Technical Director, IPSASB)
16:40~16:50	Closing	

### Speakers and Discussants

#### Opening Ceremony

##### Opening Remarks



**Kim, Jae Jin** | President of KIPF

Ph.D. in Economics, Michigan State University

- 2021 - Curr.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1 - Curr. Member, Deliberativ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Tax System, MOEF
- 2020 - Curr. Member, Division for Enforcement of Fair Taxation, Committee for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s
- 2014 - Curr. Vice President, Korea Tax Research Forum
- 2018 - 2020 Vice President, KIPF

##### Congratulatory Remarks



**Yoo, Seung Weon** | President of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Ph.D. in Accounting,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 2021 - Curr. President,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 2005 - Curr.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 2001 - 2003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at Sungkyunkwan University
- 1997 - 2005 Assistant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Speakers and Discussants

#### Presentation

##### Presentation 1



**Choi, Youn Sik** |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 KICPA

2011 - Curr.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at Kyung Hee University
2016 - Curr.	Member, Advisory Committee of GAFSC
2015 - 2017	Member, Board of Directors of KICPA
2006 - 2007	Deputy Director,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2003 - 2006	Senior Associate, KPMG Samjong Accounting Co. (Audit and Assurance)

##### Presentation 2



**Manj Kalar** | Principal Consultant, Kalar Consulting  
B.A. from University of Canterbury / FCCA, CPFA, Prince 2 Practitioner

2021 - Curr.	Principal Consultant and Director, Kalar Consulting Ltd
2016 - 2017	Head of Public Sector, ACCA
2011 - 2016	Technical Manager, Central Govt & Financial Management, CIPFA
2007 - 2011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Sub-Consolidation Manager, UK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

### Speakers and Discussants

#### Panel Discussion

##### Chair



**Kim, Bong Hwan** | Professor i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NU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012 - Cur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NU  
2010 - 2012 Assistant Professor, American University, USA  
2006 - 2006 Direct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2 - 2005 Financial Controller, The Dow Chemical Korea  
1993 - 1998 Deputy Director,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Discussant



**Park, Sung Jin** | Executive Director of GAFSC, KIPF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 USCPA

2022 - Curr. Executive Director of GAFSC, KIPF  
2016 - 2022 Associate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2015 - 2016 Instructor,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2008 - 2010 Associate, BGBC Partners, LLP

##### Discussant



**Lee, Eun Kyung** | Director of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Division, NABO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KICPA

2020 - Curr. Director,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Division,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4 - 2020 Analyst, Program Evaluation Bureau, NABO  
1997 - 2004 Manager, PWC Samil Accounting Co.

### Speakers and Discussants

#### Panel Discussion

##### Discussant



**Choi, Sung Hoon** | Auditor of Bureau of Public Sector Internal Audit, BAI

BA in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 - Curr. Auditor, BAI(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22 - Curr. Member, Board of Korea Appraisal Society

2006 - 2012 Manager, PwC Samil Accounting Co.

##### Discussant



**Ivor Beazley** | Lead,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Graduate of Cambridge University / CA(Chartered Accountant)

2017 - Curr. Lead,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2003 - 2017 Lead Public Sector Specialist, Fiscal Policy and Sustainable Growth Unit, World Bank

1995 - 2003 Deputy Head of Governance Department in DFID -UK Aid Program

##### Discussant



**Ross Smith** |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 IPSASB

Graduate of McMaster University / Canadian CPA

2020 - Curr.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 IPSASB

2017 - 2020 Deputy Director, IPSASB

2013 - 2017 Technical Manager, IPSASB

2006 - 2013 Senior Manager, KPMG Canada&Japan

# 목 차

## CONTENTS

### 개회사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3

### 축사

-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7

### 주제발표

- [발표 1]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11

#### Korea cas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 발표자: 최연식 (경희대학교)
- 공동연구자: 조형태 (홍익대학교)  
한승엽 (홍익대학교)

- [발표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65

#### UK case: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 발표자: Manj Kalar (Kalar Consulting)

### 연구 보고서 요약

#### [부 록①] 연구 보고서 요약

- 한국 연구 보고서 요약본..... 102
- 영국 연구 보고서 요약본..... 116

#### [부 록②] 별첨 (주요국 우발부채 주석 발췌)

- ① 한국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주석 5..... 127
- ② 영국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석 29, 30..... 139
- ③ 미국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석 20..... 152
- ④ 호주 2020회계연도 정부 연결재무제표 주석 9A..... 160
- ⑤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165
- ⑥ 캐나다 2020회계연도 공공회계 연결재무제표 주석 7..... 178



202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The 3rd KIPF Public Sector Accrual Accounting International Symposium 2022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개 회 사**

**김 재 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개 회 사

김 재 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입니다.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첫 개최 이래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생주의 회계의 현안과 핵심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새로운 논의의 장입니다.

먼저, 시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Kalar Consulting(칼러 컨설팅)의 Manj Kalar(맨지 칼러) 대표님과 OECD(오이씨디)의 Ivor Beazley(아이버 비즐리) 팀장님, 그리고 IPSASB(입새스비)의 Ross Smith(로스 스미스) 국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님, 경희대 최연식 교수님과 공동 연구진,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이은경 과장님,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최성훈 부감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여파 등은 한국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달러 초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중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급등하고 있어, 이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의 고통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을 탄탄히 유지하여 직면한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정책의 개혁으로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에 대비한다면 이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 3. 재정정책 도구로서의 우발부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발부채’를 주제로 그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여러 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결산서의 주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의 특성상 향후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부채 관리야 말로 국가 재정위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발부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국의 우발부채의 현황을 짚어보고, 영국의 모범사례인 우발부채 승인체계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우발부채의 발생여부를 점검해보는 영국의 사례는 예산과 결산보고가 접목되어 재정정책 도구로서 우발부채를 관리하는 좋은 정책예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정위험 관리 목적으로 우발부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 4. 맺음말

국가회계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앞으로도 공공회계 연구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의미 있는 행사로 실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The 3rd KIPF Public Sector Accrual Accounting International Symposium 2022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축 사

유 승 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 축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장 유승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주최하는 '발생주의 국제 심포지엄'의 세 번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님과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귀한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웹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2. 숨겨진 부채의 재정위험성

2022년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국가들의 전쟁 발발(勃發).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국가채무가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국가부채 산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보수적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은 부채'의 존재는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포지엄에서 다룰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은 과도한 부채가 우리 경제에 유발할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 3.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

국가부채의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우발부채는 지금 당장 부채에 속하지 않지만,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채로 확정되면 국가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 재정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발부채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채의 측정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말처럼 한국 우발부채의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여 ‘측정’하고, 영국 정부의 우발부채 ‘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4. 맺음말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많은 국내외 회계전문가들과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체계적인 부채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이 글로벌 토론의 장으로 성장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발생주의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Presentation

### Korea cas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최연식 경희대학교

조형태 홍익대학교

한승엽 홍익대학교

---

Choi, Youn Sik, Kyung Hee University

Cho, Hyeong-tae, Hongik University

Han, Seung-young, Hongik University





#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연식(경희대)  
조형태(홍익대)  
한승엽(홍익대)

2022년 11월 3일



- I.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II.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현황
- III.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IV.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V. 요약 및 결론



## I.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의 개념

미래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의무 (국제공공부채통계가이드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 ❖ 재정위험으로서 우발부채의 증대성

- 우발부채에 대한 충분한 공시와 대응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 채무를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위기를 촉발한 사례가 다수 보고됨 (Cebotari 2008; IMF 2012)
- 우발부채의 증대성
  - ✓ GDP대비채무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주된 요인 (IMF 2003; Jaramillo and Mulas-Grados 2015)
  - ✓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경제위기 당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비용은 GDP의 50% (Honohan and Klingebiel 2000)
  - ✓ 최근 25년간 전세계 174개 국가가 부담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비용은 GDP의 6% 수준 (IMF 2016)



왜 지금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 증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 3년 누적적자 -113.7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국채발행 등) 확대로 국가채무(01)가 급격히 증가  
 ⚠ 3년 누적증가 286.7조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 최근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악화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Q. 2022년, 지금의 상황은?

- “환율 1,400원대 돌파 공포... 제2 외환위기는 달러 수급에 달렸다” (한겨레 2022.10.3)
- “[한국경제 위기인가] 미국 연준이 최대 뇌관... 가계빚·부동산도 위태” (매일경제 2022.10.2)
- “2008년이 차라리 낫다... 30년간 본격 없는 위기 징후들” (매일경제 2022.10.1)
- “래리 서머스(전 미국 재무장관)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 (조선비즈 2022.9.30)
- “유럽 에너지발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능가할수도” (경향신문 2022.9.29)
- “역사 속 쉼 달리는 경제위기로 끝났다” (주간조선 2022.9.28)
- “영국, 구제금융 위기 맞나... 파운드화 사상 최저 수준” (한겨레 2022.9.27)
- “모건스탠리, 달러 초강세, 금융·경제위기 초래 상황 조성” (매일경제 2022.9.27)
- “한국 아시아서 가장 위험... '제2IMF' 경고 쏟아지는 이유” (매일경제 2022.9.26)
- “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에 잇단 디폴트 위기... 1997년 외환위기 악몽 데자뷔” (이투데이 20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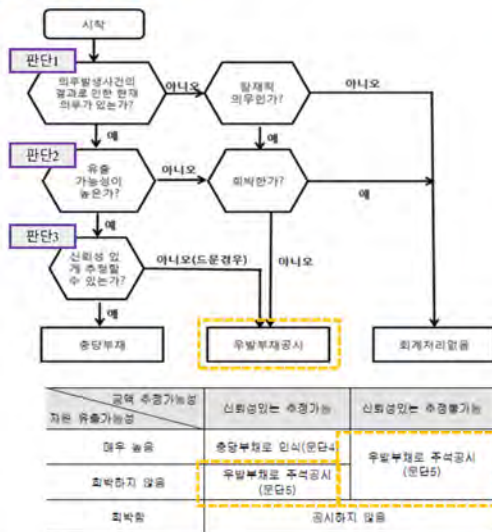
## 🚨 IMF(2016)의 경고 🚨

- ✓ 거시경제 관련 우발부채 현실화는 평균 12년에 한 번씩 나타남
- ✓ 우발부채 현실화는 경제위기에 발생
  -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주로 개도국이 경험
  - 2008년 금융위기: 주로 선진국이 경험

➡ **재정위험 요소인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 증가!!**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우발부채의 인식 및 공시 절차



고도의 전문성  
& 재량적 판단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 우리나라 민간부문에서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 ✓ 소송위험(Litigation risks)
    - 부정적 주가반응(negative stock return) (손성규 등 2013)
    - 자본조달비용 상승(increase in the costs of capital) (박종일·신재용 2014)
    - 감사보수/감사시간 증가(increase in Audit Fees & Audit Hour) (최종학 등 2012, 박종일·곽수근 2013)
  - ✓ 지급보증(Guarantee of payment)
    -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이상규 등 2018, 김진태·심종진 2020)
- 규제기관 (regulations)
  -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사전적: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사후적: 공시 및 회계감리, 감리지적사례
  -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 사전적: 감사업무 수행 유의사항/매뉴얼
    - 사후적: 감리지적사례



# 01 우발부채의 관리체계는 필요한가?



## ❖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 우발부채 관리의 구조적 한계

-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 시장규율의 제약
  - ✓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 우발부채의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실무적 어려움
  - ✓ 회계분야 전문성: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에도 고도의 전문성 필요
  - ✓ 재정분야 전문성: 개별 재정활동의 속성/재정효과 등에 대한 결산담당부서의 정보 부족
- 불리한 재정활동결과의 보고를 회피할 유인을 가진 보고실체의 재량적 의사결정

사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결 (2022년 8월)

- 2012년 1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배상청구액 46억7,950만 달러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 2022년 8월 중재재판부는 우리정부가 론스타 측에 약 2,925억 원(청구액의 4.6%에 해당)을 지급하라고 판결

⇒ 지난 10년간 국가 및 관련 중앙관서(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법무부 등)의 결산보고서에 공시되지 않음

∴ 정부부문에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지 않을 위험 → 공식적 절차를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 II.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현황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우발부채 집계 및 공시 기준: 국가회계예규 제8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문단16] 공시항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회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 [문단18] 공시예외

- (1)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특징

-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의 예시**(지급보증, 담보제공, 소송, 약정사항 등)
- 공시 여부, 공시 수준 등은 **실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
-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

현황?

???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유형	분량		내역
	페이지수	비중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2	11.8%	- 원고인 경우: 1조6,467억원 (3,655건) - 피고인 경우: 8조9,752억원 (4,930건)
②담보제공자산	1	5.9%	- 채권최고액 89억원 (3개 부처)
③파생상품	4	23.5%	- 자산(장부금액) 1,450억원 - 부채(장부금액) 1조6,699억원
④(지급)보증	1	5.9%	- 지급보증금액 13조495억원 (2개 부처)
⑤중요한 계약사항	5	29.4%	- 건설공사계약: 1개 부처 5건 - 업무위탁계약: 4개 부처 11건 - 기타: 6개 부처
⑥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	- 해당 없음
⑦최소운영수입보장	1.5	8.8%	- 지급액: 5,137억원 (2개 부처) - 보장사업 2개 부처 16건
⑧기타	2.5	14.7%	- 자금보증: 한도 625백만달러 (1개 부처) - 수공 금융비용 지원: 3,400억원 (1개 부처) - 토지복구 의무 (1개 부처) - PSO 보상: 3528억원 (1개 부처) - 지하철공사 금융비용 지원
합계	17	100%	

- 8개 공시항목 표준화
- 파생상품/계약사항 비중이 큼
-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분량은 우발부채 주석의 전체 분량에서 세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세부항목 페이지 수 ÷ 우발부채 주석의 전체 페이지 수)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 원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310,088,777	국회교육부	30	30,554,678,480
교육부	7	9,117,289,894	해양수산부	38	847,859,961,2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34,961,830,912	중소벤처기업부	808	309,998,777,209

-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회	5	495,005,000	공직선거법 위반 고지식 선거운동원	1	50,000,000
대법원	89	79,937,498,279	식용염이용이원저	64	5,20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326,320,800	국가안전기획원	84	2,380,000,000

② 담보제공자산 (단위: 원)

중앙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 최고액	담보제공액	담보종자	사입금액
선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15,417,308,803	28,847,000	0	국인보증	-
공공기관	부처 민영	9,705,316,000	300,000,000	0	외국인 및 국제공인 보증	-
	민영 (신용보증기금)	799,942,238	1,000,000,000	0	공인 보증보장	수용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부	단기금융상품	4,292,191,833	3,133,639,329	0	민간인 보증보장	한국자산신탁보증서
	장기금융상품	2,317,000,000	888,896,275	0	민간금융 보증	부사행 및 기타보증 등

- 원고/피고로 구분하여 중앙관서별 소송건수/소송가액 집계
- 중요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사건개요, 승소/패소 가능성 등)은 없음

- 3개 중앙관서 5건을 [표]로 집계
- 질적 정보(담보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설명 없음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우리나라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위험회피목적		기타연계		
	소계	순자산변동	평가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합계	346,904,908,773	(1,007,736,540)	421,972,536,504	(81,847,629,726)	(1,907,736,540)	191,384,871,194	911,690,273,879	
통화손익	소계	475,837,509,904	405,197,690	421,872,336,304	48,859,063,403	405,197,690	648,589,168,042	
	통화인도	448,868,542,422	-	422,806,943,543	12,039,539,879	-	516,363,038,075	
	물류노상	23,692,728,743	405,197,690	(13,017,212,681)	36,776,941,424	405,197,690	29,347,053,547	
	계당통화증권	111,040,260	-	-	111,040,260	-	111,040,260	-
	국고통화증권	(1,517,160)	-	-	(1,517,160)	-	-	(1,517,160)
리스크관리	소계	(129,929,893,126)	(535,928,271)	-	(129,929,893,126)	(535,928,271)	2,586,763,162	
	이익잉여금	(129,929,893,126)	(535,928,271)	-	(129,929,893,126)	(535,928,271)	2,586,763,162	
	이익잉여금보통	-	-	-	-	-	-	
신용위험	-	-	-	-	-	-	-	

- 파생상품 유형별 평가손익/장부금액 정보 [표]로 집계
- 민간기업 재무제표의 파생상품 주석과 형식/내용과 유사함
-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우발부채의 성격/위험/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④ 지급보증 (단위: 원)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권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회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0,930,00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당사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국고보증공시	계보채상환기금채권	-	3,480,000,000,000
		한국실적채권	10,180,000,000,000	10,480,000,000,000
	한국신용채권	기간신용채권	750,000,000,000	520,000,000,000
합계			10,930,000,000,000	12,480,000,000,000

- 한편, 국가보증처 보증기금의 보증채무 규모는 565,492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당사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국가보증처	국인은행	장기차관 대부	487,136,156,980	492,446,893,000
		농협은행	88,355,996,429	87,042,232,000
합계			565,492,153,409	559,489,125,000

- 국가재정법(92①) 국회 동의사항임을 설명
- 2개 중앙관서 5건 [표]로 집계
- 지급보증 실행 가능성,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⑤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계약처	계약기간	비고
국립사립간지자체간 간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4개사	2019.11.01. - 2022.06.30	간접총액 (59,300억(과))

□ 업무위탁계약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100% 현금증자하여 ㈜상록골프연리초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계약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을 적기 조달하기 위하여 방위 산업체 등과 무기체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구분	대상	계약처	계약기간
건조계약	300톤 경비정 3척	상업법인이	2020.12.14. - 2024.05.27.
건조계약	200톤 경비정 4척	상업법인이	2020.08.20. - 2023.08.05.
건조계약	500톤 경비정 2척	차별차용공인	2020.09.29. - 2023.09.12.

- 건설공사계약/업무위탁계약/기타계약으로 구분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내용을 기재
- [표]와 서술을 혼용하여 단순 정보전달 중심으로 기재
- 계약별 우발상황의 속성(원인)/자원유출가능성/예상손실금액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⑥ 전제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을 직접 기재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관서	회계상목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국토교통부	교육회계	도로계정	327,217,000,000	411,891,900,000	287,100,000,000
해양수산부	교육회계	항만계정	30,871,048,630	102,101,771,300	42,528,760,490
계			358,088,048,630	513,993,671,300	329,628,760,490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관서	회계상목	구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국토교통부	교육회계 도로계정	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6.11부터 2081	협약수입의 80% 지급분
			대전-논산고속도로	2002.12부터 2081	협약수입의 80% 지급분 (사업원가회계 포함)
			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1부터 2081	협약수입의 70% 지급분 (사업원가회계 포함)
			수도권(기)고속도로	2017.12부터 2081	협약수입의 80% 지급분 (사업원가회계 포함)
			부산-울산고속도로	2008.12부터 2081	차익(차분)유출금 상환보장(30억/년)
			서울-충청고속도로	2009.08부터 18년	1~5년 : 협약수입의 90% 지급분 6~10년 : 협약수입의 70% 지급분
			간척도로	2008.10부터 15년	11~15년 : 협약수입의 60% 지급분 - 5%의 차익(차분) 유출금 (사업원가회계 포함)
			간척도로	2008.10부터 15년	협약수입의 80% 지급분

- 2개 중앙관서 지급액 요약물 [표]로 집계
-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별 협약 내용을 [표]로 요약
- 각 사업에서 우발사항의 발생원인, 의무부담가능성, 지급예상액 등에 대한 예측정보 없음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운용사 등과 자금보 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금액은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 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USD)

구분	2021년	2020년
자금보충금액 환도	514,000,000	628,000,000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환경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09.9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 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 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공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는 채무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액	340,000,000,000	360,000,000,000	340,000,000,000	296,400,000,000	277,800,000,000

- 여성가족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장기임차(1995.11 - 2024.10)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420.716㎡)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원의 유출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

-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계약, 협약, 정책 등을 [표]와 서술을 혼용하여 정보전달 중심으로 기재
- 일부 사안의 경우 우발사항의 속성, 자원유출가능 성, 부담예상액의 합리적 추정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포함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의 공시 추이

우발사항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원고	○	○	○	○	○	○	○	○	○	○	○
	피고	○	○	○	○	○	○	○	○	○	○	○
②담보제공자산	임차인 권리보전	○	○	○	○	○	○	○	○	○	○	○
	전환대출 보증	-	-	-	-	○	○	○	○	○	○	○
③파생상품 내역	차입금	○	○	○	○	○	-	-	-	-	-	-
	통화관련	○	○	○	○	○	○	○	○	○	○	○
	이자율관련	○	○	○	○	○	○	○	○	○	○	○
	신주인수권	-	-	-	-	○	-	-	-	-	-	-
④지급보증(보증채무)	기타	○	-	-	○	○	○	○	○	○	○	○
	건설공사 계약	○	○	○	○	○	○	○	○	○	○	○
⑤중요한 계약사항	업무위탁 계약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⑥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	-	해당없음	○	-	-	-	-	해당없음	-	-	-	-
⑦최소운영수입보장	도로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항만	-	-	○	○	○	○	○	○	○	○	○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자금보증 약점	-	-	-	-	-	-	-	-	-	-	○
	수공 금융비용 지원	○	○	○	○	○	○	○	○	○	○	○
	토지원상복구	-	○	○	○	○	○	○	○	○	○	○
	철도운영자 PSO 보상	○	○	○	○	○	○	○	○	○	○	○
	지하철공사 이차지원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8개 공시항목 유지
- 유형별로 세부항목의 추가/삭제 등의 미세한 변화는 존재
- '천재지변' 등은 "해당없음" 으로 표시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48개 중앙관서의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공시 현황

패널A. 유형별 공시 중앙관서의 현황

유형	중앙관서 수	비중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48	100%
②담보제공자산	5	10.4%
③파생상품 내역	8	16.7%
④지급보증(보증채무)	3	6.3%
⑤중요한 계약사항	12	25.0%
⑥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0	0%
⑦최소운영수입보장	4	8.3%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8	16.7%

- 9개 중앙관서(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는 기밀유지 사유로 미공개 (총 57개 중앙관서 중 48개 기재)
- '소송사건' 모두 기재
- '계약사항' 12곳 기재
- '파생상품' 8곳 기재
- 중앙관서의 87.5%가 2개 항목 이하 기재

패널B. 중앙관서별 공시유형의 수

공시 유형 수	중앙관서 수	비중
5개 이상	0	0%
4개	1	2.1%
3개	5	10.4%
2개	9	18.8%
1개	33	68.7%
합계	48	100%

(주) 비중은 해당 항목을 공시한 중앙관서의 수를 우발사항 주석을 공시한 중앙관서 수(48개)로 나누어 계산함.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5개년 평균	비중
계류중인 소송사건	9,948,167	11,259,546	9,132,891	8,137,628	10,621,939	9,820,034	32.9%
담보제공자산	41,701	13,921	11,643	9,570	8,932	17,153	0.1%
지급보증	24,241,585	21,130,463	17,023,441	15,336,383	13,049,489	18,156,272	60.8%
중요한 계약사항	30,423	368,940	354,938	497,286	550,943	360,506	1.2%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	447,322	394,169	350,016	339,626	513,718	408,970	1.4%
기타 우발부채	1,065,735	890,805	1,205,494	961,717	1,372,800	1,099,310	3.7%
총합계	35,774,932	34,057,844	28,078,423	25,282,210	26,117,821	29,862,246	100.0%
GDP 대비 비중	2.06%	1.86%	1.78%	1.31%	1.35%	1.59%	



## 02 우리나라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특징

- 8가지 공시유형이 표준화
  - ✓ 발생주의 도입한 2011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공시유형 체계에 변화 없음**
  - ✓ 중앙관서별 특성으로 인해 **공시유형의 편차** 큼(계류중인 소송사건 이외 1-2개 항목 공시)
- 우발항목 이외 비우발성 항목이 포함
  - ✓ 우발사항과 **관련성 낮은 주석항목**(예, 파생상품 등)이 포함
  - ✓ 통상적 계약사항(건설공사, 업무위탁, 임대차 등), 법률/정책 행위(주파수할당 등) 등이 포함
- 과거 발생한 객관적 사실전달 중심
  - ✓ 대부분 공시항목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 관련 내용을 **단순히 집계** (명세표/목록표)
  - ✓ 미래 잠재적 위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우발상황의 성격/발생가능성, 부담예상액 등) **부족**
- 결산부서에 의한 사후적 파악 및 집계
  - ✓ 중앙관서의 **결산부서**가 결산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우발부채 항목을 파악 및 집계
  - ✓ 재무제표 주석 기재 이외 사전적/사후적 **관리절차 부재**
- 외형적 완전성은 확보하였으나, 실질적 충실성은 미흡
  - ✓ 국가는 개별 중앙관서가 공시한 정보를 단순 취합하여 **누락없이** 국가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 ✓ 국가 차원의 종합적 분석이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반영한 **추가정보**가 사실상 전무

## Ⅲ.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0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영국

##### 국가재무제표 주석29와 주석30의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주석29 IAS37에 따라 공시되는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종합(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실제별 주요 항목(Individually significant contingent liabilities)
	·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연금 결손보전 약정(Commitments in relation to pension scheme deficits)
주석30 의회에 보고하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	- 국방부 관련(Ministry of Defense)
	- 법적 분쟁(Legal claims)
	- 계류중인 소송사건(Ongoing litigation)
	-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및 협약상 의무(Civil nuclear liabilities)
	· 계량화 가능한 우발자산(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계량화 가능한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 잠재적 비용(Potential costs of the government's 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 주요 항목(Individually significant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 계량화할 수 없는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Non-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 기타

- 회계기준에 의해 공시하는 우발부채(주석29)와 의회에 보고하는 우발부채(주석30)를 구분
- 계량화 가능성에 따른 분류
-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 체계화

### 0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영국

##### 주석29 ISA37에 따라 공시하는 우발부채

(종합)	2018-20	2016-18
	£bn	£bn
Export guarantees and insurance policies	16.6	15.7
Clinical negligence	49.7	50.8
Taxes subject to challenge	2.2	2.8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2.1	3.5
EU related quantified contingent liabilities	1.0	-
Pension Protection Fund	2.7	1.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8	0.1
Other	7.0	0.7
<b>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b>	<b>84.6</b>	<b>80.1</b>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Entity	Contingent liability	2018-20	2016-18
		£bn	£bn
Department on Health and Social Care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s the actual or potential defendant in a number of actions regarding alleged clinical negligence. Part of this liability has been recognised as a provision against the 2018-20 financial year, and the contingent liability of £49.7 billion (2016-18: £50.8 billion) reflects the value of a high number of claims against the department's liability, with amounts involved.	49.7	50.8
HM Revenue & Customs	HM Revenue & Customs reports taxes and customs duties through issuing and recovering guarantees and retention orders. It issues guarantees and customs retention orders on behalf of merchant's goods and warehouse operators. The UK and overseas merchant's and warehouse operators of bonded goods applied for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16.6	15.7

#####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

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have arisen as a result of commitments made by senior WGA entities to provide funding for pension liabilities of individual pension schemes. Should those schemes require deficits to be funded.

Ministry of Defence

The Ministry of Defence has a number of 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which include third party insurances for damage caused by low altitude flying operations (e.g. potential costs of decontamination work on sites yet to be identified), potential liabilities that arise from its service liability rates in excess of those covered by the Service Life Insurance scheme, potential liabilities related to...

##### 주석30 의회에 보고하는 우발부채

(종합)	1 April 2019	Increased (decreased) in year	Liabilities crystallised in year	Obligations assumed in year	31 March 2020
	£bn	£bn	£bn	£bn	£bn
PF1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180.0	76.8	(3.4)	(3.4)	250.0
Guarantees (including EIB)	38.3	3.9	(0.9)	(0.7)	40.6
Indemnities	33.0	0.1	-	(0.6)	32.5
Letters of comfort	23.8	1.0	-	-	24.8
EIB Guarantees	81.6	-	-	-	81.6
<b>Total</b>	<b>306.7</b>	<b>81.8</b>	<b>(4.3)</b>	<b>(4.7)</b>	<b>379.5</b>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Entity	Contingent liability	2019-20	2018-19
		£bn	£bn
Pension Protection Fund (PPF)	Pension Protection Fund (PPF) contingent liabilities. Claims which are considered payable are recognised as contingent liabilities. The aggregate value of all contingent claims as at 31 March 2020 is estimated at £250 billion, calculated on the same basis as for the PPF 2020 financial year.	250.0	180.0

#####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

Notification to leave the EU - Article 50

In last year's WGA, a non-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y was disclosed relating to the UK's submission, at that point in time, of its notification to leave the EU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The impact of these events has not reflected in the 2018-19 WGA, as the UK remained a member of the EU during the 2018-19 financial year.

- 전체 규모를 [표]로 제시 (금액크기: 주석29 (84.6) < 주석30 (379.5))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항목을 분류 (미래 자원의 유출 규모(추정손실)가 계량화되지만, 부채로 미인식)
- 우발사항 관련 주요 정책/개요/손실에 상응/인행경과/향후진행 등을 기술

### 0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종합비교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공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환경 관련</li> <li>· 보인 및 보증 관련</li> <li>· 사회보험사업</li> <li>· 농업/저소득/의료 등 보조사업</li> <li>· 기타</li> <li>· 주요 실체관련</li> <li>· 국제조약/협약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분쟁</li> <li>· 계류중인 소송사건</li> <li>· (지급)보증</li> <li>· 배상/보상</li> <li>· 국제조약/협약상 의무</li> <li>· 연금 결손보전 약정</li> <li>· 국방부 정책 관련</li> <li>· 약정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중인 소송사건</li> <li>· 배상/보상 및 (지급)보증</li> <li>·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li> <li>· 환경복원 및 오염정화</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분쟁 및 소송</li> <li>· (지급)보증 및 배상</li> <li>·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중인 소송사건</li> <li>· (지급)보증</li> <li>· 기타</li> <li>· 조세불복심사</li> <li>· 국제기구</li> <li>· 보험사업</li> </ul>	
유사 항목	○	×	×	○	○	
별도 주식	○	×	×	×	○	
(충당)부채 인식 내역(금액)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회계처리/공시기준	설명 여부	별도 주식	별도 주식	포함	포함	
계량화 가능성에 따른 구분	중요성기준/금액	미설정	미설정	설정	미설정	
[표]의 성격과 금액 정보	총괄 정보	×	○	○	○	
	항목별 정보	○(일부)	○	○	○	
	기말(발생)금액	○	○	○	○	
	증가/감소 금액	×	○(일부)	○	×	
발생가능성이 낮은 항목 공시	부채 계상 금액	○	○(일부)	×	○	
발생가능성이 낮은 항목 공시	×	○	○	×	×	
분량	주식 내 비중	65%	107%	49%	10.9%	4.9%

### 0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해외 주요 국가 사례의 시사점

- **잠재적 영향의 계량화 가능성에 따른 우발부채 주식의 구조화** (영국/호주/뉴질랜드)
  - ✓ 우발상황의 발생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적 불확실성 감소 기대
  - ✓ 우발상황의 중대성(발생확률/부담액상액)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가능
- **우발부채의 공시기준 구체화**
  - ✓ 의무부담행위와 별도로 정책/제도(예. 사회보험사업, 저소득/의료 보조사업 등)에 따른 재정요소(순부담) 예측을 주식으로 공시(미국/영국/캐나다)
  - ✓ 중요성기준 초과 항목은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뉴질랜드)
- **의무의 속성에 따른 우발부채 주식의 세분화**
  - ✓ 계약/협약/법률 등 명시적 근거에 기초한 의무 관련 주식(미국/뉴질랜드/캐나다)
  - ✓ 환경보존/개선에 대한 국내외 요구(회계기준/법률 등)에 따른 의무 관련 주식(미국/캐나다)
  - ✓ 정형적 우발상황(소송/지급보증/담보채권 등) 및 정책/제도 등 운영에 따른 의무 관련 주식
- **계량화 할 수 없는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내용의 체계화**
  - ✓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려울수록 원론적/피상적 설명의 위험 가중
  - ✓ 개별 사안의 개요/우발적 요소/진행경과/향후전망 등으로 설명내용을 체계화할 필요(주요 5개국 공통)



## IV.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04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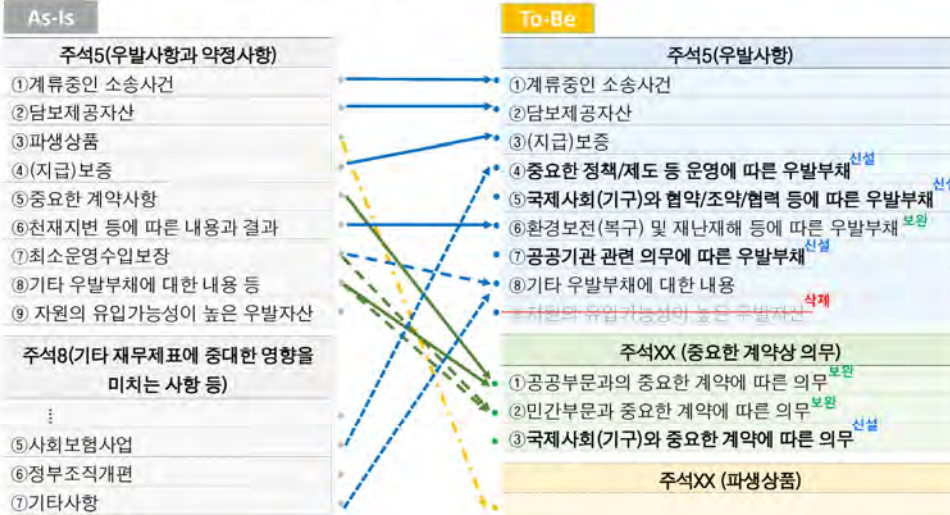


#### ❖ 우발부채의 관리목표 설정

			제안1	제안2	제안3	제안4
주석공시 관점	정보내용	우발부채의 공시품질 제고 (설명 충실성 / 공시항목의 완전성)	✓	✓	✓	✓
	정보형식	해외 벤치마크와의 정합성 확보 (계량화가능성 / 발생가능성)	✓	✓	▽	▽
재정실무 관점	보고실체	자발적 공시품질 개선 노력 유도	▽	▽	✓	✓
	실무부서	보고실체 내 관련 부서의 통합적 관리체계로 고도화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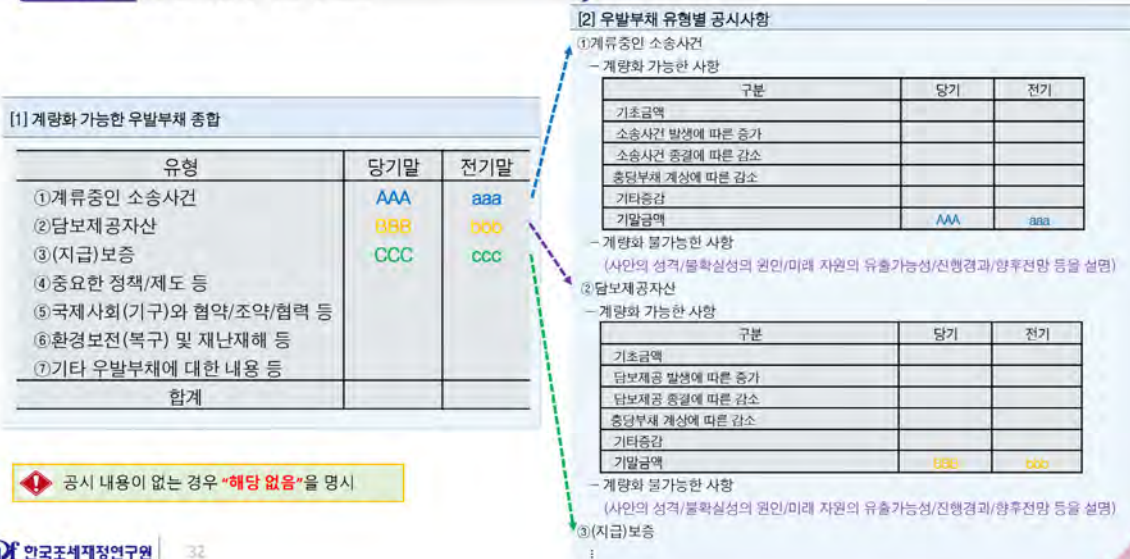
## 04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제안1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 04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제안2 우발사항 주석의 구조화



❗ 공시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명시

## 04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제안3 | 보고실체 내부에 우발부채의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를 보완

- ✓ (단기) 중앙관서별 핵심 정책/제도(‘우발사항’ 주석) 및 중요 계약(‘계약상 의무’ 주석)의 “일람표”를 추가
- ✓ (중기) 우발사항의 발생가능성/재정영향 등을 추가하여 “일람표”를 “우발사항 검토표”로 고도화
  - 우발사항의 속성 검토 결과: 발생가능성(예, 높음/중간/낮음) & 재정영향(예, 중대/보통/미미)
  - 재무제표 주석(우발사항 또는 계약상 의무)에 포함 여부(미포함 사유를 표시)

주석공시의 완전성 ↑

주석공시의 충실성·완전성 ↑

⚠ 중앙관서 내 정책/사업부서 - 결산부서 사이의 협력체계(업무분장 및 권한/책임) 제도화가 필수적 ~!!

#### ❖ (장기) 핵심 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서 우발부채의 재정위험 반영을 제도화

- ✓ 수립단계: 우발사항의 파악 및 재정영향 추계 의무화
- ✓ 운용단계: 예산심의회 우발부채 재평가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기적 재심의

💡 영국의 “우발부채 승인체계”

## 04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제안4 | 보고실체 외부에 준(準)시장규율 기반조성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사후관리 확대

- ✓ 중앙관서별 우발부채 공시 현황분석 자료를 발간(매년)
- ✓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 우발부채 공시의 현황분석을 요약하여 포함

주석공시의 품질 제고 분위기 ↑

#### ❖ 보고실체(중앙관서)의 재무공시 품질대상(가칭) 신설

- ✓ 공공단체(학회/언론/공익단체/국회예산정책처 등)가 독립적으로 실시
  - 평가 주기: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
  - 국가결산 책임 중앙관서(기획재정부)가 공동 주관 또는 후원하여 권위 제고
- ✓ 재무공시 우수 중앙관서에 인센티브 제공
  - 공시품질(등급)을 국정성과로 홍보
  - 우수 중앙관서(담당자) 포상

주석공시의 품질 제고 유인 ↑

## V. 요약 및 결론

### 05 요약 및 결론

#### ❖ 우리나라 우발부채 관리 및 공시에 내재된 특징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서 국가회계기준(예규)의 특성
  - ✓ 인식기준: 이론적·개념적 정의 및 규정
  - ✓ 공시기준: 일반적 관점에서 공시유형 구조화, 단순 사례 제시
- 우발부채 인식 및 공시 절차에 있어서 실무적 어려움
  - ✓ 고도의 전문성: 회계, 재정, 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필요
  - ✓ 재량적 판단: 공시의 범위와 수준이 실무진의 의사결정에 중속
- 재무공시의 환경적 여건
  - ✓ 시장규율의 부재: 공시품질에 대한 자발적 개선노력의 유인기재 없음
  - ✓ 공시규제 미흡: 불성실 공시에 대한 외부적 압력 미흡
- 우발부채 관리 및 공시 현황: 보고실체(중앙관서) 내 결산부서 중심의 공시업무
  - ✓ 원천정보가 제한된 결산부서는 형식적·소극적 공시 유인
  - ✓ 정책·사업부서는 우발부채 집계 및 공시의 관리적 중요성 인식 미흡
  - ✓ 기획·예산·재정부서는 재정위험 관리도구로 우발부채 정보의 활용 제한

# 05 요약 및 결론



## ❖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제안1)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 (제안2) 우발사항 주석의 구조화
- (제안3) 보고실체 내부에 우발부채의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 (단기/중기)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를 보완하여 우발사항 공시의 완전성 제고
  - ✓ (장기) 핵심 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서 우발부채의 재정위험 반영을 제도화
- (제안4) 보고실체 외부에 준(準)시장규율 기반조성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사후관리 확대
  - ✓ 보고실체(중앙관서)의 재무공시 품질대상(가칭) 신설

감사합니다



# 부록

[부록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부록2] 해외 주요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부록0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백만원)

소송 당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건수	가액	건수	가액	건수	가액	건수	가액	건수	가액	건수	가액
원고	9,094	2,402,397	7,256	2,123,963	4,992	1,636,207	3,412	1,400,300	3,666	1,646,699	5,692	1,863,909
피고	4,742	754,780	4,366	9,135,933	4,185	7,483,634	4,377	6,657,338	4,900	8,975,250	4,518	7,966,125
합계	13,836	3,157,177	11,622	11,259,896	9,177	9,119,841	7,789	8,137,638	8,566	10,621,949	10,210	9,830,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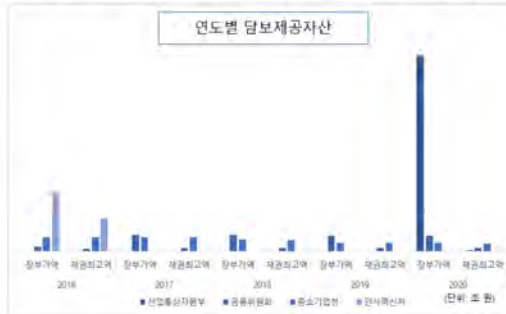
## 부록0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백만원)

중앙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165,469	218
금융위원회	4,008	2,153	13,546	2,453	13,232	2,453	13,022	2,453	12,781	2,453
중소기업청	11,819	11,819	11,468	11,468	10,135	9,190	7,117	7,117	7,117	6,260
인사혁신처	50,044	27,729	-	-	-	-	-	-	-	-
합계	65,871	41,701	25,014	13,921	23,366	11,643	20,139	9,570	185,367	8,932



## 부록0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백만원)

중앙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획재정부	24,241,585	21,130,463	17,023,441	14,760,000	12,490,000
국가보훈처	-	-	-	576,383	559,489
합계	24,241,585	21,130,463	17,023,441	15,336,383	13,049,489



## 부록0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백만원)

중앙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화체육관광부	30,423	2,792	6,126	148,474	187,140
고용노동부		320,850	305,805	305,805	363,803
소방청		45,298	43,007	43,007	
합계	30,423	368,940	354,938	497,286	550,943



## 부록01 우리나라 우발부채 유형별 현황

###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과 약정사항)

(백만원)

중앙관서	회계실체	2016	2017	2018	2019	2020
국토교통부	교특회계(도로계정)	362,686	309,430	258,300	297,100	411,616
해양수산부	교특회계(항만계정)	84,636	84,738	91,715	42,525	102,101
합계		447,322	394,168	350,015	339,625	513,717





# 부록02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미국

### 국가재무제표 주석22(우발상황)의 구조

구분	주요 내용
1.우발상황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발손실(loss contingencies)의 개념과 정부의 의무/역할</li> <li>우발상황의 3가지 유형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적/환경적(Legal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li> <li>보험 및 보증(Insurance and guarantees)</li> <li>기타(Other contingencies)</li> </ul> </li> </ul>
2.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FFAS No.5(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른 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 요약</li> <li>SFFAS No.47, Reporting Entity에 따른 연방정부의 우발손실 인식 및 공시기준 요약</li> </ul>
3.우발상황 유형별 상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기 및 전기의 부채계상 또는 추정 금액(상하한 포함)</li> <li>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기관(실체)별 우발상황의 성격, 발생가능성, 추정금액 등 상세 내역</li> </ul>

- 우발상황을 3가지로 유형화
- 우발손실 인식 및 공시기준



# 부록02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미국

### 법적/환경적 우발상황

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as of September 30, 2021, and 2020

(in billions of dollars)	2021			2020		
	Asbestos	Lower End	Upper End	Asbestos	Lower End	Upper End
Producible	59.7	39.6	42.7	40.1	39.4	41.9
Unproducible	N/A	35.9	52.0	N/A	31.7	51.9

In accordance with the NYRA, DOE entered into more than 69 standard contracts with utilities in which, as set forth for payment of fees into the Nuclear Waste Fund, DOE agreed to begin deposit of SNF by January 31, 1998. Because DOE has no facility available to receive SNF under the NYRA, it has been unable to begin disposal of the SNF as required by the contract. Significant litigation claiming damages for partial breach of contract has ensued as a result of this delay. Based on settlement estimates, the total liability estimate as of September 30, 2021 is \$39.9 billion. After deducting the creditable amount paid of \$9.9 billion as of September 30, 2021 under settlements, and as a result of final judgments, the remaining liability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0 billion, compared to approximately \$30.0 billion as of September 30, 2020.

A number of class action and/or multiple plaintiff tort 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former and former DOE contractors in which the plaintiffs seek damages for alleged exposures to radioactive and/or toxic substances as a result of the contractor's operation of DOE's nuclear facilities. Collectively, in these cases, damages of \$1.2 billion are currently sought.

Numerous litigation cases are pending where the outcome is uncertain or it is reasonably possible that a loss has been incurred and where estimates cannot be made. These are other litigation cases where the plaintiffs have not made claims for specific dollar amounts, but the settlement may be significant.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se legal actions for which the potential loss could not be determined may adversely affect the U.S.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 in reporting results.

### 보험 및 보증 관련 우발상황

**Entities Reporting under FASB**

FISAC, FICOM, and FICOM are the main contributing consolidation entities with equalized insurance or guarantee programs that apply FASB standards. Insurance in these entities and a disclosure on the FASB coverage are disclose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program. Current conditions indicate it is unlikely that losses equal to the maximum risk exposure described below would be incurred.

FISAC ensures pension benefits for participants in sever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Under current law, FISAC's liabilities may be paid only from FISAC's assets. Accordingly, FISAC's liabilities are not backed by the full faith of the U.S. government. As of September 30, 2021, FISAC's single-employer and multiemployer pension insurance programs had \$13.0 billion and \$3.5 billion in total assets, respectively. In FY 2020, FISAC reported pension insurance program total assets for single-employer and multiemployer of \$14.1 billion and \$1.1 billion, respectively.

FISAC operates two separate pension insurance programs: a single-employer program and a multiemployer program. The single-employer program covered about 2.7 million people (including those in plans that FISAC has terminated) in FY 2021, down from about 2.5 million people in FY 2020, and the maximum guaranteed annual benefit for participants who are in a plan that terminated in FY 2021 and commence benefits at age 65 is \$72,400. The maximum guaranteed benefit for

Insurance in-force as of September 30, 2021, and 2020

(in billions of dollars)	2021	2020
General Motor - GMAC	2,122.6	2,117.7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 NCUA	1,400.0	1,400.0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 DHS	1,361.9	1,358.9
Federal Crop Insurance - USDA	100.0	127.6

Genie Mer issues MBI and commitments, which require Genie Mer to certain risks. Genie Mer's MBI program guarantees the tim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securities backed by pools of mortgage loans insured by FICO, Public and Indian Housing, Farm Housing Service, and U.S. Accounting. Genie Mer's credit risk related to extending MBI is greatly mitigated by guarantees discussed in Note 4 - Loans Receivable, Net and Loan Guarantees. Liabilities MBI is covered and managed by NCUA, covering the deposit of over 12.6 million account holders in 40 direct

### 기타

DOT, HHS, Treasury, and SEC reported the following other contingencies:

FHWA has a reasonably possible contingency due to their authority to approve projects using advance construction under 23 U.S.C. § 115(a) and 23 CFR 430.701-430.709. FHWA does not guarantee the ultimate funding to the states for these "advance construction" projects and, accordingly, does not obligate any funds for these projects. The state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to FHWA for a project be converted to a regular federal aid project at any time provided that sufficient

When a contingency originates from the U.S. government's involvement i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 responsible reporting entity must establish a contingent liability or include a required note disclosure to its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guidance in SFAS No. 7. Refer to Note 21--Commitme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commitments related to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발생가능성 수준별 예상손실률 범위(상한/하한) 및 부채계상액 [표]로 집계
- 실체별 우발상황 관련 주요 정책/개요/손실 예상액/진행경과/향후전망 등을 기술

## 부록02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호주

#### ➢ 국가재무제표 주석9(위험 Risks)의 구조

- 9A 우발상황(Contingencies)
- 9B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 9C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 ➢ 국가재무제표 주석9A(우발상황)의 구조

구분	주요 내용
배상 및 (지급)보증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 계량화 가능한 배상 및 (지급)보증 (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 계량화할 수 없는 배상 및 (지급)보증 (No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상 및 (지급)보증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소송사건 (Claims and proceedings)	
환경복원 및 오염정화(Remediation and decontamination)	
기타(Other contingencies)	
우발자산(Contingent assets)	

- 위험 관련 주석의 하위 항목으로 우발상황을 구조화
- 우발상황을 5가지로 유형화
- 배상 및 (지급)보증은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분류
- 환경 관련 항목 포함

## 부록02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호주

#### ➢ 배상 및 (지급)보증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45,075	42,162	45,791	43,091
Increases	2,753	2,777	2,843	3,043
Remeasurement	(1,243)	167	(1,557)	198
Liabilities crystallised	-	(18)	-	(18)
Expired	(38)	(13)	(203)	(423)
As at 30 June	46,249	45,075	46,874	45,791

#### (계량화할 수 없는 배상 및 (지급)보증)

U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Administering portfolio
<b>Terrorism related</b> Under the Terrorism Insurance Act 2003 the 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 administers a terrorism reinsurance scheme for commercial property and associated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arising from a Declared Terrorism Incid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guarantees	Treasury / Home Affairs
<b>(발생가능성 낮으나 중대한 배상 및 (지급)보증)</b>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Administering portfolio
<b>Financial Claims Scheme - Deposits</b> The scheme is authorised under the Banking Act 1959 and guarantees deposits up to \$250,000 at eligible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When last estimated as at 31 December 2020, deposits eligible for coverage under the Financial Claims Scheme were approximately \$1.1 trillion (31 December 2019: \$250 billion)	Treasury
<b>Financial Claims Scheme - Assurance</b> The Policyholder Compensation Facility established under the Insurance Act 1973 provides a mechanism for making payments to eligible beneficiaries with a valid claim against a failed general insurer	Treasury

- 계량화 가능한 항목은 [표]로 집계 (증감, 잔액, 부채계상액 등)
-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사항 관련 주요 정책/개요/손실예상액/진행경과/향후 전망 등을 기술

#### ➢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200	19,772	20,273	19,944
Increases	65	-	65	-
Remeasurement	(1,318)	429	(1,323)	429
As at 30 June	18,977	20,200	19,045	20,273

#### ➢ 소송사건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6	133	211	136
Increases	45	150	45	152
Remeasurement	(68)	145	(70)	145
Liabilities crystallised	(9)	(216)	(9)	(216)
Expired	(24)	(7)	(24)	(7)
As at 30 June	142	206	143	211



## 부록02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캐나다

#### > 국가재무제표의 우발부채 관련 공시 목록

구분	주요 내용
제2장 캐나다의 국가재무제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Section 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석7] 우발부채(충당금) (Provisions for contingent liabilities)</li> <li>- 소송 (Claims)</li> <li>- (지급) 보증 (Guarantees provided by the government)</li> <li>- 기타 (Other)</li> <li>- 조세불복심사 (assessed taxes under appeal)</li> <li>-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 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li>- [주석8] 환경부채 및 자산처분 의무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s retirement obligations)</li> <li>- 오염토지의 복구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li> <li>- 기타 환경 의무 (Other environmental liabilities)</li> <li>- [주석19] 계약상 의무와 권리 (Contractual obligation and rights)</li> <li>-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s)</li> <li>-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li> </ul>
제11장 상세보충정보(계약상 의무와 권리, 우발부채) Section 11. Contractual obligations, contractual rights and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li> <li>-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li> <li>-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li> <li>- (지급) 보증 (Guarantees)</li> <li>-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 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ul>

- 결산보고서의 제2장 재무제표(주석)과 제11장 상세보충정보
- 환경, 계약 관련 사항을 개별주석으로 분리

## Are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managed well?

Choi, Youn-Sik (Kyung Hee University)  
Cho, Hyeong-tae (Hongik University)  
Han, Seung-young (Hongik University)

3<sup>rd</sup> of November, 2022

- I.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II.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III.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IV. Sugges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System of Contingent Liabilities**
- V. Summary and Conclusion**

# I .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 Contingent Liabilities (CL)

Obligations that do not arise unless a particular, discrete event(s) occurs in the future(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 ❖ Contingent Liabilities as Fiscal Risks

- When adequate disclosure and response to CL fails, a number of cas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debts in the public sector rapidly increase, triggering a fiscal crisis (Cebotari 2008; IMF 2012)
- Materia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 ✓ A major factor for unexpected increase of Debt-to-GDP ratio (IMF 2003; Jaramillo and Mulas-Grandos 2015)
  - ✓ During the Asian and South American economic crises, the fiscal cost of CL was 50% of GDP (Honohan and Klingelbiel 2000)
  - ✓ Fiscal costs due to CL born by 174 countries over the past 25 years have reached 6% of GDP (IMF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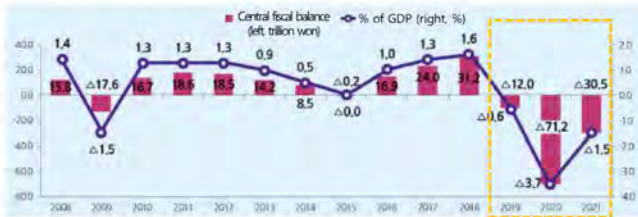


### Why do we focus on Contingent Liabilities now?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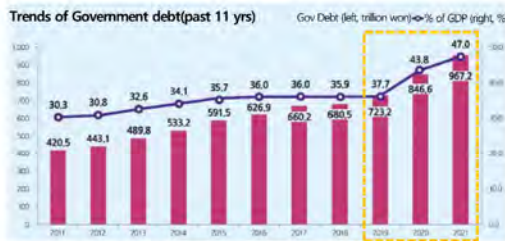


## ❖ Increase in crisis on fiscal soundness due to COVID-19



Fiscal balance deteriorated sharply due to increased fiscal spending to respond to COVID-19

⚠ 3yrs of accum. deficit -113.7trillion (KRW)



The government debt (D1) rises sharply due to the expansion of financing (ex: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to respond to COVID-19

⚠ 3yrs of accum. increase 286.7trillion (KRW)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 Intensifying challenge to Korea with small and open economy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Q.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in 2022?

### <News Headlines>

- "Fear of breaking the 1,400 won exchange rate... **2nd foreign exchange crisis** depended on the supply-demand of dollars." (2022.10.3)
- "[Is it a crisis in the Korean economy] The US Federal Reserve is the biggest **detonator**... Household debt and real estate **at risk**" (2022.10.2)
- "2008 would be better... Signs of a crisis we haven't seen in 30 years" (2022.10.1)
- "Larry Summers (former U.S. Treasury Secretary), the **global economy** is in a similar situation to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22.9.30)
- "**Europe's** energy crisis could surpass the 2008 financial crisis" (2022.9.29)
- "The strong dollar in history end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2022.9.28)
- "Is the **UK** facing a bailout crisis? The sterling is at an all-time low" (2022.9.27)
- "Morgan Stanley, Ultra-strong dollar creates a situation that causes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2022.9.27)
- "Korea is the most dangerous in Asia... Why the **2nd IMF** warnings are pouring out" (2022.9.26)
- "The default **crisis** following the collapse of **South Asian** currency values...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Nightmare Deja vu" (2022.8.4)

### Warning of IMF(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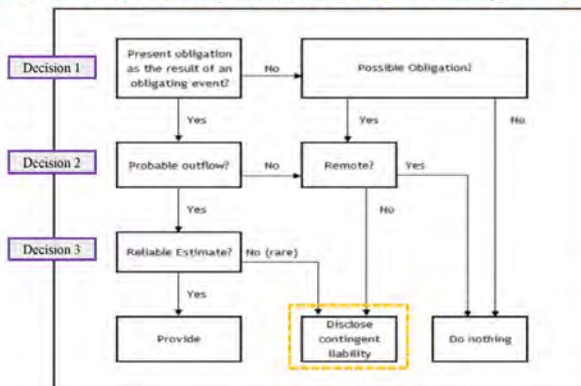
- ✓ The realization of macroeconomic CL occurs on average once every 12 years
- ✓ The realization of CL occur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 Asian fiscal crisis in the late 1990s: mainly experience by developing countries
  - 2008 fiscal crisis: mainly experienced by advanced countries

Increased need to manage **contingent liabilities**, a **financial risk factor!!**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 Recognition and Disclosure Procedures for Contingent Liabilities



High Level of **Expertise & Discretion**

Likelihood	Existence of Present Obligation	Outcome
More likely than not	Present Obligation exists (at end of reporting period)	Provision is recognized (if recognition criteria is met)
More likely	No present obligation exists (at end of reporting period)	Disclosure of a contingent Liability (unless the possibility of an outflow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is remote)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 Current status of contingent debt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Korea

- Market Discipline
  - ✓ Litigation risks
    - Negative stock return (Sohn et al. 2013)
    - Increase in the costs of capital (Park and Shin 2014)
    - Increase in Audit Fees & Audit Hour (Choi et al. 2012; Park and Kwak 2013)
  - ✓ Guarantee of payment
    -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Lee et al. 2018; Kim and Shim 2020)
- Regulations
  -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Ex-Ante: Prior notice in key inspection areas
    - Ex-Post: Disclosure and Accounting Supervision Cases
  - ✓ KICPA
    - Ex-Ante: Precautions/Manual for Auditing
    - Ex-Post: Supervision Cases

⇒ **MKT pressure on effectively managing and voluntarily disclosing CL**

**<4 major accounting issues in 2020>**

<b>Application of new lease standards</b> * 신규채권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 채권 표시 및 부채비율 * 2020년 기준 부채비율 6.0% (2019년 기준 5.4%)	<b>Adequacy of provisions and contingent liabilities</b> * 부당채권 표시 관련 부채비율 상승 * 2020년 기준 부채비율 6.0% (2019년 기준 5.4%)
<b>Adequacy of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s</b> * 계약기간 - 무제한 표시 및 관련 부채비율 * 2020년 기준 부채비율 6.0% (2019년 기준 5.4%)	<b>Adequacy of liquidity classification</b> * 유동성 분류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 2020년 기준 부채비율 6.0% (2019년 기준 5.4%)

⇒ **Adequacy of disclosure of notes related to contingent liabilities**  
 In case of omission, disclosure of relevant facts and reasons

# 01 Do We Need Contingent Liabilities Management System?

## ❖ Fundamental limitations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Lack of awareness of the need to manage contingent liabilities**
  - ✓ Lack of Market Discipline
  - ✓ Little interest from stakeholde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 **Practical difficulties due to 'uncertainty', an essential property of contingent liabilities**
  - ✓ Expertise in accounting: A high level of expertise is required to evaluate the likelihood of occurrence and reliably measure the amount
  - ✓ Expertise in Finance: Lack of information from department in charge of accounts on nature/financial effect of individual financial activities
- **Discretionary decision making by reporting entity that has incentives to avoid reporting the unfavorable results of financial activities**

**Ca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judgment with US private equity fund Lone Star worth 6 trillion won (2022 Aug.)

- In Nov. 2012, an Investor-State Action was filed with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Settlement (ICSID) for damages of \$4.679 billion.
- In Aug. 2022, the arbitral tribunal rul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pay about 292.5 billion won (equivalent to 4.6% of the claim) to Lone Star.

⇒ Not disclosed in the F/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Financial Commission/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Ministry of Justice, etc.) for the past 10 years

∴ **Potential risk of not faithfully disclosing CL of the Government** ⇒ **Systematic management required via official procedures**

## II.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02 Disclosure of CL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Disclosure Standards Related to CL: Regul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No. 8 (Provision,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 [Paragraph 16] Disclosure Items

Unless it is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 will be required to settle the obligation, the contents of each type of contingent liability shall be explained in the notes and, if possible, the following shall be disclosed in the notes:

- (1) Estimated amount of contingent liability
- (2) Degree of uncertainty related to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outflow of resources
- (3) Possibility of reimbursement by a third party

##### [Paragraph 18] Disclosure Exceptions

- (1) If there are matters that have not been disclosed for practical reasons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the facts shall be disclosed.
- (2) Disclosure may be omitted if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affect disputes with the other party in progress regarding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However, the general nature of the dispute and the facts and reasons for omitting the disclosure shall be disclosed.

##### Features

- Principle-based regulations
- Typical and conceptual guidelines (guarantee, collateral, litigation, commitments, etc.), without presenting specific examples/items
-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level of disclosure will be decided based on discretion in practice

In practice(F/S) ?

??

## 02 Disclosure of CL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Type	Quantity		Content (Monetary unit: KRW)
	Pages	%	
① Ongoing litigation	2	11.8%	· Plaintiff: KRW 1.64 trillion (3,655 cases) · Defendant: KRW 8,975.2billion(4,930 cases)
② Collateral asset	1	5.9%	· Maximum amount of 8.9 billion(3 departments)
③ Derivalives	4	23.5%	· Asset(Book value) 145 billion · Liability(Book value) 1,669.9 trillion
④ Guarantee of payment	1	5.9%	· Amount of guarantee 13.495 trillion (2 departments)
⑤ Important contracts	5	29.4%	· Construction contract: one department, 5 cases · Consignment contract: 4 departments, 11 cases · Other: 6 departments
⑥ Natural disaster	-	-	· None
⑦ Minimum Revenue guarantee	1.5	8.8%	· Paid amount: 513.7 billion (2 departments) · Guarantee project: 2 departments, 16 cases
⑧ Other	2.5	14.7%	· Supplementing funds: limit of 625 million dollars(one department) · Financial support for K-water: 340 million(one department) · Obligation for land restoration(one department) · Public Service Obligation: 352.8 billion (one department) · Financial support for metro service
Total	17	100%	

- Standardization of 8 disclosure items
- Large proportion of derivatives/contracts
- Not reporting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 Quantity is the proportion of sub-items in the total volume of notes on contingent liabilities (=number of detail pages ÷ total pages of notes on contingent liabilities)

## 02 Disclosure of CL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① 계속중인 소송사건 **① Ongoing litigation**

- 원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종양관서	건수	소송가액	종양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310,088,777	국회교육부	30	30,554,678,480
교육부	7	8,117,388,894	해양수산부	30	847,859,961,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34,961,830,973	중소벤처기업부	808	309,988,777,079

-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종양관서	건수	소송가액	종양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회	5	495,005,000	국립중앙도서관	1	50,000,000
대법원	80	73,937,498,279	식용약품관리위원회	64	3,20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326,320,800	국가안전위원회	84	2,380,000,000

- Compilation of # of lawsuits/litigation value by central government offices by plaintiffs/defendants
- No detailed explanation of important cases (summary, possibility of winning/losing, etc.)

② 담보제공자산 **② Collateral asset**

(단위: 원)

종양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 회고액	담보제공액	담보종류	사입금액
선정후생지원부	간접	15,417,308,803	26,847,000	외국인 및 국내권 발행	국채	-
공공기관	부채 인출 (신용 보증부채)	9,705,316,000	300,000,000	외국인 및 국내권 발행	수출 신용보증	-
공공기관	신용 보증부채	798,842,238	1,000,000,000	외국인 및 국내권 발행	한국자산관리공사	-
중소벤처기업부	단기금융채	4,292,191,333	3,133,639,329	민생금융채	채권채권	-
중소벤처기업부	장기금융채	2,317,000,000	488,896,279	채권채권	채권채권 등	-

- 5 cases from 3 central government offices are provided in a table
- No detailed explanation of qualitative information (collateral viability, etc.)

## 02 Disclosure of CL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③ Derivatives**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조세		파생목적		위험회피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합계	346,904,906,773	(1,001,730,545)	421,912,536,504	(81,042,629,726)	(130,730,581)	191,334,811,194	311,690,273,879	
통화관련	조세	475,837,509,959	405,197,690	421,872,336,304	48,859,063,402	405,197,690	649,589,168,042	116,860,592,073
	통화인도	448,868,542,422	—	428,896,943,543	12,039,539,879	—	516,363,039,075	106,042,623,055
	물류노상	25,692,729,745	405,197,690	(13,017,212,681)	38,709,941,426	405,197,690	29,547,053,547	8,688,440,123
	계입통화증권	111,040,260	—	—	111,040,260	—	111,040,260	—
	국도통화증권	(1,517,160)	—	—	(1,517,160)	—	—	(1,517,160)
외국환관련	조세	2,140,035,642	—	2,140,035,642	—	—	2,167,318,146	699,011,729
	외국환노상	(129,926,893,126)	(535,928,271)	—	(129,826,693,126)	(535,928,271)	2,595,763,162	194,829,681,806
	외국환보유액	(129,926,893,126)	(535,928,271)	—	(129,826,693,126)	(535,928,271)	2,595,763,162	194,829,681,806
기타금융상품	—	—	—	—	—	—	—	

- Valuation gains/losses and book value by type of derivatives aggregated in a table
- Similar to the "derivatives" notes to the F/S of private sector in terms of form/content
- No explanation on the nature/risk/probabi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under the derivatives contract

## 02 Disclosure of CL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④ 지급보증

**④ Guarantee of payment**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0,930,00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출발권자	의 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1,480,000,000,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180,000,000,000	10,480,000,000,000
		한국수출입은행	750,000,000,000	850,000,000,000
합계			10,930,000,000,000	12,410,000,000,000

- 한편, 국가보증처 보증기금의 보증채무 규모는 565,492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출발권자	의 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국가보증처	국인은행	장기차익 대부	480,136,196,963	492,446,683,000
		농협은행	85,355,996,439	67,042,202,000
합계			565,492,193,402	559,488,885,000

- Explaining that i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by National finance Act(92①)
- 2 departments and 5 cases are provided in a table
- No explanation on the feasibility of guarantee, the size of the financial burden, etc.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⑤ 중요한 계약사항 ⑤ Important contracts

- 건설공사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계약처	계약기간	비고
국립세종대학교박물관 건축공사	대한건설사의 4개사	2019.11.01. - 2022.06.30	간접비용 (59,300억(약))

- 업무위탁계약

####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100% 현금출자하여 ㈜상록골프랜드호텔을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계약

####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요구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을 적기 조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등과 무기체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해양경찰청

구분	대상	계약처	계약기간
건조계약	300톤 경비정 1척	삼양해운사	2020.12.14. - 2024.05.27.
건조계약	200톤 경비정 4척	삼양해운사	2020.08.20. - 2023.08.05.
건조계약	500톤의 경비정 2척	차원차용공업	2020.09.29. - 2023.05.12.

- Presenting the contents of each central government office by construction contract/consignment contract/others
- Table and description are mixed, only for simple information delivery
- No explanation for nature(cause) of the contingency by contracts/probability of resource outflow/expected loss, etc.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해당 없음 ⑥ Natural disaster

• "None"

####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	회계상목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국도교통부	교통신계	교통신계	327,027,000,000	411,816,000,000	297,100,000,000
		합계	70,874,048,630	102,101,771,330	42,625,763,490
계			397,901,048,630	513,917,771,330	339,725,763,490

- 국도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	회계상목	구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대협약내역
국도교통부	국도교통부 국도교통부	도로 역	부산-울진간고속도로	2009.11.9. 20년	협약수입의 85% 이상분
			천안-논산간고속도로	2002.12.9. 20년	협약수입의 85% 이상분 (사업유지비용 포함)
			대구-부산간고속도로	2008.11.9. 20년	협약수입의 75% 이상분 (사업유지비용 포함)
			서해안고속도로	2007.12.9. 20년	협약수입의 95% 이상분 (사업유지비용 포함)
			부산-울진간고속도로	2009.12.9. 20년	국민주택자금 융자보장(30%) 2년
			7-5년 : 협약수입의 80% 이상분		
			6-10년 : 협약수입의 70% 이상분		
			11-15년 : 협약수입의 60% 이상분		
			16-20년 : 협약수입의 50% 이상분 (사업유지비용 포함)		
			20년 : 협약수입의 80% 이상분		

#### ⑦ Minimum Revenue guarantee (ex: BTO)

- A summary of payments from two departments is provided in a table
- Agreements for each project are summarized in a table
- No forecast information on the causes of occurrence of contingencies, possibility of realization, expected payment amount in each project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⑧ Details of other contingent liabilities and financial impact of outflow of resources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운용사 등과 자금보중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금액은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USD)

구분	2021년	2020년
차입보증금액 환도	514,000,000	628,000,000

####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환경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09.9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공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은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채무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액	340,000,000,000	360,000,000,000	340,000,000,000	296,400,000,000	277,800,000,000

#### ○ 여성가족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장기임차(1995.11~2024.10)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420,716㎡)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원의 유출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

- Contracts, agreements, and policies financed by the government are provided through tables and descriptions (Not detailed enough)
- In some cases, expla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ntingency, the possibility of outflow of resources, and the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expected burden are partially included.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Disclosure Trends of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Contingency	Fiscal Year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① Ongoing litigation	Plaintiff	○	○	○	○	○	○	○	○	○
	Defendant	○	○	○	○	○	○	○	○	○	○	○
② Collateral asset	Preservation of tenant's rights	○	○	○	○	○	○	○	○	○	○	○
	Conversion loan guarantee	-	-	-	-	○	○	○	○	○	○	○
③ Derivatives	Borrowings	○	○	○	○	○	○	-	-	-	-	-
	Currency	○	○	○	○	○	○	○	○	○	○	○
	Interest rate	○	○	○	○	○	○	○	○	○	○	○
	Preemptive right	-	-	-	-	○	-	-	-	-	-	-
	Other	○	-	-	○	○	○	○	○	○	○	○
④ Guarantee of payment (Guarantee debt)		○	○	○	○	○	○	○	○	○	○	○
	Construction contract	○	○	○	○	○	○	○	○	○	○	○
⑤ Important contracts	Consignment contract	○	○	○	○	○	○	○	○	○	○	○
	Other	○	○	○	○	○	○	○	○	○	○	○
⑥ Natural disasters		-	N/A	○				N/A				
⑦ Minimum revenue guarantee	Road	-	-	○	○	○	○	○	○	○	○	○
	Railroad	-	-	○	○	○	○	○	○	○	-	-
	Ship	-	-	○	○	○	○	○	○	○	-	-
⑧ Details of other contingent liabilities and financial impact of outflow of resources	Supplementing funds	-	-	-	-	-	-	-	-	-	○	○
	Financial support for K-water	○	○	○	○	○	○	○	○	○	○	○
	Land restoration	-	○	○	○	○	○	○	○	○	○	○
	Public Service Obligation for railroad	○	○	○	○	○	○	○	○	○	○	○
	Support for metro	○	○	○	○	○	○	○	○	○	○	-
	Others	○	○	-	-	-	-	-	-	-	-	-

- 8 disclosure items remain constant over 11 fiscal years
- Minor changes such as addition/deletion of detailed items exist by type
- 'Non-applicable' for 'natural disasters'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Disclosure Trends of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Panel A. Status of disclosing government departments by 8 types of Contingent Liabilities

Type	# of departments	Percentage
① Ongoing litigation	48	100%
② Collateral asset	5	10.4%
③ Derivatives	8	16.7%
④ Guarantee of payment (Guarantee debt)	3	6.3%
⑤ Important contracts	12	25.0%
⑥ Natural disasters	0	0%
⑦ Minimum revenue guarantee	4	8.3%
⑧ Details of other contingent liabilities and financial impact of outflow of resources	8	16.7%

- 9 departments (such as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o not report for confidentiality reasons (48 are reporting out of 57)
- All departments disclose 'Ongoing litigation'
- 'Important contracts' are disclosed in 12 departments
- 'Derivatives' are disclosed in 8 departments
- 87.5% of departments disclose less than 2 items

Panel B. Number of disclosure type by government departments

Number of disclosure type	# of departments	Percentage
≥ 5	0	0%
4	1	2.1%
3	5	10.4%
2	9	18.8%
1	33	68.7%
합계	48	100%

(Note) Percent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departments that have disclosed the relevant item by the number of departments that have disclosed contingency notes (Total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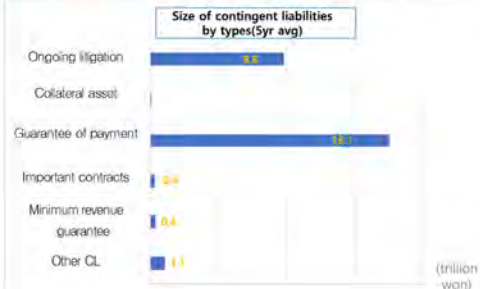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in billion won)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5year Average	Weight
Ongoing litigation	9,948,167	11,259,546	9,132,891	8,137,628	10,621,939	9,820,034	32.9%
Collateral asset	41,701	13,921	11,643	9,570	8,932	17,153	0.1%
Guarantee of payment	24,241,585	21,130,463	17,023,441	15,336,383	13,049,489	18,156,272	60.8%
Important contracts	30,423	368,940	354,938	497,286	550,943	360,506	1.2%
Minimum revenue guarantee	447,322	394,169	350,016	339,626	513,718	408,970	1.4%
Other CL	1,065,735	890,805	1,205,494	961,717	1,372,800	1,099,310	3.7%
<b>Total</b>	<b>35,774,932</b>	<b>34,057,844</b>	<b>28,078,423</b>	<b>25,282,210</b>	<b>26,117,821</b>	<b>29,862,246</b>	<b>100.0%</b>
<b>Percentage of GDP</b>	<b>2.06%</b>	<b>1.86%</b>	<b>1.78%</b>	<b>1.31%</b>	<b>1.35%</b>	<b>1.59%</b>	



## 02 Disclosure of CL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 (Summary) Characteristics of the note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 **Standardized into 8 types of disclosure**

- ✓ No change in the disclosure type since FY2011, when the accrual accounting was introduced
- ✓ Differences in type of disclosu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s (only 1 or 2 items except for 'litigation cases' are disclosed)

- **Some non-contingent items are included**

- ✓ Disclosure items less relevant to contingency are included (ex: derivatives)
- ✓ Ordinary contracts (e.g., construction, consignment, lease) and activities based on law/policy (e.g., communication frequency allocation) are included

- **Only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fact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 ✓ Simple aggregation of past events in most of the disclosure items (table of lists)
- ✓ Lack of qualitative information (ex: character/probability of contingency, expected burden) for determining potential risks

- **Posterior measurement and identific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S**

- ✓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CL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S of government departments
- ✓ Absence of ex-ante/ex-post management procedure of CL other than disclosing the note to the F/S

- **Completeness in appearance, but lack of faithfulness in reality**

- ✓ Government simply aggregates information disclosed by individual departments and records in notes of the national F/S without omission.
- ✓ No additional information reflecting national fiscal management strategy or comprehensive analysis

## III.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03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 UK

##### ➢ Note 29 and 30 in Government F/S

Main contents	
<p>Note 29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li>Individually significant contingent liabilities</li> </ul> </li> <li>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itments in relation to pension scheme deficits</li> <li>Ministry of Defense</li> <li>Legal claims</li> <li>Ongoing litigation</li> <li>Civil nuclear liabilities</li> <li>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li> </ul>	
<p>Note 30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otential costs of the government's 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li> <li>Individually significant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li> <li>Non-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 Classified into CL disclosed by accounting standard(note 29) and CL reported to parliament(note 30)
- Classified in to quantifiable/non-quantifiable
- Detailed qualitative information of non-quantifiable CL

### 03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 영국

##### ➢ Note 29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

(Total)	2019-20	2018-19
	£bn	£bn
Export guarantees and insurance policies	16.6	15.7
Civil negligence	49.7	50.8
Taxes subject to challenge	2.2	2.8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2.1	3.5
EU related quantified contingent liabilities	1.0	-
Pension Protection Fund	3.7	1.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8	0.1
Other	7.0	0.7
<b>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b>	<b>84.6</b>	<b>80.1</b>

Entity	Contingent liability	2019-20	2018-19
		£bn	£bn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s the actual or potential defendant in a number of actions regarding alleged clinical negligence. Part of the liability has been recognised as a provision (note 22 for further details) and the contingent liability of £42.2 billion (£37.3 in 2018-19) is disclosed in the table above. There is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as to the department's liability, with amounts involved.	40.2	44.3
HM Revenue and Customs	HM Revenue and Customs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administering taxes, duties, excise and other lev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recovering taxes, duties, excise and other lev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recovering taxes, duties, excise and other lev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recovering taxes, duties, excise and other levies.	19.8	15.7

Entity	Contingent liability	2019-20	2018-19
		£bn	£bn
Ministry of Defence	The Ministry of Defence has a number of 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which include third party recoveries for damage caused by low altitude flying operations (range), potential costs of decommissioned vessels on sites yet to be identified, potential liabilities that arise from its service liability policy in respect of those covered by the Service Life Insurance scheme, potential liabilities related to...	-	-

- Overall amounts are summarized in the total table (Amount size: Note 29 (84.6) < Note 30 (379.5))
- Classified in to quantifiable/non-quantifiable (Future resource outflow/estimated loss) is quantified, but unrecognized as debt in F/S
- Related policy/expected loss/process/future prospect are described

##### ➢ Note 30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

(Total)	1 April 2019	Increased (decreased) in year	Liabilities crystallised in year	Obligations assumed in year	31 March 2020
	£bn	£bn	£bn	£bn	£bn
PF1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180.0	76.9	(3.4)	(3.4)	250.0
Guarantees (including EBI)	38.3	3.9	(0.9)	(0.7)	40.6
Indemnities	33.0	0.1	-	(0.6)	32.5
Letters of comfort	23.8	1.0	-	-	24.8
EBI Guarantees	31.6	-	-	-	31.6
<b>Total</b>	<b>306.7</b>	<b>81.8</b>	<b>(4.3)</b>	<b>(4.7)</b>	<b>379.5</b>

Entity	Contingent liability	2019-20	2018-19
		£bn	£bn
HM Revenue and Customs	Pension Protection Fund (PPF) contingent liabilities. Claims which are considered payable are recognised as contingent liabilities. The aggregate value of all contingent claims as at 31 March 2020 is estimated at £250 billion, calculated on the same basis as for the PPF 2020...	250.0	180.0

**(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Notification to leave the EU - Article 50

In last year's WGA, a non-quantifiable remote contingent liability was disclosed relating to the UK's submission, at that point in time, of its notification to leave the EU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The impact of these events has not reflected in the 2018-19 WGA, as the UK remained a member of the EU during the 2018-19 financial year.

### 03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L disclosure across major countries

	US	UK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Disclosure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gal/environmental/disposal</li> <li>Insurance and guarantee</li> <li>social security program</li> <li>agriculture/low-income/medical</li> <li>Others</li> <li>federal funds</li> <li>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gal claims</li> <li>Ongoing litigation</li> <li>Guarantees</li> <li>Indemnities</li> <li>Civil nuclear liabilities</li> <li>Pension Protection Fund</li> <li>Related to ministry of defense</li> <li>Commit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aims and proceedings</li> <li>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li>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li> <li>Remediation and decontamination</li> <li>Oth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li> <li>Guarantees and indemnities</li> <li>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li> <li>Oth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aims</li> <li>Guarantees</li> <li>Others</li> <li>assessed taxes under appeal</li> <li>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Insurance programs</li> </ul>	
Separate no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itments</li> <li>Environmental du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li> <l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li> <l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li> <l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li> <li>x</li> </ul>	
Details recognized as provisions(amount)	Include	Exclude	Include	Exclude	Include	
Accounting/disclosure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planation</li> <li>Materiality amou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parate note</li> <li>non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parate note</li> <li>non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clude</li> <li>exi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clude</li> <li>none</li> </ul>	
Divide by quantifiability	x	o	o	o	x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amount of the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tal</li> <li>Item-specific info</li> <li>Ending amount</li> <li>Increase/decrease</li> <li>Crystallized into deb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li> <li>o(partial)</li> <li>o</li> <li>o(partial)</li> <li>o(parti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i> <li>o</li> <li>o</li> <li>o</li> <li>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i> <li>o</li> <li>x</li> <l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i> <li>o</li> <li>x</li> <li>o</li> </ul>	
Disclosure of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x	o	o	x	x	
Quantity(Pages)	% of total notes	6.5%	10.7%	4.9%	10.9%	4.9%

### 03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Other Countries

#### ❖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Structuring contingent liability notes on quantifiable and non-quantifiable potential impacts** (UK/Australia/New Zealand)
  - ✓ Expect to **reduce practical uncertainty** by specifying the conditions for occurrence of contingencies
  - ✓ Enable to **establish contingency plans** for scenarios by differentiating the conditions of CL(e.g., probability of occurrence/expected burden)
- **Specifying disclosure standards for contingent liabilities**
  - ✓ The **forecast of the financial demand** required for core policies/systems(ex: social insurance, low-income/medical care, etc) needs to be disclosed (US/UK/Canada)
  - ✓ **Items exceeding the materiality criteria** needs to be individually detailed (New Zealand)
- **Disentangling related not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 ✓ Obligations based on **explicit and formal** contracts/agreements/laws(US/New Zealand/Canada)
  - ✓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e.g., accounting standards/law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US/Canada)
  - ✓ Obligations due to the **normal financial activities** such as typical contingencies(e.g., litigation/guarantee of payment/collateral asset) and policies/systems
- **Systematizing the format of qualitative explanations for 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 The more difficult to quantify due to uncertainty, the greater the risk of principled/superficial explanation
  - ✓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explanations** such as outlines of individual cases/contingencies/progresses/future prospects, etc(All five countries)


# IV. Sugges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System of Contingent Liabilities



## 04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Management System of 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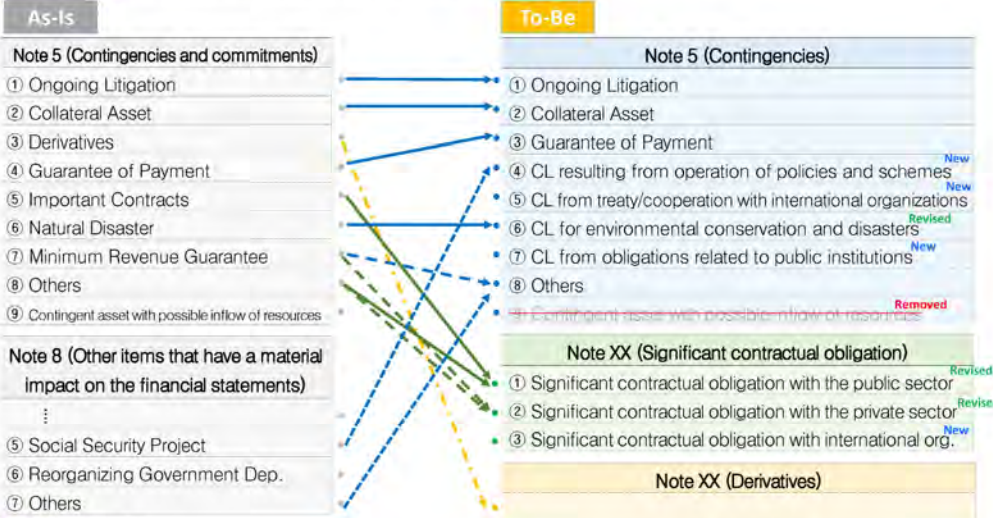
❖ Setting goals for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Proposal 1	Proposal 2	Proposal 3	Proposal 4	
Note Disclosure	Contents of Info	Improving disclosure quality of C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Format of Info	Consistency with benchmark countri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inancial Practice	Reporting Entity	Encouraging voluntary efforts to improve disclosure qualit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Working Group	Upgrading to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reporting entit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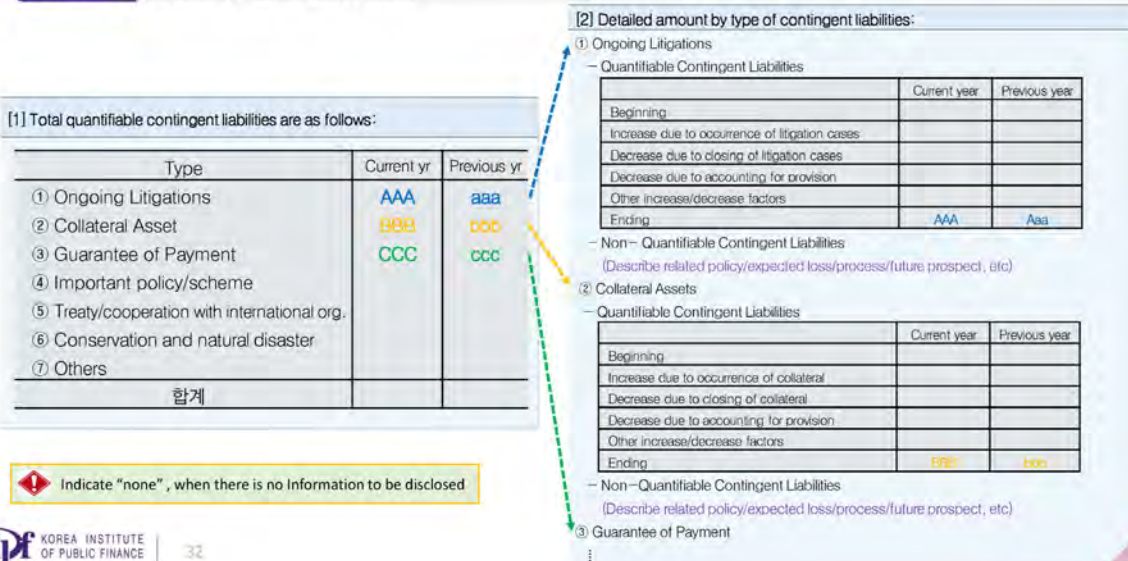
## 04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Management System of CL

### Proposal 1 Restructuring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 04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Management System of CL

### Proposal 2 Structuring Contingency Notes



Indicate "none",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to be disclosed

## 04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Management System of CL

### Proposal 3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improve the disclosure qua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 ❖ Improving essential supplementary information of F/S

- ✓ (Short-term) Adding "list" of key policies and important contracts(note of contingencies and contractual obligation) → **Completeness ↑**
- ✓ (Mid-term) Enhancing "list" to "contingency review table" by adding the likelihood of occurrence/financial impact → **Faithfulness ↑**  
**Completeness ↑**
  - Practical criterion for being disclosed in the note : likelihood of occurrence(High/Middle/Low) & Impact(Large/Medium/Small)
  - Whether or not included in the notes to F/S(contingency or contractual obligation) -> must indicate the reason for not including
- ❗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conducting teams and accounting teams (i.e., separation of duties and authority/responsibility)

#### ❖ (Long-term) Institutionalized reflection of financial risk of CL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operating key policies

- ✓ Establishment stage: Mandatory identification of contingencies and estimation of financial impact
- ✓ Operational stage: Revaluation of contingent liabilities during budget review and periodic re-review on financial sustainability

💡 UK's "Contingent Liability Framework"

## 04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Management System of CL

### Proposal 4 Establishing a basis for quasi-market discipline outside the reporting entity

#### ❖ Strengthen the role of review by "Government Accounting Financial Statistics Center"

- ✓ Publish the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by departments (every year) → **Creating an environment for quality improvement of disclosure**
- ✓ Include the analysis of the disclosure qua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 ❖ Launch of "Financial Disclosure Quality Award"

- ✓ Independently conduct by public organizations(e.g., academics/media/non-profit institutions/NABO)
  - Frequency: Annually or every two years
  - Co-host or sponsor by MOEF, responsible for national financial reporting, to enhance authority → **Enhancing incentives for improving quality of financial disclosure**
- ✓ Provide incentives to government departments with excellent financial disclosure score
  - Promotion of disclosure quality(grade) as one of major performance of a department (reporting entity)
  - Give a reward for excellent officials

## V. Summary and Conclusion

### 05 Summary and Conclusion

#### ❖ Characteristics inherent in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Korea

- **Regul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s 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
  - ✓ Recognition criteria: Conceptual definitions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s
  - ✓ Disclosure criteria: Structuring disclosure types from a general perspective, presenting simple examples
- **Practical difficulties in identifying and disclosing contingent liabilities**
  - ✓ High Level of Expertise: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various aspects such as accounting, finance, business
  - ✓ Discretionary Judgment: Scope and level of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decision-making of the working group
- **Circumstances for financial disclosure**
  - ✓ Absence of market discipline: No voluntary incentives for improving the disclosure quality of CL.
  - ✓ Insufficient disclosure regulations: Insufficient external pressure for faithful disclosure
- **Status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and disclosure**
  - ✓ Accounting teams (within reporting entities) with limited source information just prepare formal and ex-ante disclosures of CL.
  - ✓ Policy-conducting teams (within reporting entities) are not aware of managerial importance of aggregating and disclosing CL.
  - ✓ Planning, budgeting, and finance teams use less contingent liability information as a financial risk management tool

## 05 Summary and Conclusion

### ❖ Proposal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 **(Proposal 1) Restructuring of notes to the government F/S**
- **(Proposal 2) Structuring contingency notes**
- **(Proposal 3) Institutionalizing a system to improve the disclosure qua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 ✓ (Short-term/Mid-term) Enhancing completeness of contingency disclosure by improving essential supplementary information of F/S
  - ✓ (Long-term) Institutionalized reflection of financial risk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re policies and systems
- **(Proposal 4) Establishing a basis for quasi-market discipline outside the reporting entity**
  - ✓ Strengthen the role of review by "Government Accounting Financial Statistics Center"
  - ✓ Launch of "Financial Disclosure Quality Award"

THANK YOU!

# Appendix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Othe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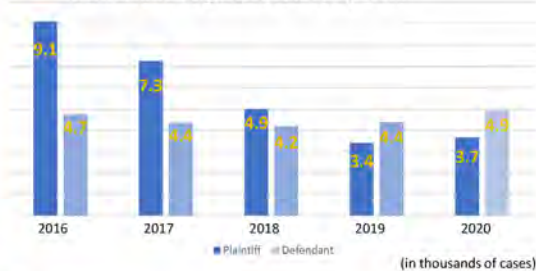
##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Litigations**

(in million Won)

Party to a lawsuit	2016		2017		2018		2019		2020		5year Average	
	Cases	Amount	Cases	Amount	Cases	Amount	Cases	Amount	Cases	Amount	Cases	Amount
Plaintiff	9,094	2,402,387	7,255	2,123,963	4,992	1,666,207	3,412	1,480,300	3,655	1,646,689	5,682	1,863,909
Defendant	4,742	7,545,780	4,356	9,135,583	4,185	7,466,684	4,377	6,657,328	4,930	8,975,250	4,518	7,956,125
Total	13,836	9,948,167	11,611	11,259,546	9,177	9,132,891	7,789	8,137,628	8,585	10,621,939	10,200	9,820,034

Number of litigation cases by Year



Amount of litigation valu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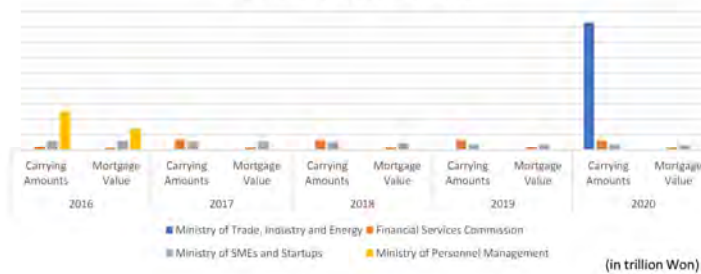
##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Collateral Assets

(in million Won)

Department	2016		2017		2018		2019		2020	
	Carrying Amounts	Mortgage Value	Carrying Amounts	Mortgage Value	Carrying Amounts	Mortgage Value	Carrying Amounts	Mortgage Value	Carrying Amounts	Mortgage Valu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	-	-	-	-	-	-	165,469	218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008	2,153	13,546	2,453	13,232	2,453	13,022	2,453	12,781	2,453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819	11,819	11,468	11,468	10,135	9,190	7,117	7,117	7,117	6,260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50,044	27,729	-	-	-	-	-	-	-	-
<b>Total</b>	<b>65,871</b>	<b>41,701</b>	<b>25,014</b>	<b>13,921</b>	<b>23,366</b>	<b>11,643</b>	<b>20,139</b>	<b>9,570</b>	<b>185,367</b>	<b>8,932</b>

Collateral Assets by year



##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Guarantee of Payments

(in million Won)

Department	2016	2017	2018	2019	2020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4,241,585	21,130,463	17,023,441	14,760,000	12,490,000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	-	-	576,383	559,489
<b>Total</b>	<b>24,241,585</b>	<b>21,130,463</b>	<b>17,023,441</b>	<b>15,336,383</b>	<b>13,049,489</b>

Outstanding balances of guarante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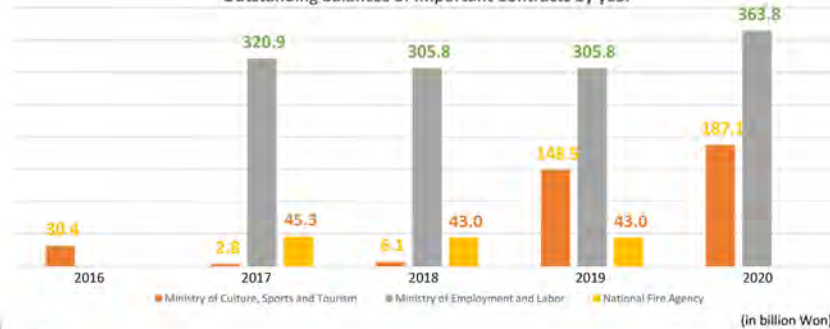
##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Important Contracts

(in million Won)

Department	2016	2017	2018	2019	202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0,423	2,792	6,126	148,474	187,14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320,850	305,805	305,805	363,803
National Fire Agency	—	45,298	43,007	43,007	—
Total	30,423	368,940	354,938	497,286	550,943

Outstanding balances of Important Contract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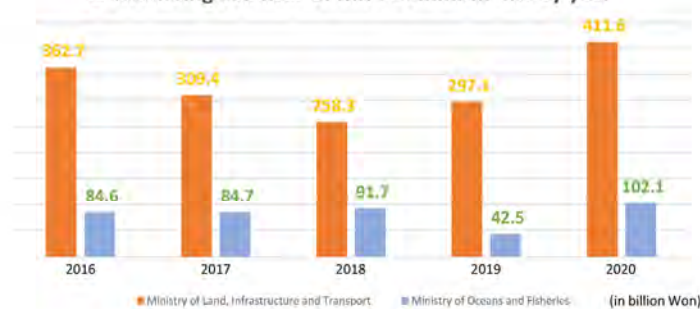
##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of CL in Korea (by type)

### ❖ Note 5 on Government F/S 2021 (contingencies and commitments) : MRG

(in million Won)

Department	Entity	2016	2017	2018	2019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pecial Account for Traffic Facilities (project account for roads)	362,686	309,430	258,300	297,100	411,61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pecial Account for Traffic Facilities (project account for harbors)	84,636	84,738	91,715	42,525	102,101
Total		447,322	394,168	350,015	339,625	513,717

Outstanding balances of MRG Commitments by year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United States of America

#### Structure of Note 22(Contingencies) on Government F/S

Structure	Main contents
1. General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concept of loss contingencies and the responsibilities/roles of the government</li> <li>The classification of loss continge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gal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li> <li>Insurance and guarantees</li> <li>Other contingencies</li> </ul> </li> </ul>
2. Financial treatment of loss continge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FFAS No.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li> <li>SFFAS No.47, Reporting Entity</li> </ul>
3. Details of loss contingencies by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le of accrued liabilities and estimated range of loss for certain cases(including the information of lower and upper end range)</li> <li>Detailed descrip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ss contingencies, the likelihood of loss and the amounts of potential loss by programs and entities</li> </ul>

- Classifying loss contingencies into **three categories**
- Explaining the criteria for how to account and disclose loss contingencies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United States of America

#### 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as of September 30, 2021, and 2020

	2021			2020		
	Accrued Liabilities	Lower End	Upper End	Accrued Liabilities	Lower End	Upper End
Probable	158.7	75.0	42.7	40.1	39.4	41.9
Reasonably possible	26.8	25.1	28.2	26.4	26.7	26.8

In accordance with the NWPA, DOE entered into more than 49 standard contracts with utilities in which it retain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nuclear waste fund. DOE agreed to begin disposal of SNF by January 31, 1998. Because DOE has no facility available to receive SNF under the NWPA, it has been unable to begin disposal of the utilities' SNF as required by the contracts. Significant litigation claiming damages for partial breach of contract has ensued as a result of this delay. Based on settlement estimates, the total liability estimate as of September 30, 2021 is \$39.9 billion. After deducting the cumulative amount paid of \$9.8 billion as of September 30, 2021 under settlements, and as a result of final judgments, the remaining liability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1 billion, compared to approximately \$30.4 billion as of September 30, 2020.

A number of class action and/or multiple plaintiff tort 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current and former DOE contractors in which the plaintiffs seek damages for alleged exposure to radioactive and/or toxic substances as a result of the historic operations of DOE nuclear facilities. Collectively, in these cases, damages of \$1.2 billion are currently sought.

Numerous litigation cases are pending where the outcome is uncertain or it is reasonably possible that a loss has been incurred and where estimates cannot be made. These are other litigation cases where the plaintiffs have not made claims for specific dollar amounts, but the settlement may be significant.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se legal actions for which the potential loss could not be determined may materially affect the U.S.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 or operating results.

#### Insurance and Guarantees

##### Entities Reporting under FASB

FBGC, FICSC, and FZIC are the main contributing consolidation entities with significant insurance or guarantee programs that apply FASB standards. Insurance in three estimates and a discussion on the FBGC coverage are disclose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programs. Current conditions indicate it is unlikely that losses equal to the maximum risk exposure described below would be incurred.

FBGC issues pension benefits for participants in covered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Under current law, FBGC's liabilities may be paid only from FBGC's assets. Accordingly, FBGC's liabilities are not backed by the full faith of the U.S. government. As of September 30, 2021, FBGC's single-employer and multi-employer pension insurance programs had \$130.7 billion and \$1.4 billion in total assets, respectively. In FY 2021, FBGC reported pension insurance program total assets for single-employer and multi-employer of \$143.5 billion and \$1.1 billion, respectively.

FBGC operates two separate pension insurance programs: a single-employer program and a multi-employer program. The single-employer program covered about 2.7 million people (including those in plans that FBGC has assumed) in FY 2021, down from about 23.5 million people in FY 2020, and the maximum guaranteed annual benefit for participants who are in a plan that terminated in FY 2021 and commence benefits at age 65 is \$72,400. The maximum guaranteed benefit for

##### Insurance in-force as of September 30, 2021, and 2020

	2021	2020
General Motor - GMEL	2,125.6	3,117.7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 NCUA	1,600.0	1,400.0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 NFIP	1,241.2	1,208.9
Federal Crop Insurance - USDA	395.0	127.0

General Motor guarantees NCRB and commitments, which requires General Motor to revalue risks. General Motor's NCRB program guarantees the tim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securities backed by assets of mortgage loans insured by FICA, Public and Indian Housing, Rural Housing Service, and VA. Accordingly, General Motor's credit risk is related to controlling NCRB in general assigned by guarantee. In-force as of September 30, 2021 - Loans Backed by Net and Loan Guarantees Liabilities. NCUA operates and manages the NCUAIF, insuring the deposits of over 2.9 million national banks in all insured.

#### Other Contingencies

DOT, DHS, Treasury, and SEC reported the following other contingencies:

FREMA has a reasonably possible contingency due to their authority to approve projects using advance construction under 23 U.S.C. 1151(a) and 31 U.S.C. 101-430-108. FREMA does not guarantee the ultimate funding for the state for these "advance construction" projects and, accordingly, does not obligate any funds for these projects. The state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to FREMA that a project be converted to a regular federal aid project at any time provided that sufficient

When a contingency originates from the U.S. government's involvement i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 responsible reporting entity must establish a contingent liability or include a required note disclosure in its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guidance in SFFAS No. 5. Refer to Note 21 - Commitme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commitments related to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Aggregating the amounts of accrued liabilities and estimated range of loss based on the likelihood of the loss in a table
- Describing the overview, amount of potential loss, progress and future outlook of key policy program involved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 Australia

#### ➤ Structure of Note 9(Risks) on Government F/S

- 9A Contingencies
- 9B Financial instruments
- 9C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 ➤ Structure of Note 9A(Contingencies) on Government F/S

Structure	Main contents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li>· No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li>·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ul>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Claims and proceedings	
Remediation and decontamination	
Other contingencies	
Contingent assets	

- Deploying the information on Contingencies as a subordinate item of the note on Risks
- Classifying Contingencies into **five categories**
- Classifying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into quantifiable/non-quantifiable
- Classifying **environmental contingencies** separately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 Australia

#### ➤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45,075	42,182	45,791	43,061
Increases	2,753	2,777	2,843	3,043
Remeasurement	(1,543)	187	(1,557)	198
Liabilities crystallised	-	(18)	-	(18)
Expired	(36)	(13)	(203)	(493)
As at 30 June	46,249	45,075	46,874	45,791

(U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U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Administering portfolio
Terrorism related: Under the Terrorism Insurance Act 2003 the 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 administers a terrorism reinsurance scheme for commercial property and associated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arising from a Declared Terrorism Incid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guarantees	Treasury / Home Affairs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Administering portfolio
Financial Claims Scheme - Deposits: The scheme is authorized under the Banking Act 1959 and guarantees deposits up to \$250,000 at eligible 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When last estimated as at 31 December 2020, deposits eligible for coverage under the Financial Claims Scheme were approximately \$1.1 trillion (31 December 2019: \$950 billion)	Treasury
Financial Claims Scheme - Insurance: The Policyholder Compensation Facility established under the Insurance Act 1973 provides a mechanism for making payments to eligible beneficiaries with a valid claim against a failed general insurer	Treasury

- Aggregating quantifiable contingencies in a table in the perspective of **movements, balances, amounts of accrued liabilities**
- Describing unquantifiable contingencies focusing on **overview, amount of potential loss, progress and future outlook** of key policy program invol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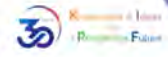
#### ➤ U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200	19,772	20,273	19,844
Increases	95	-	96	-
Remeasurement	(1,318)	429	(1,323)	429
As at 30 June	18,977	20,200	19,045	20,273

#### ➤ Claims and proceedings

	General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2021 \$m	2020 \$m	2021 \$m	2020 \$m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6	133	211	136
Increases	45	150	45	152
Remeasurement	(66)	146	(70)	146
Liabilities crystallised	(9)	(216)	(9)	(216)
Expired	(34)	(7)	(34)	(7)
As at 30 June	142	206	143	211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 New Zealand

#### ➤ Structure of Note 26(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on Government F/S

Structure	Main contents
General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li> <li>The criteria for how to disclose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li> </ul>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li>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by source</li> </ul>
Uncalled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le for the amount of contingent liabilities related to uncalled capital by organizations</li> <li>Details of those contingent liabilities by organizations</li> </ul>
Guarantees and Indem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le for the amount of contingent liabilities related to guarantees and indemnities by promises</li> <li>Details of those contingent liabilities by promises</li> </ul>
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le for the amount of contingent liabilities related to 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 by types</li> <li>Details of those contingent liabilities by types</li> </ul>
Othe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le for the amount of othe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by types</li> <li>Details of those contingent liabilities by types</li> </ul>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emnities</li> <li>Legal claims and proceedings</li> <li>Other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 Explaining the concepts and disclosure criteria of contingent liabilities
- Disclosing three types of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as fixed items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 New Zealand

#### ➤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comprehensive table)

	Actual	
	30 June 2021	30 June 2020
	\$m	\$m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ncalled capital	8,208	8,284
Guarantees and indemnities	348	263
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	213	481
Othe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517	425
<b>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b>	<b>9,286</b>	<b>9,453</b>
By source		
Care Covenants	6,530	6,453
Contractual Obligations	137	80
Inter-segment allocations	196	310
<b>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b>	<b>6,863</b>	<b>6,843</b>

#### Materiality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nvolving amounts of over \$20 million are separately disclosed. Any quantifiable contingencies less than \$20 million are included in the 'other quantifiable' total. Some contingencies are not able to be quantified; these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are disclosed as at 30 June 2021 where they are expected to be material but not remeasured. Where there is an obligation and a reliable estimate can be made, amount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 ➤ Details of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summary table)

	Actual	
	30 June 2021	30 June 2020
	\$m	\$m
Asian Development Bank	3,157	3,3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romissory notes	1,802	2,058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637	1,7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arrangements to borrow	1,364	493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527	575
Other uncalled capital	19	19
<b>Total uncalled capital</b>	<b>8,568</b>	<b>8,384</b>

#### (Descriptions)

**Asian Development Bank (ADB)**  
New Zealand was a founding regional member of the ADB, whose aim is to accelerate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South Pacific. New Zealand is a regional member but as a donor is not entitled to borrow from the Bank. Accordingly, New Zealand is in a similar position to a non-regional member, and contributes to the ADB's resources only as required by the ADB.

**IMF Promissory Notes**  
New Zealand's subscription to the IMF is partly paid in cash and partly in promissory notes (being uncalled capital). The respective levels of called and uncalled capital change when calls are made by the IMF under the Financial Transactions plan to provide loan packages to borrowing countries. Even though promissory notes are technically 'at call', they are treated as contingent liabilities, as there ar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 actual ability to call them, and there is no realistic estimate of either the amount or the timeframe of any call.

#### ➤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Descriptions)

Event description	Environment of indemnification	Accrued indemnification
Contract Energy Limited	A number of indemnification contracts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in relation to the sa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The Government has entered into indemnification contracts to ensure the sa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is completed on a going concern basis.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in relation to the sa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Government of New Zealand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ct 1993,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is requir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IMF.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IMF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IMF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Government of New Zealan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ct 1993,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is requir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IBRD.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IBRD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IBRD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Government of New Zealand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s set out 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ct 2015,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is requir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AIIB.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AIIB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AIIB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Government of New Zealand - Other uncalled capital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in relation to the sa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The Government is not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curr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in relation to the sa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Energy Limited.

**Legal claims and proceedings**  
There are numerous legal actions that have been brought against the Government, however, in the majority of these actions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amount of any liability can be made, and these are disclosed as contingent liabilities. The majority of these actions are not expected to be material but not remeasured. Where there is an obligation and a reliable estimate can be made, amount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litigation**  
Litigation involving ACC arises mainly from challenges to operational decisions made by ACC through the statutory review and appeal process, but also occasionally includes general civil proceedings such as judicial review applications. The majority of appeals are able to be managed on a case by case basis, depending on the merit of the issue in dispute, and settled under ACC dispute management expert.

**Apiculture Settlements**  
Under the Māori Commercial Aquaculture Claims Settlement Act 2004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vide regional fishery 20% of future aquaculture growth. This settlement is universal because it is not ongoing and prospective settlement. An aquaculture in New Zealand grows, settlement obligations arise, but may choose to accept prospective settlement.

- Providing a summary table fo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Disclosing contingent liabilities/assets involving amounts of over \$20million(materiality threshold) separately
- Describing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focusing on overview, amount of potential loss, progress and future outlook of key policy program involved

## Appendix 2 Cases of Disclosure of CL in Foreign Countries



### ❖ Canada

#### ➤ List of disclosures for contingent liabilities on Government F/S

List	Main contents
Section 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te 7] Provisions for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aims</li> <li>- Guarantees provided by the government</li> <li>-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sessed taxes under appeal</li> <li>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ul> </li> </ul> </li> <li>· [Note 8]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s retirement oblig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li> <li>- Other environmental liabilities</li> </ul> </li> <li>· [Note 19] Contractual obligation and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ractual obligations</li> <li>- Contractual rights</li> </ul> </li> </ul>
Section 11. Contractual obligations, contractual rights and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ractual obligation</li> <li>· Contractual rights</li> <li>·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arantees</li> <li>- 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ul> </li> </ul>

-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Section 2(Notes on F/S) and Section 11(Detailed information)
- Disclosing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contractual obligations as separate notes

주제발표

##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Presentation

### UK case: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

Manj Kalar

Principal Consultant of Kalar Consulting



#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보증 및 배상을 중심으로



KALAR CONSULTING



KALAR CONSULTING

# 우발부채

'숨겨진' 재정위험에  
노출된 국가들

## 우발부채의 종류\*



\* 관리 위험을  
중심으로



KALAR CONSULTING

This infographic illustrates four types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each represented by a vertical bar with an icon and text:

- 보증 (Guarantee):** Represented by a padlock icon. Text: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시 정부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When a third party fails to fulfill its debt, the government agrees to pay the debt).
- 배상 (Compensation):** Represented by a gavel icon.
- 송송 (Dispute Resolution):** Represented by a scale of justice icon.
- 구매자 보호 (Buyer Protection):** Represented by a shield icon.

KALAR CONSULTING logo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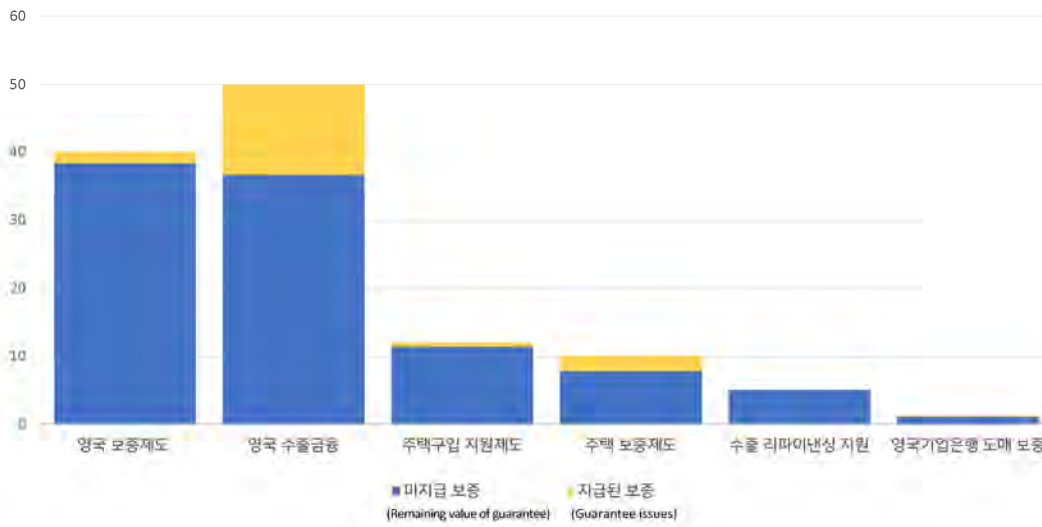
This infographic illustrates four types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each represented by a vertical bar with an icon and text:

- 보증 (Guarantee):** Represented by a padlock icon.
- 배상 (Compensation):** Represented by a gavel icon. Text: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경우" (When a specific event occurs, the government agrees to bear the costs).
- 송송 (Dispute Resolution):** Represented by a scale of justice icon.
- 구매자 보호 (Buyer Protection):** Represented by a shield 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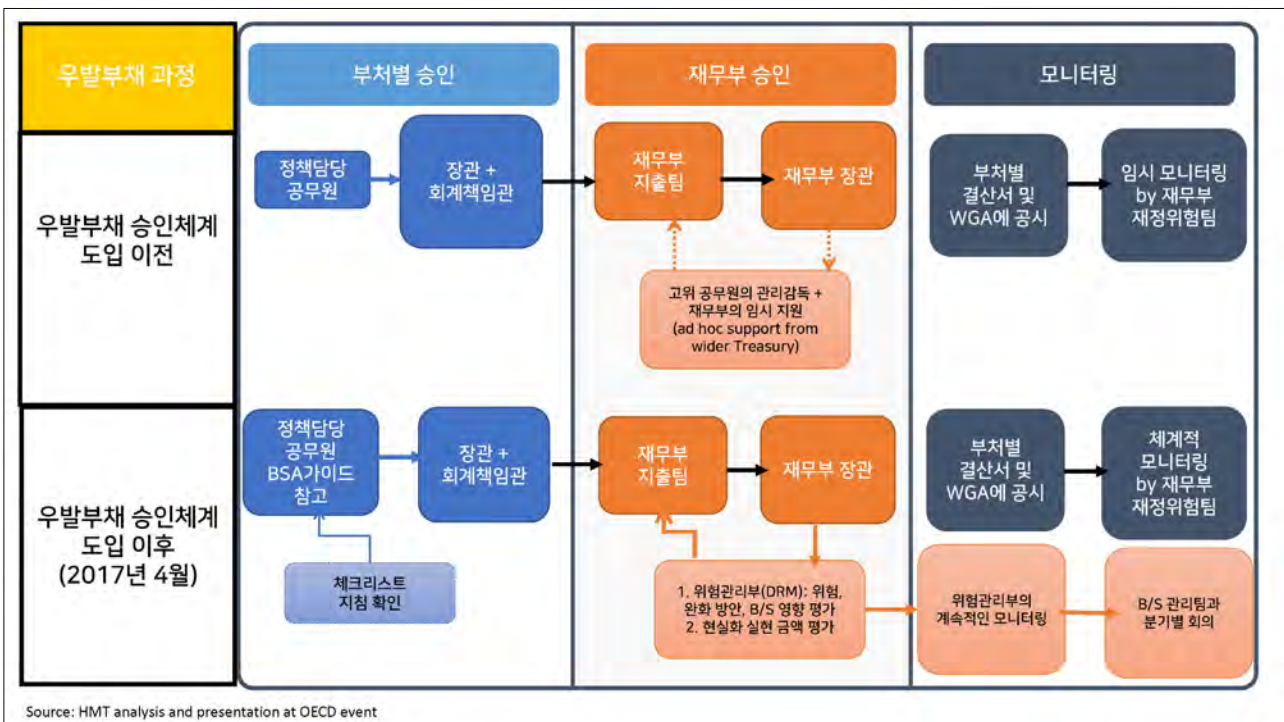
KALAR CONSULTING logo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 보증: 위험 노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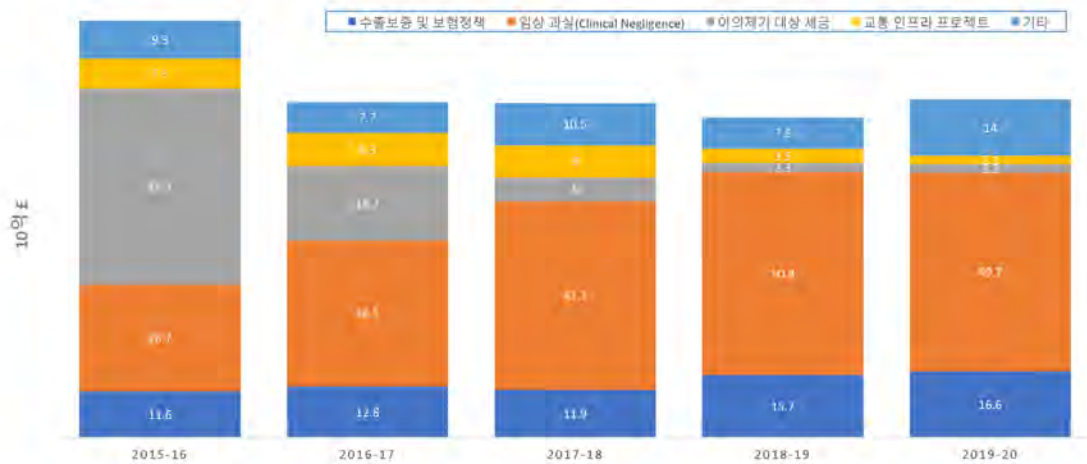
Source: NAO report: Analysis of provisions and contingent liabilities 2016



Source: HMT analysis and presentation at OECD event



## 영국의 우발부채 현황(2015-16회계연도 ~ 2019-20회계연도)



## 영국의 우발부채 :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remote) & 희박하지 않은 경우(non-remote)



### 근거

- Question A: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Question B: 왜 대상은 우발부채인가?
- Question C: 우발부채 발행 외에 고려할 대안이 있는가?

### 노출 정도

- Question A: 우발부채의 최대규모는 얼마인가?
- Question B: 해당 규모의 근거는 무엇인가?
- Question C: 우발부채의 만기는 언제인가?
- Question D: 이러한 만기가 왜 필요한가?
- Question E: 만기 전에 상황 변동 시 출구전략/해결책이 있는가?

### 위험과 수익

- Question A: 무엇이 우발부채를 현실화하는가?
- Question B: 현실화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Question C: 우발부채의 추정금액은 얼마인가?
- Question D: 우발부채와 관련된 예상 손실은 얼마인가?
- Question E: 만약 위험이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면, 재무부는 위험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받는가?
- Question F: 우발부채의 수익 대비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Start



### 지불능력

- Question A: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부채의 예산은 충분한가?
- Question B: 부채의 가용자원 대비 우발부채의 예상 손실 비율은 얼마인가?
- Question C: 부채의 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Question D: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공공부문순차입(PSNB)과 공공부문순채무(PSND) 등 재정집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위험관리와 완화

- Question A: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은 누가 관리하며 이러한 위험 관리에 어떤 거버넌스 절차를 이용하는가?
- Question B: 어떤 위험 완화 도구(risk mitigation tools)를 고려하였는가?

**5 단계**  
우발부채  
체크리스트

Start

근거

노출 정도

위험과 수익

위험 관리와 완화

지불 능력

Finish

Question A: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Question B: 왜 그 대상은 우발부채인가?  
Question C: 우발부채 발행 외에 고려할 대안이 있는가

**5 단계**  
우발부채  
체크리스트

Start

근거

노출 정도

위험과 수익

위험 관리와 완화

지불 능력

Finish

Question A: 우발부채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Question B: 해당 규모의 근거는 무엇인가?  
Question C: 우발부채의 만기는 언제인가?  
Question D: 이러한 만기가 왜 필요한가?  
Question E: 만기 전에 상황 변동 시 출구전략/해결책이 있는가?

**5 단계**  
우발부채  
체크리스트

Start

근거

노출 정도

위험과 수익

위험 관리와 완화

지불 능력

Finish

Question A: 무엇이 우발부채를 현실화 하는가?  
 Question B: 현실화 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Question C: 우발부채의 추정금액은 얼마인가?  
 Question D: 우발부채와 관련된 예상 손실은 얼마인가?  
 Question E: 만약 위험이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면, 재무부는 위험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받는가?  
 Question F: 우발부채의 수익 대비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5 단계**  
우발부채  
체크리스트

Start

근거

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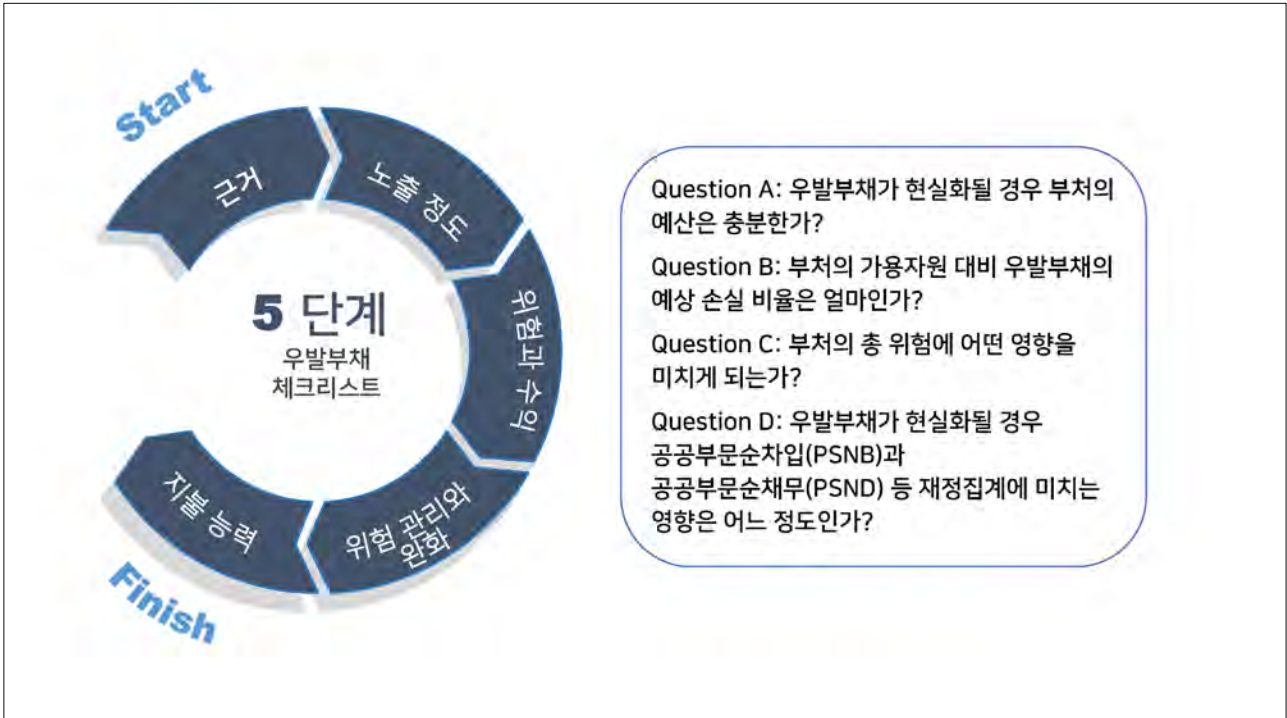
위험과 수익

위험 관리와 완화

지불 능력

Finish

Question A: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은 누가 관리하며 이러한 위험 관리에 어떤 거버넌스 절차를 이용하는가?  
 Question B: 어떤 위험 완화 도구(risk mitigation tools)를 고려하였는가?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 (CLCC: 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

- 2021년 4월 설립
- 최후 보험자의 권장사항 달성
-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능
- 보증과 배상을 중심으로

## 20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우발부채 개수

\*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Source: CLCC analysis of department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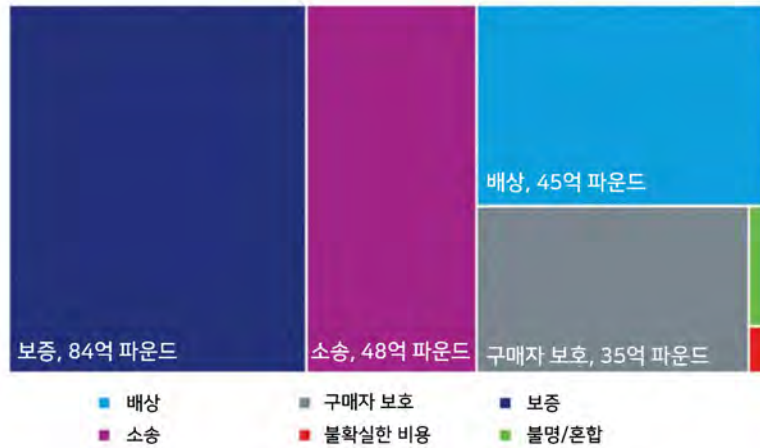
## 결산서상\* 발생가능성에 따른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10억 £)

\*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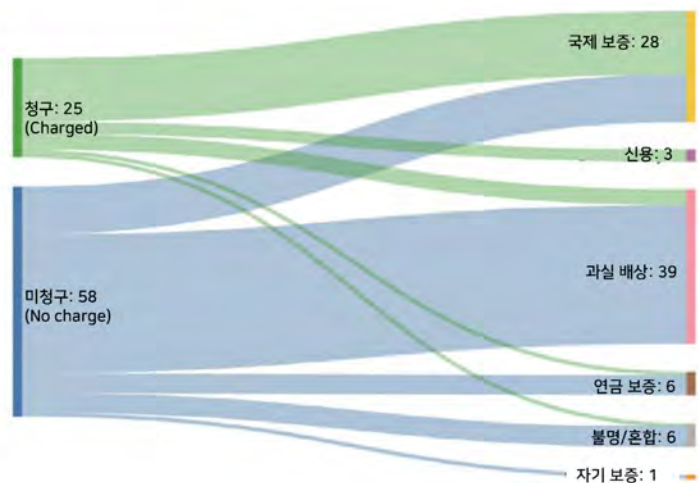
Source: CLCC analysis of department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 우발부채의 규모



Source: CLCC analysis

## 범주별 청구 및 미청구된 우발부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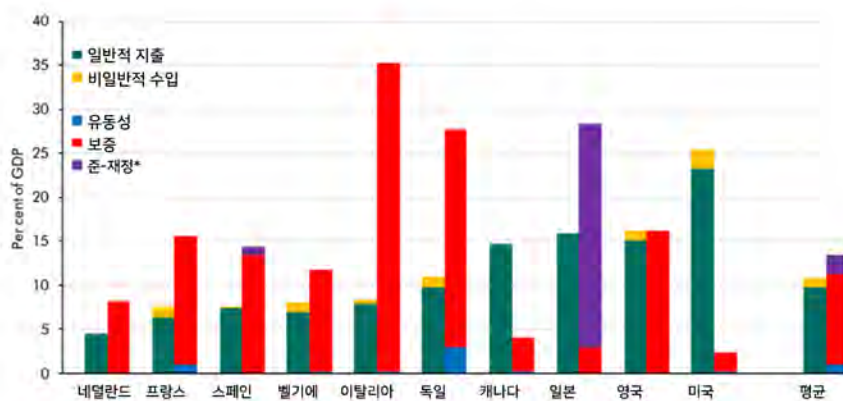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 1차년도 검토보고서

- 우발부채 총 2,160억£
- 총 326개의 우발부채
- 계량화된 우발부채 137개
- 계량화 되지 않은 우발부채 1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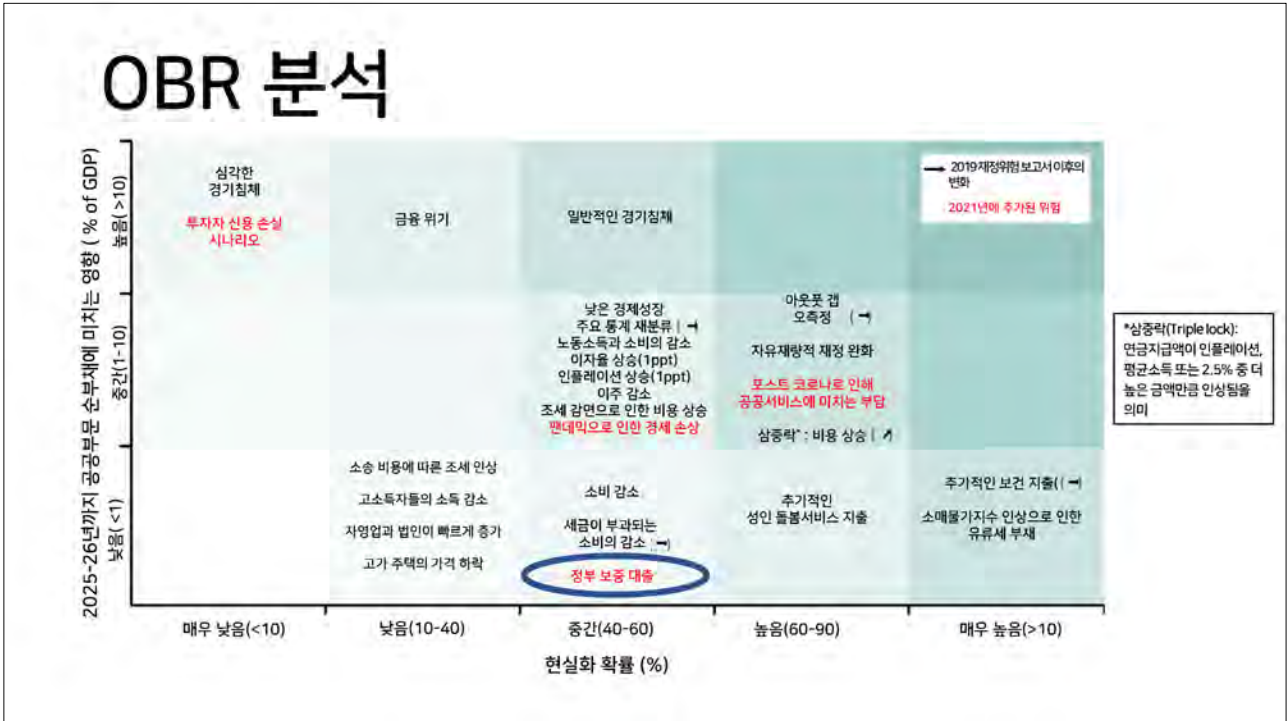
## 사례 연구: Covid-19에 따른 민간기업 지원



\*준재정(quasi-finance): 중앙은행 또는 국영은행이 제공하는 은행대출 보조 및 공공기업이 제공하는 비상업적인 공공서비스로 예를 들면, 공공기업이 시장가보다 싸게 제공하는 연료, 전기, 수도가 있다.

Note: 해당 수치와 차트는 16개국의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의 IMF 추정값임

Source: IMF, OBR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 다음 단계

- 01.** 더욱 강건한 정부 간 데이터 취합 과정
- 02.**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정부 데이터를 통합
- 03.**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

KALAR CONSULTING

# 시사점

우발부채 위험이 노출된 다른 국가에게  
재정위험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 시사점



- 데이터: 세부사항, 가정, 관리, 판단, 일관성, 정의
- 위험: 위험을 이해하는 것, 위험 노출, 위험 인식
- 전문성: 다양한 기술, 신용 전문 지식, 보험, 계리
- 지침: 체크리스트, 우발부채의 계량화



KALAR CONSULTING

## Manj Kalar



**Email address**

Manj@kalarconsulting.com



**Contact info**

+44 (0) 7740 305 978



**Social media**

@ManjKalar

Manj Ka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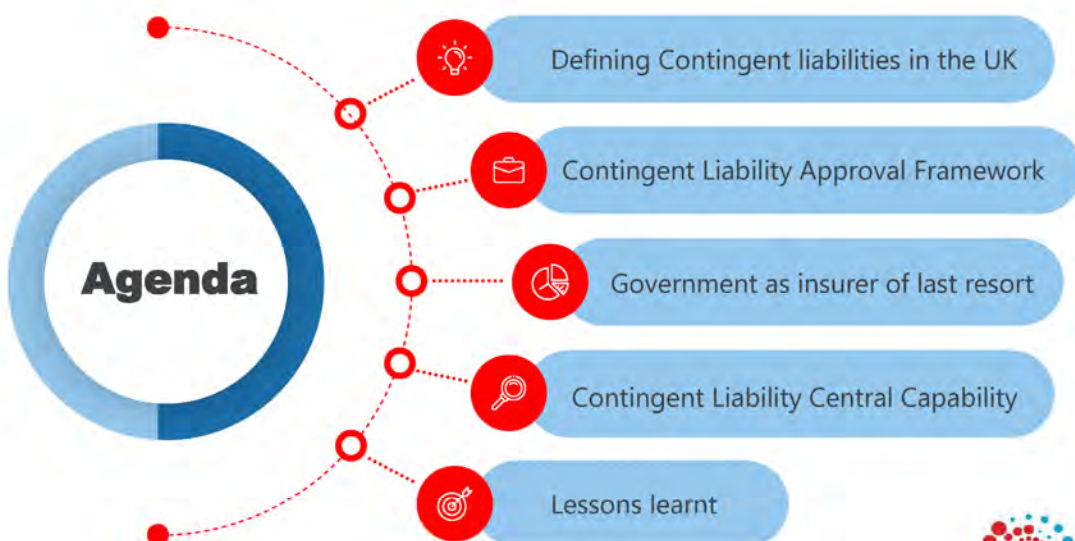
KALAR CONSULTING

#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UK

Focus on Guarantees and Indemnities



KALAR CONSULTING



KALAR CONSULTING

# Contingent Liabilities

Expose jurisdictions to significant 'hidden' fiscal risk

## Contingent Liability typology\*



\* Focus on managing risk

### 5-Item Revealing Columns PowerPoint Template

**Guarantees**  
When the government agrees to pay the debts of a third party if they default

**Indemnities**

**Legal cases**

**Purchaser Protection**



### 5-Item Revealing Columns PowerPoint Template

**Guarantees**

**Indemnities**  
When the government agrees to cover the costs if a certain event occurs

**Legal cases**

**Purchaser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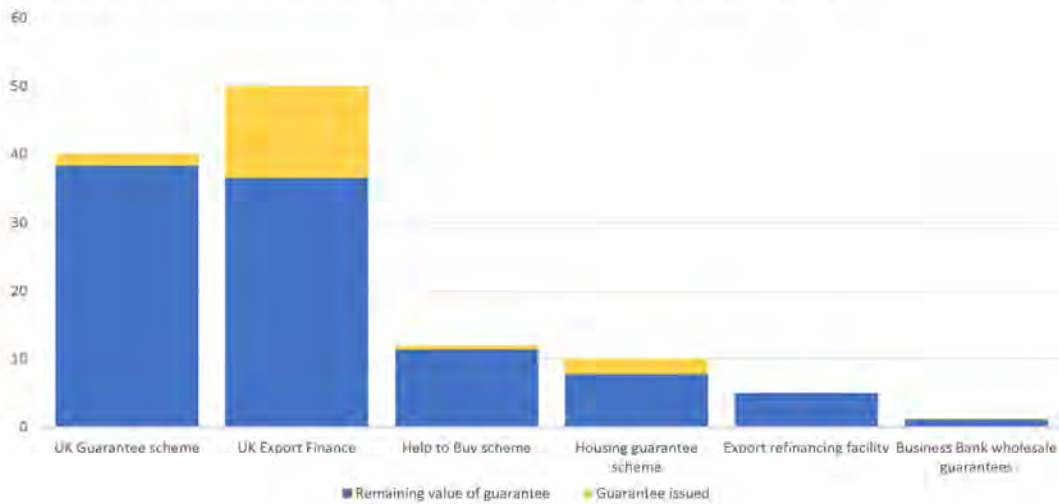
### 5-Item Revealing Columns PowerPoint Temp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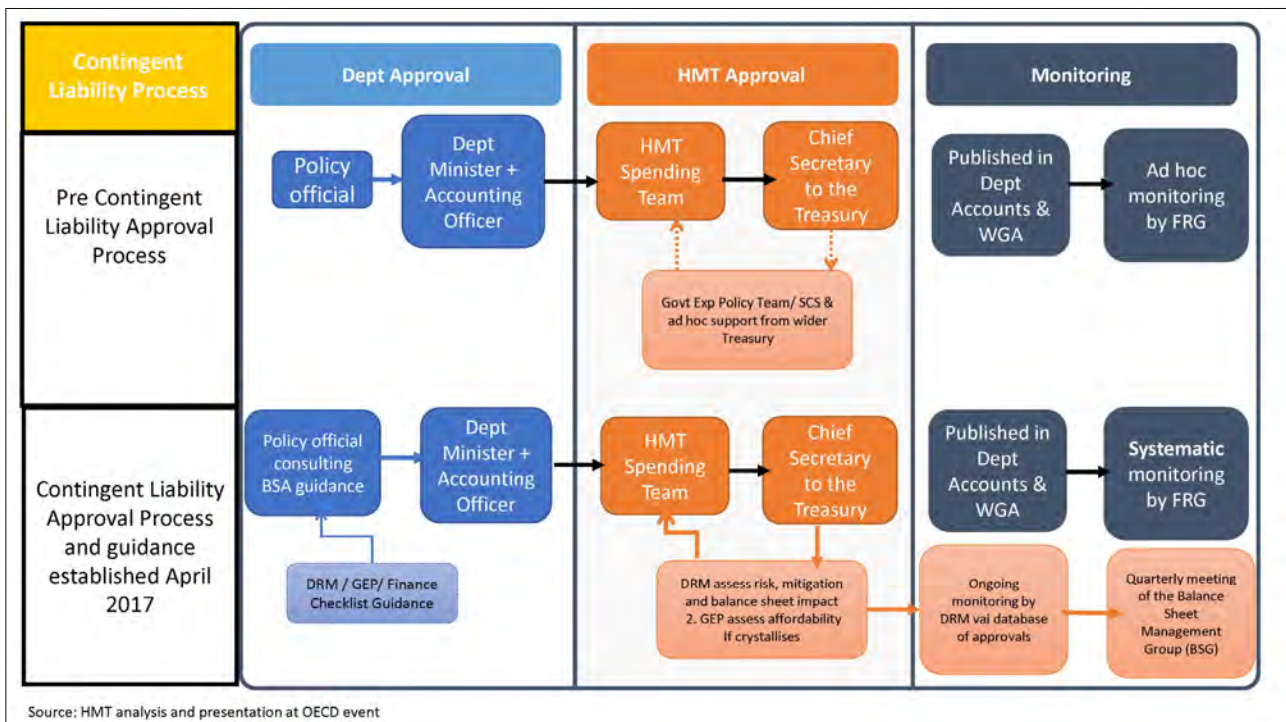
### 5-Item Revealing Columns PowerPoint Temp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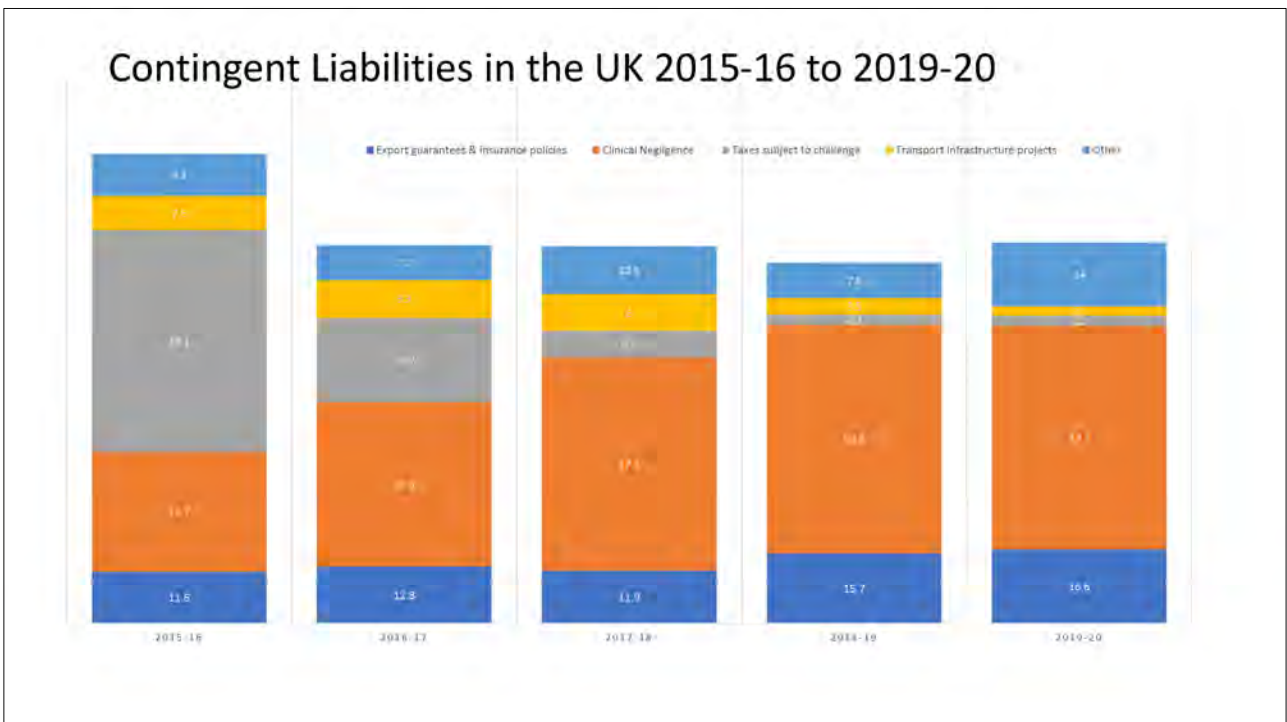
## Guarantees: Level of risk exp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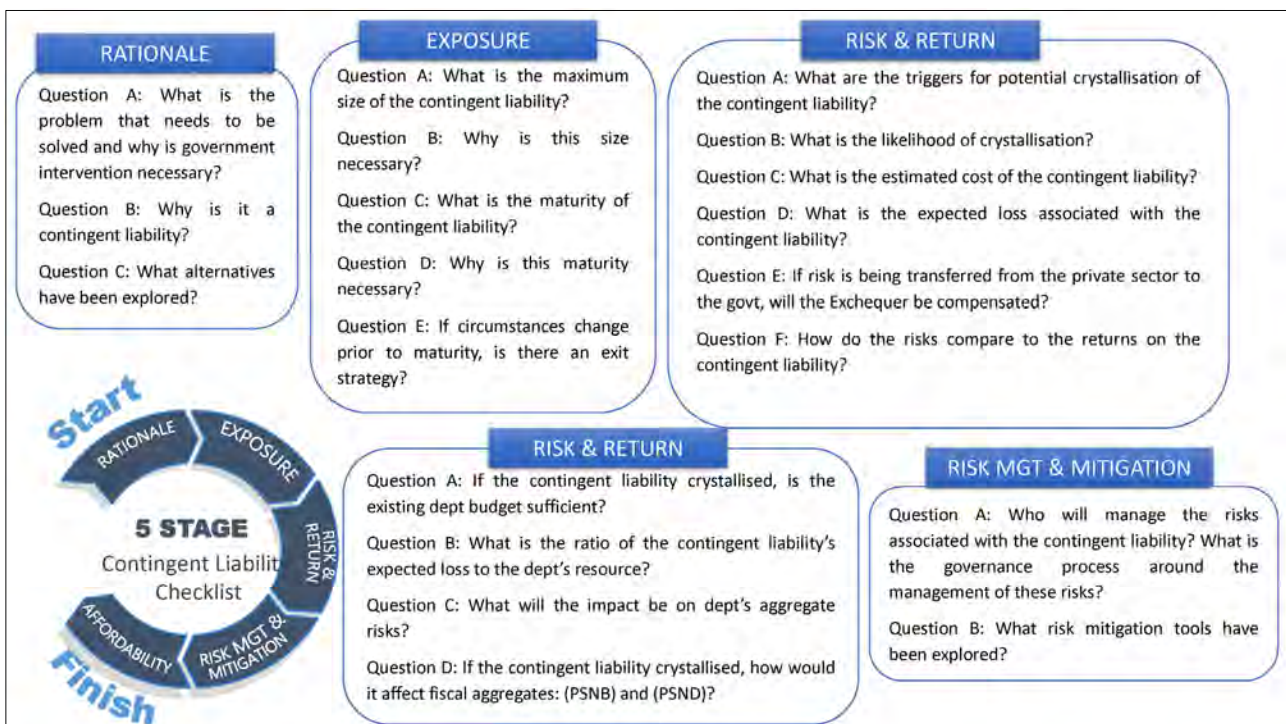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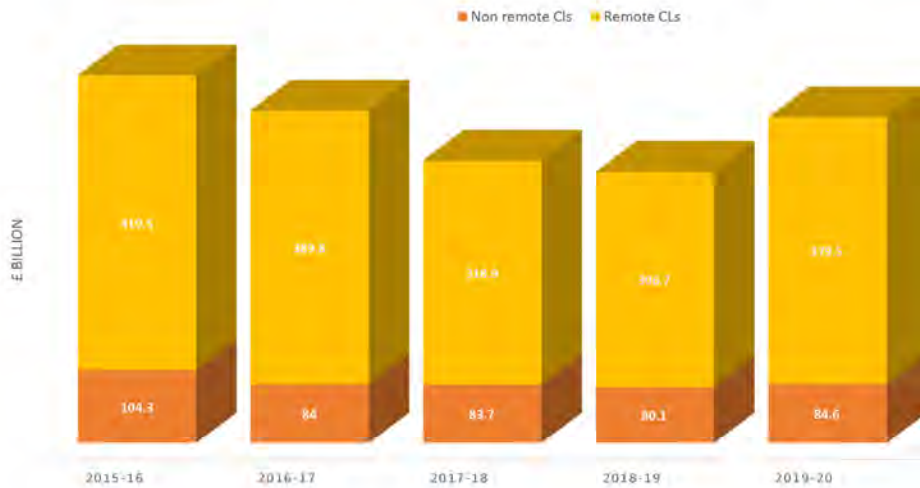
Source: NAO report: Analysis of provisions and contingent liabilitie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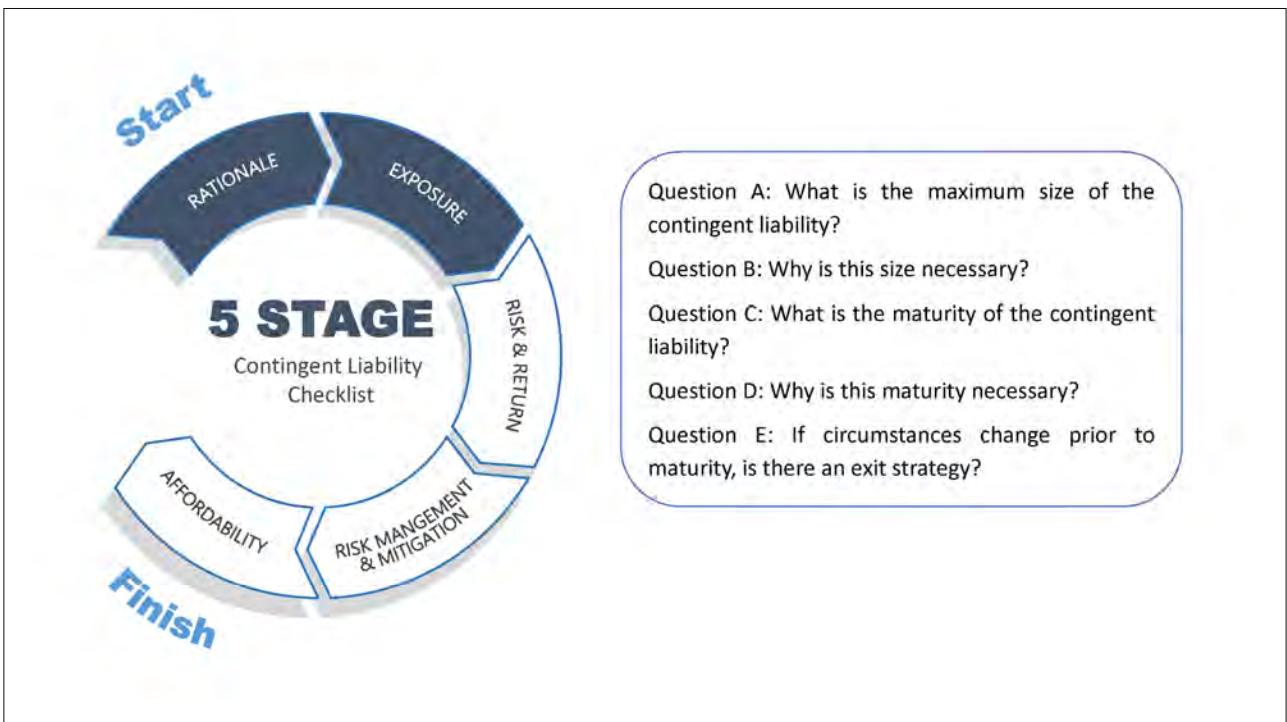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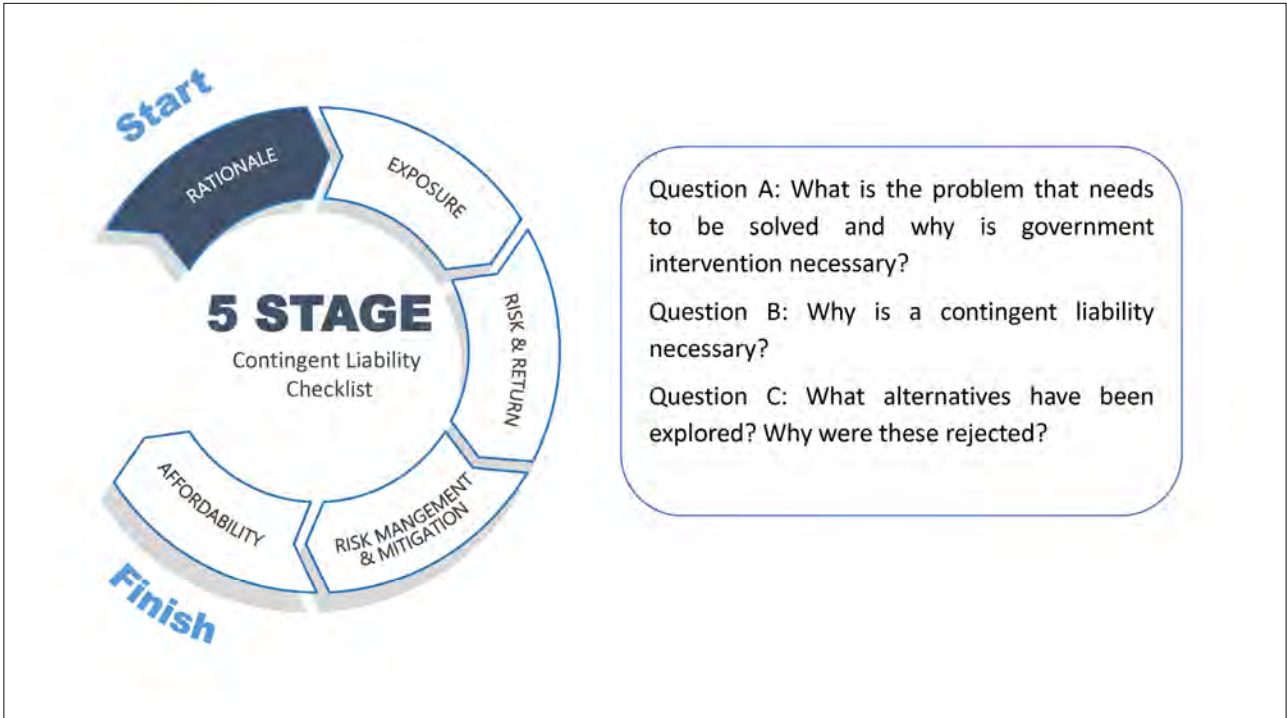



Source: HMT analysis and presentation at OECD event



## UK Contingent Liabilities: Remote & non remote







The diagram is a circular flow chart with five segments: RATIONALE, EXPOSURE, RISK & RETURN, RISK MANGEMENT & MITIGATION, and AFFORDABILITY. It is labeled '5 STAGE Contingent Liability Checklist' in the center, with 'Start' at the top and 'Finish' at the bottom.

Question A: What are the triggers for potential crystallisation of the contingent l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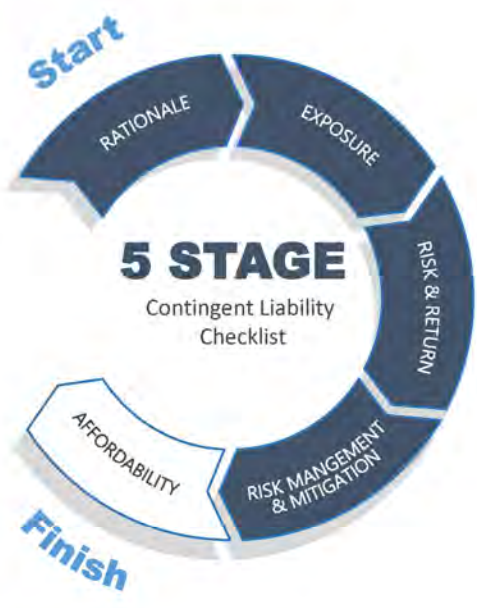
Question B: What is the likelihood of crystallisation?

Question C: What is the estimated cost of the contingent liability?

Question D: What is the expected loss associated with the contingent liability?

Question E: If risk is being transferr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govt, will the Exchequer be compens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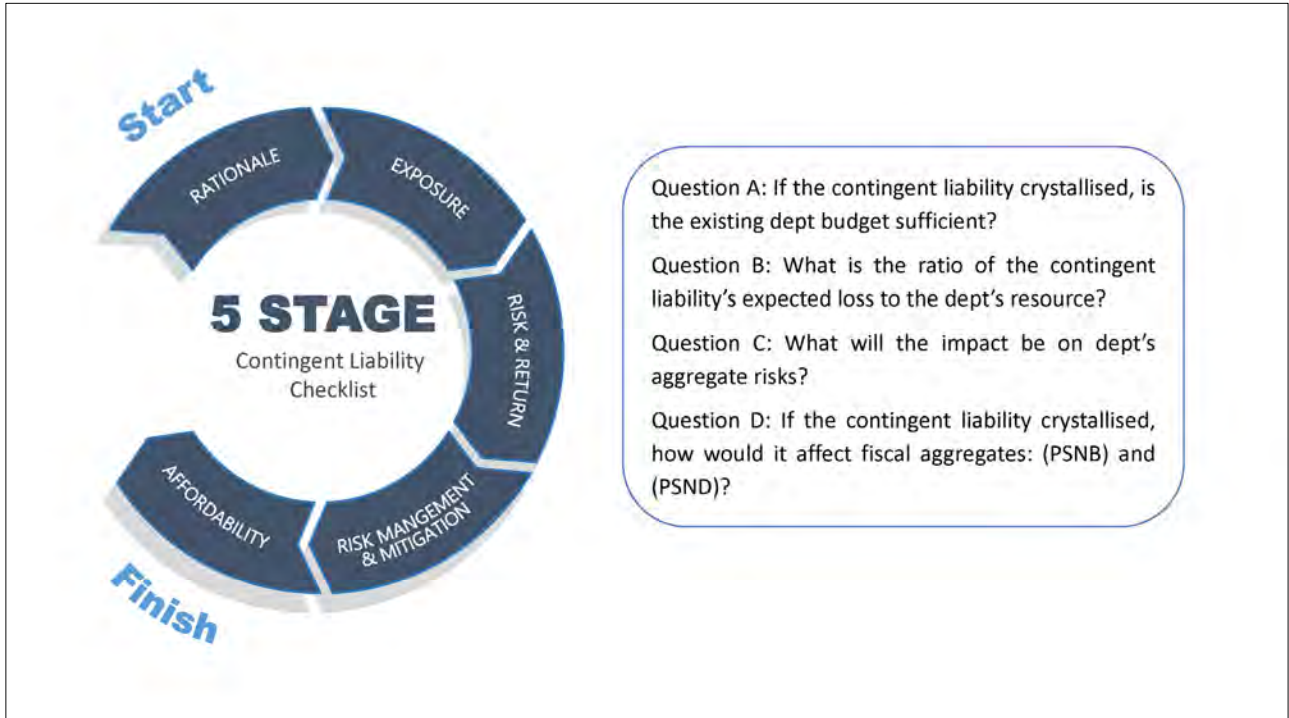
Question F: How do the risks compare to the returns on the contingent liability?



The diagram is a circular flow chart with five segments: RATIONALE, EXPOSURE, RISK & RETURN, RISK MANGEMENT & MITIGATION, and AFFORDABILITY. It is labeled '5 STAGE Contingent Liability Checklist' in the center, with 'Start' at the top and 'Finish' at the bottom.

Question A: Who will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contingent liability? What is the governance process around the management of these ri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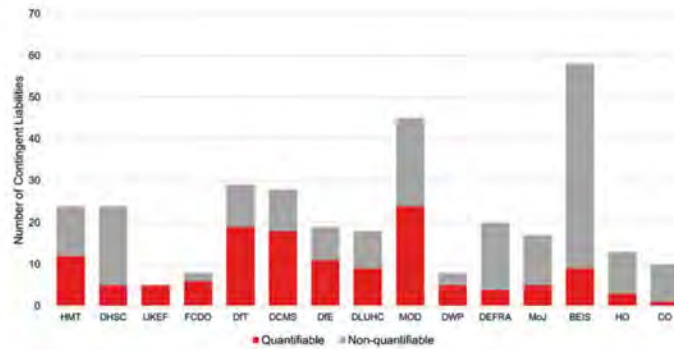
Question B: What risk mitigation tools have been explo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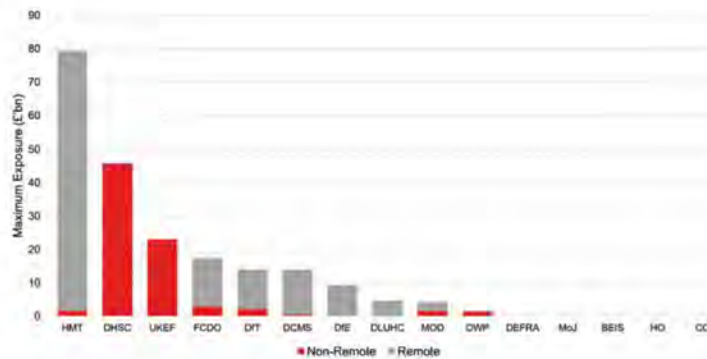
## 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

- Established April 2021
- Achieve Insurer of last resort recommendations
- Independent expertise, advisory function
- Focus on financial guarantees and indemnities

Number of contingent liabilities across departments p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Value of quantified remote and non-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across departments p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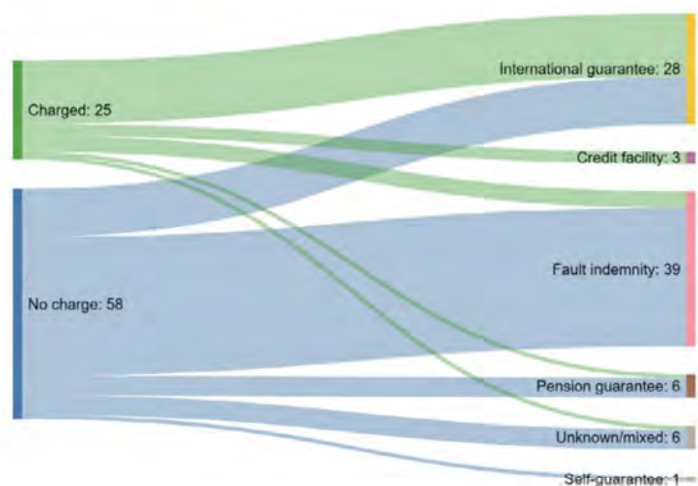
Source: CLCC analysis of department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 Stock of Contingent Liabilities



Source: CLCC analysis

## Breakdown of charged and uncharged contingent liabilities, by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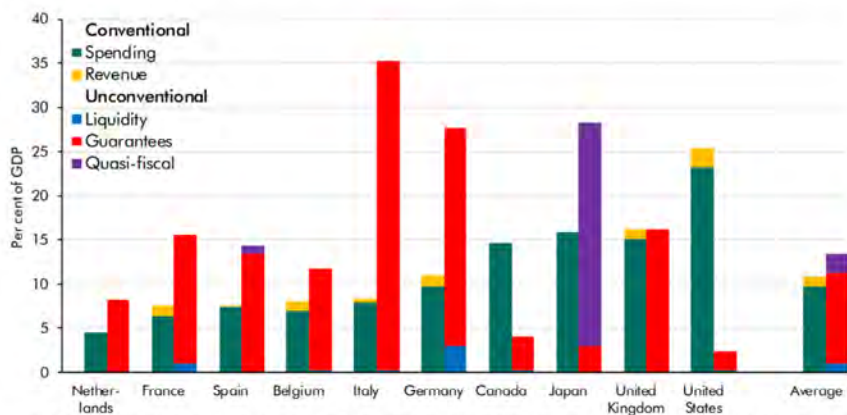


### CLCC: 1<sup>st</sup> year review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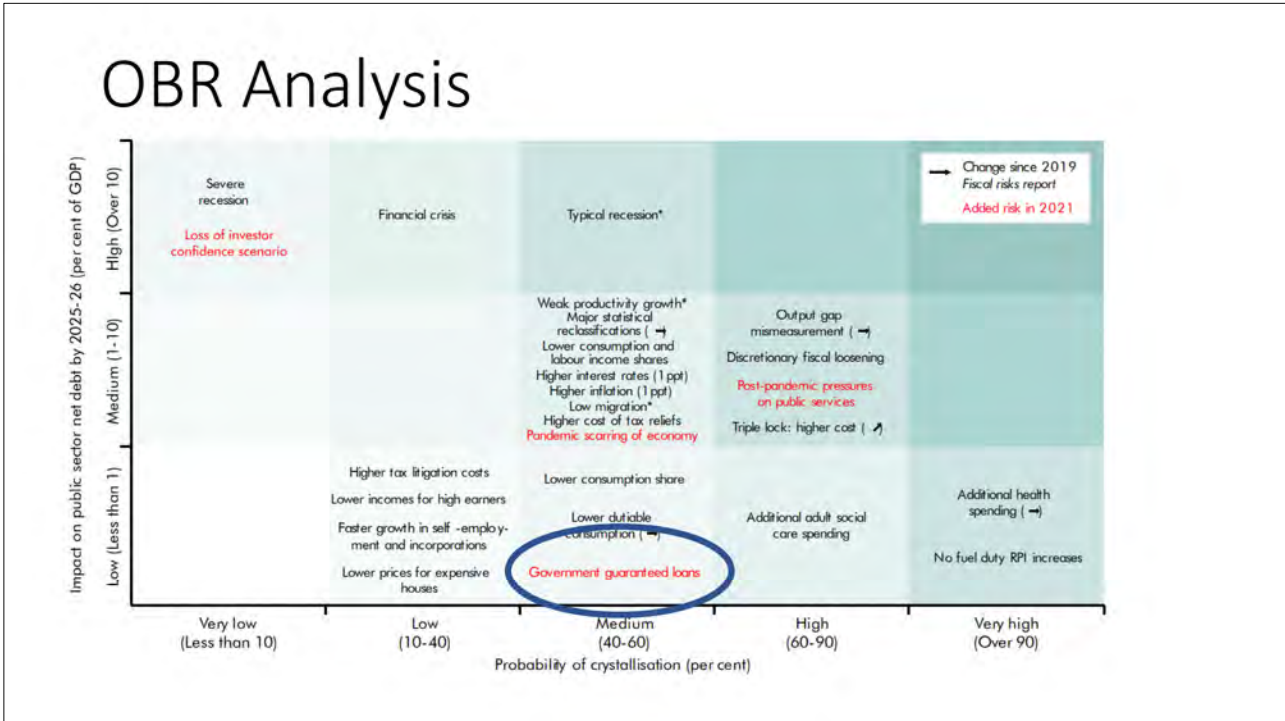
- Contingent liabilities £216bn
- 326 Contingent Liabilities
- Quantified 137, Unquantified 189



### Case Study: Covid 19 business support



Note: These figures and chart average come from IMF estimates of measures between January 2020 and April 2021 in 16 economies for which detailed data are available.  
Source: IMF, OBR



# Case Study: UK Export Finance

Slides to be updated following meeting next week

## CLCC: Next steps

- 01.** Embed a robust cross govt data collection process
- 02.** Integrate cross govt data into a central database
- 03.** Analyse and stress test Contingent Liabilities portfolio



KALAR CONSULTING

## Lessons learnt

Ideas for other jurisdictions to improve management of fiscal risk through contingent liability risk exposure



## Lessons learnt



- Data: Detail, Assumptions, management judgement, consistency, definition
- Risk: Understanding risk? Risk exposure, Charge for risk?
- Expertise: different skills, Credit expertise, Insurance, Actuarial
- Guidance: checklist, quantifying contingent liabilities



KALAR CONSULTING

## Manj Kalar



**Email address**

Manj@kalarconsulting.com



**Contact info**

+44 (0) 7740 305 978



**Social media**

@ManjKalar

Manj Kalar



KALAR CONSULTING

**연구 보고서 요약**

다음은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에 발표된 국가별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최종보고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afsc.kipf.re.kr>

**[부록①] 연구 보고서 요약**

**[부록②] 별첨 (주요국 우발부채 주석 발췌)**



## 부록 ① 연구보고서 요약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 방안」

최연식 교수 (경희대)<sup>1)</sup>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 분석」

Manj Kalar (Kalar Consulting)

---

1) 공동연구자 한승엽 교수(홍익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 연구보고서 요약

### □ 연구 주제 :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 ○ 주제선정 배경

- 우발부채는 현재 부채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부채(재정지출)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채를 의미하며, 국가결산서 주석으로 공시되고 있음
- 한국 중앙정부의 우발부채(5개년) 주석을 확인한 결과, 계량화된 우발부채 중 **지급보증과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

<중앙정부의 2016-2020년 우발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b>총자산</b>	<b>2,487.1</b>	<b>2,299.4</b>	<b>2,126.6</b>	<b>2,062.5</b>	<b>1,966.8</b>
<b>총부채</b>	<b>1,981.7</b>	<b>1,743.7</b>	<b>1,683.4</b>	<b>1,555.8</b>	<b>1,433.1</b>
<b>우발부채 관련 금액</b>	<b>26.1</b>	<b>25.3</b>	<b>28.1</b>	<b>34.1</b>	<b>32.7</b>
1 계류중인 소송사건 <sup>1</sup>	10.6	8.14	9.13	11.26	9.95
2 담보제공자산 <sup>2</sup>	0.01	0.01	0.01	0.01	0.04
3 지급보증 <sup>3</sup>	13.05	15.34	17.02	21.13	21.13
4 중요한 계약사항 <sup>4</sup>	0.55	0.50	0.35	0.37	0.03
5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 <sup>5</sup>	0.51	0.34	0.35	0.39	0.45
6 기타 우발부채	1.37	0.96	1.21	0.89	1.07

\* <sup>1</sup> 소송사건(원고 및 피고 모두 포함)의 소송가액, <sup>2</sup> 담보제공자산의 채권최고액

<sup>3</sup> 지급보증금액의 총액, <sup>4</sup> 중요한 계약사항의 총임대료, <sup>5</sup>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당기 지급액  
출처 : 국가결산서 기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우발부채의 현실화**는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우발부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종합적 관리 미비

#### ○ 연구 주요내용

- (한국) 국가결산서 주석을 토대로, 우발부채 규모, 항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
- (영국)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상 우발부채 현황 및 우발부채 관리체계 (우발부채 승인체계 및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의 효과분석

# 1. 한국

## 1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필요성

### □ 재정위험으로서 우발부채

- ① 우발부채에 대한 충분한 공시와 대응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 채무를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위기를 촉발한 사례가 다수 보고됨 (Ceborari 2008; IMF 2012)
- ② 우발부채의 증대성 사례
  - GDP대비채무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주된 요인 (IMF 2003; Jaramillo and Mulas-Grandos 2015)
  -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경제위기 당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비용은 GDP의 50% (Honohan and Klingelbiel 2000)
  - 최근 25년간 전세계 174개 국가가 부담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비용은 GDP의 6% 수준 (IMF 2016)

### □ 코로나19 이후 재정전전성에 대한 위기 증가

- (통합재정수지) 3년간 누적적자  $\Delta 113.7$ 조원으로 급격히 악화



- (국가채무) 재원조달, 국채발행 등으로 3년간 286.7조원 증가



□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관리의 구조적 한계

- ①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시장규율의 제약 및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 ② 우발부채의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에 기인한 실무적 어려움
  - (회계분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성 있는 금액 측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필요
  - (재정분야) 개별 재정활동의 속성/재정효과 등에 대한 결산담당 부서의 정보 부족
- ③ 불리한 재정활동결과의 보고를 회피할 유인을 가진 보고실체의 재량적 의사결정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판결에 대한 공시 미반영

\* 지난 10년간 국가 및 관련 중앙관서(금융위/기획예산처/법무부 등)의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바 없음

⇒ 공식적 절차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

## 2 한국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 우발부채 집계 및 공시 기준

- 국가회계예규 제8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지침」

[문단 16] 공시항목	[문단 18] 공시예외
<p>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p> <p>(1)우발부채의 추정금액 (2)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3)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p>	<p>(1)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u>실무적인 이유</u>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p>(2)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p>

- (특징) ①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의 예시만 제시** (예: 지급보증, 담보제공, 소송, 약정사항 등), ②공시여부 · 공시 수준 등은 **실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 ③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

###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공시 현황

- (개요) 주석 5.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 8개 공시항목이 표준화 되어 있음
  - 우발부채 중 ‘과생상품’과 ‘중요한 계약사항’의 비중이 높음
  - 천재지변에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중앙관서별 소송 건수, 소송가액 집계 정보 제공  
\* 중요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사건개요, 승소·패소 가능성 등) 없음
- ②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이유 등을 제공하나, 질적 정보 (예: 담보 실행가능성 등) 설명 없음
- ③ **파생상품** : 민간기업의 주식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함. 다만,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우발부채의 성격, 위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음
- ④ **지급보증** :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 사항임을 설명. 다만, 지급보증 실행가능성,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설명 없음
- ⑤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업무위탁계약/기타계약으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다만, 계약별 우발상황의 속성(원인), 자원유출가능성, 예상손실금액 등에 대한 설명 없음
- ⑥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을 직접 기재
-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 각 사업에서 우발사항의 발생원인, 의무 부담가능성, 지급예상액 등 예측정보 없음
- ⑧ **기타** :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계약, 협약, 정책 등 정보 전달 중심으로 기재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식 5 현황 표>

유형	분량		내역
	페이지수	비중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2	11.8%	• 원고인 경우: 1조6,467억원(3,655건) • 피고인 경우: 8조9,752억원(4,930건)
②담보제공자산	1	5.9%	• 채권최고액 89억원(3개 부처)
③파생상품	4	23.5%	• 자산(장부금액) 1,450억원 • 부채(장부금액) 1조6,699억원

유형	분량		내역
	페이지수	비중	
④(지급)보증	1	5.9%	• 지급보증금액 13조495억원(2개 부처)
⑤중요한 계약사항	5	29.4%	• 건설공사계약: 1개 부처 5건 • 업무위탁계약: 4개 부처 11건 • 기타: 6개 부처
⑥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	• 해당 없음
⑦최소운영수입보장	1.5	8.8%	• 지급액: 5,137억원(2개 부처) • 보장사업: 2개 부처 16건
⑧기타	2.5	14.7%	• 자금보증: 한도 625백만달러(1개 부처) • 수공 금융비용 지원: 3,400억원(1개 부처) • 토지복구 의무(1개 부처) • PSO 보상: 3528억원(1개 부처) • 지하철공사 금융비용 지원
합계	17	100%	

- (총규모) 한국 우발부채는 2016회계연도 35.77조원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20회계연도는 26.12조원에 해당
- 이는 GDP대비 최소 1.31%(2019회계연도)에서 최대 2.06%(2016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규모



- (항목별 규모) 지급보증은 5개년 평균 18.1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큰 유형으로, 그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9.8조원에 해당



## □ 우발부채 주식공시의 특징(또는 한계)

### ① 8가지 공시유형의 표준화

-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 이래로 현재까지 공시유형 체계에 변화 없음
- 중앙관서별 특성으로 인해 공시유형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함

### ② 우발항목 이외 비우발성 항목 포함

- 파생상품, 통상적 계약사항(건설공사, 업무위탁), 주파수할당 등 우발사항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

### ③ 과거 발생한 객관적 사실전달 중심

- 대부분 공시항목이 과거에 발생한 사실, 사건을 단순히 집계
- 미래 잠재적 위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 제시 부족

### ④ 결산부서에 의한 사후적 집계로 관리절차 부재

### ⑤ 실질적 충실성은 미흡한 정보

- 개별 중앙관서 정보를 누락 없이 취합했으나 종합적 분석 미흡

### 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 우발부채 관련 기준

- (회계처리)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 IPSAS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가회계예규의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2017년에 전면 개정되어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

- (공시) 국제재정통계기준의 재정통계 매뉴얼(GFSM) 2014에 따르더라도 유사한 공시기준을 따르고 있음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또는 국제재정통계기준은 우발부채 항목을 (지급)보증, 소송사건, 보상 및 배상, 미납부 출연금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열하고 있음

⇒ 즉, 우발부채의 집계 및 공시는 매우 전문적(professional)이면서 재량적(discretional)인 특징이 있음

#### □ 국가별 우발부채 공시 현황

##### (1) 미국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개요) 주석 22. 우발상황

- 우발상황을 ①개요, ②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③유형별 상세내역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
- 우발부채의 '발생가능성 수준별 예상손실'을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제시하고, 그 부채계상액을 표로 집계
- 보고실체별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서술

<미국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2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우발상황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발손실(loss contingencies)의 개념과 정부의 의무/역할</li> <li>• 우발상황의 3가지 유형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적/환경적(Legal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li> <li>- 보험 및 보증(Insurance and guarantees)</li> <li>- 기타(Other contingencies)</li> </ul> </li> </ul>
2. 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FFAS No.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른 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 요약</li> <li>• SFFAS No.47, Reporting Entity에 따른 연방정부의 우발손실 인식 및 공시기준 요약</li> </ul>
3.우발상황 유형별 상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 및 전기의 부채계상 또는 추정 금액(상·하한 포함)</li> <li>•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기관(실체)별 우발상황의 성격, 발생가능성, 추정금액 등 상세 내역</li> </ul>

(2) 영국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 (개요) 주석 29. IAS 37에 따라 공시되는 우발부채와 주석30. 의회에 보고하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
  - 우발부채를 회계기준에 의해 공시하는 우발부채(주석 29)와 의회에 보고하는 우발부채(주석 30)로 구분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영국 2020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9 및 30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주석29 IAS37에 따라 공시되는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li>- 실체별 주요 항목(Individually significant contingent liabilities)</li> </ul> </li> <li>•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결손보전 약정(Commitments in relation to pension scheme deficits)</li> <li>- 국방부 관련(Ministry of Defense)</li> <li>- 법적 분쟁(Legal claims)</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중인 소송사건(Ongoing litigation)</li> <li>-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및 협약상 의무(Civil nuclear liabilities)</li> <li>• 계량화 가능한 우발자산(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2. 주석30 의회에 보고하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화 가능한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비용</li> <li>- 주요 항목</li> </ul> </li> <li>• 계량화할 수 없는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li> </ul>

### (3) 호주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 (개요) 주석 9. 위험

- 위험(Risks) 관련 주석의 하위 항목에서 우발상황을 구조화
- 우발부채를 ①배상 및 (지급)보증, ②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③소송사건, ④환경복원 및 오염정화, ⑤기타 등 5가지로 유형화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호주 2021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9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배상 및 (지급)보증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화 가능한 배상 및 (지급)보증 (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li>• 계량화할 수 없는 배상 및 (지급)보증 (No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li>•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상 및 (지급)보증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li> </ul>
2.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3. 소송사건 (Claims and proceedings)	
4. 환경복원 및 오염정화(Remediation and decontamination)	
5. 기타(Other contingencies)	
6. 우발자산(Contingent assets)	

#### (4) 뉴질랜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개요) 주석 26. 우발부채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 중요성 기준을 \$20million로 설정하여 초과 시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시

<뉴질랜드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6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발부채(자산)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설명</li> <li>• 우발부채(자산)의 공시기준 및 방법</li> </ul>
우발부채 요약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유형별 기초/기말 금액</li> <li>•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귀속 실체별 기초/기말 금액</li> </ul>
1.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별 미출연 분담금 관련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li> <li>• 항목별 설명</li> </ul>
2. (지급)보증 및 배상 (Guarantees and Indem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보증 및 배상 항목별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li> <li>• 항목별 설명</li> </ul>
3. 법적 분쟁 및 소송 (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분쟁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li> <li>• 항목별 설명</li> </ul>
4. 기타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Othe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li> <li>• 항목별 설명</li> </ul>
5.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Indemnities)</li> <li>• 법적 분쟁 및 소송(Legal claims and proceedings)</li> <li>• 기타(Other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li> </ul>

## (5) 캐나다 (Public Accounts of Canada)

○ (개요) 제2장 국가재무제표 주석 7, 8, 19와 제11장 상세보충정보

- 환경과 계약 관련 사항을 별도의 주석으로 분리

<캐나다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7 등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p>제2장 캐나다의 국가재무제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Section 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석7] 우발부채(충당금) (Provisions for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 (Claims)</li> <li>- (지급) 보증 (Guarantees provided by the government)</li> <li>- 기타 (Other)</li> </ul> </li> <li>조세불복심사 (assessed taxes under appeal)</li> <li>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li>• [주석8] 환경부채 및 자산처분 의무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s retirement oblig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토지의 복구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li> <li>- 기타 환경 의무 (Other environmental liabilities)</li> </ul> </li> <li>• [주석19] 계약상 의무와 권리 (Contractual obligation and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s)</li> <li>-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li> </ul> </li> </ul>
<p>제11장 상세보충정보(계약상 의무와 권리, 우발부채) Section 11. Contractual obligations, contractual rights and contingent liabil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li> <li>•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li> <li>•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보증 (Guarantees)</li> <li>-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li> <li>- 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li> </ul> </li> </ul>

## □ 해외 주요 국가 사례의 시사점

### ① 잠재적 영향의 계량화 가능성에 따른 구조화

- 우발상황의 발생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적 불확실성 감소
- 우발상황의 중대성(예: 발생확률, 부담예상액 등)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가능

### ② 우발부채의 공시기준 구체화

- (미국, 영국, 캐나다) 의무부담행위와 별도로 정책, 제도에 따른 재정소요(순부담) 예측을 주석으로 공시
- (뉴질랜드) 중요성 기준 초과 항목은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

### ③ 의무 속성에 따른 주석 세분화

-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계약 · 협약 · 법률 등 명시적 근거에 기초한 의무를 주석에 기재
- (미국, 캐나다) 환경보존과 개선에 대한 국내외 요구 반영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전형적 우발상황(예: 소송,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과 정책, 제도 등 운영에 따른 의무

### ④ 설명항목 체계화

- 개별 사항의 개요, 우발적 요소,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 제공

## 4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 (주석 공시 관점)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 ①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 (현행) 계류중인 소송사건, 담보제공자산, (지급)보증, 기타, 우발자산 항목은 현행 그대로 유지
- (신설) 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등에 따른 우발부채, 공공기관 출자 및 출연, 민간부분 등 중요한 계약 사항  
\* 국제사회(기구)와의 협약 등은 해외 주요 사례국의 공통 항목으로 추가 신설 제안
- (보완) 환경보전(복구) 및 재난재해 등에 따른 우발부채
- (기타) 우발부채와 동일한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우발자산은 삭제하고, 파생상품은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별도의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

<한국 국가재무제표 주석 구조 개편(안)>

As-Is	To-Be	
주석 5.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주석 5. 우발사항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행
②담보제공자산	②담보제공자산	현행
③파생상품	③(지급)보증	현행
④(지급)보증	④중요한 정책/제도 등 운영에 따른 우발부채	신설
⑤중요한 계약사항	⑤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등에 따른 우발부채	신설
⑥천재지변 등에 따른 내용과 결과	⑥환경보전(복구) 및 재난재해 등에 따른 우발부채	보완
⑦최소운영수입보장	⑦공공기관(출자 및 출연) 관련 내용	신설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등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현행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⑨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삭제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주석 X. 중요한 계약상 의무	
⋮	①공공부문과의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보완
⑤사회보험사업	②민간부문과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신규
⑥정부조직개편	③국제사회(기구)와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신규
⑦기타사항		
	주석 X. 파생상품	현행

## ② 우발부채를 유형별로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구조화

- 현행 유지라도 “계량화”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별 공시하고, 사안의 성격/불확실성 원인/진행경과/발생가능성/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

### □ (재정 실무 관점) 보고실체 내부 · 외부에 따른 제언

#### ① 내부 : 우발부채의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에 중앙관서별 핵심 정책, 제도 및 중요 계약 사항의 “일람표”를 추가 보완 ⇒ 주석공시 완전성 증가
- 장기적으로 “일람표”에 우발사항의 발생가능성과 재정영향 등 추가하여 “우발사항 검토표”로 고도화 ⇒ 충실성 · 완전성 증가

#### ② 외부 : 준(準) 시장규율 기반 조성

- 우발부채 공시 현황분석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의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도 요약하여 제공
- 공공단체(예: 학회/언론/공익단체/국회예산정책처 등)가 독립적으로 재무공시 품질대상을 매년 또는 격년 실시
- 재무 공시가 우수한 중앙관서(담당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시품질, 등급을 국정성가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노력 유도

## 2. 영국

### 1 영국 우발부채 개괄

(정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확정될 수 있는 부채  
(예: 승소가 예측되는 법적공방)

우발부채의 분류\*

\* 재무부는 회계범주와는 다른 위험 관리 목적으로 우발부채 분류 설정

① **보증**: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정부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 보증 계획 단계에서 고려사항: 제한된 만기, 제한된 노출, 부분 보증 또는 공제액, 위험 청구, 신용도 및 담보 등

② **배상(indemnities)**: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경우

- 배상금 및 보험제도 계획 단계에서 고려사항: 공공자금 및 과실 관리, 위험 청구, 상한, 만기, 범위, 리스크 풀링\* 및 도덕적 해이 감소, 위험 보조금, 소송 권리

\* 위험 풀링: 위험을 결합하여 감소시킴

③ **소송**: 정부의 핵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구매자보호<sup>2)</sup>**: 정부가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보증 또는 배상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IAS(국제회계기준) 37에 따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

충당부채	- 정의: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요건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2)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음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우발부채	- 충당부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인식 -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에 따라 높은(probable), 낮은(possible), 희박한(remote) 우발부채로 분류가능

2) 정부가 자산 매각 시 시장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여 적절한 실사가 제공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며 재정상태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충당부채와 다르게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우발부채는 공시대상이지만 회계실체의 재무제표 인식대상은 아님
- 영국은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도 개별부처의 결산서와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공시됨**
  - 한화로 약 750조원의 우발부채 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614조원(2019-20)

<공공부문통합결산서에 공시된 우발부채의 규모>



-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증제도(Government Guarantee Scheme) 상위 6개의 합계는 189.1조원이고, 그 중 28.8조원이 지급됨

<주요 정부 보증제도>

(한화로 환산, 단위: 조원)

	UK Guarantee scheme	UK Export Finance	Help to Buy scheme	Housing guarantee scheme	Export refinancing facility	Business Bank wholesale guarantees	합계
미지급 보증 (Remaining value of guarantee)	61.28	58.56	18.24	12.48	8	1.76	160.3
지급된 보증 (Guarantee issued)	2.72	21.44	0.96	3.52	0	0.16	28.8




## 2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현황

### □ 우발부채 관리의 필요성

- 영국 재무부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공공재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 부처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
- **우발부채는 미래 지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 정책개발 및 잠재적 영향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우발부채의 인식

- 영국 정부는 다음의 공식 문서를 통해 공공부문 **우발부채 인식을 규정**. 우발부채 정보는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석, 세출예산안, 의회제출 통지서에서 인식됨

우발부채 승인체계	정부재정보고지침(FReM)	공공자금 관리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b>표준화된 프로세스</b></li> <li>• <b>공공부문 우발부채</b> 정의 및 분류</li> <li>• 우발부채 승인체계 절차 안내</li> <li>• 우발부채 체크리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발부채</b> 공시를 의회의 책임에 대한 주석으로 분류</li> <li>• 주요 공시 내용: 각 우발부채의 성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예측되는 재정적 영향 (IAS 37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li> <li>•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과 결산서 상 우발부채 조정(부처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제출 우발부채 신고서 (부록 5.4: 우발부채)</li> </ul>
 <p>Contingent Liability Approval Framework: guidance (updated 2021)</p> <p>August 2021</p>	 <p>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Manual: 2022-23</p> <p>December 2021</p>	 <p>Managing Public Money</p> <p>May 2021</p>

□ **우발부채 승인체계4)**

- (목적) 공공부문 우발부채에 대한 조사,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고안된 우발부채 프로세스
- (도입이전) 명시적인 재무부 승인 프로세스 미비. 우발부채는 지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무부 지출팀은 공식적인 이의제기 프로세스 수행 않음
- (도입이후) 우발부채 관련 위험의 효과적으로 고려되었는지 확인위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시적 이의제기 및 승인 기능** 도입
  -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중앙정부 전반에 걸친 우발부채들이 재정상태표 지표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가능
  - 지침 도입 후 1년간 40개 이상의 새로운 우발부채 검토, 이 중 50% 이상이 예상손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최신 지침은 우발부채를 정의 및 분류하고 우발부채를 평가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준수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설정

\* 정책 개발, 재무부 승인, 의회 통지 및 승인 보고

과정	부처별 승인	재무부 승인	모니터링
<승인체계 도입 이전> 명시적 승인 미비. 우발부채는 지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이의제기 과정 수행 않음	정책담당 공무원 → 장관 + 회계책임관	재무부 지출팀 → 재무부 장관 <i>고위 공무원의 관리감독 + 재무부의 임시 지원</i>	부처별 결산서 및 WGA에 공시 → 임시 모니터링 by 재무부 재정위험팀
<도입 이후 - 2017년> 우발부채 관련 위험이 효과적으로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시적인 이의제기 및 승인 기능 도입	정책담당 공무원 BSA 가이드 참고 → 장관 + 회계책임관 <i>체크리스트 지침 확인</i>	재무부 지출팀 → 재무부 장관 1. 위험관리부: 위험, 완화방안, B/S영향 평가 2. 현실화 실현금액 평가	부처별 결산서 및 WGA에 공시 → 체계적 모니터링 by 재무부 재정위험팀 위험관리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B/S 관리팀과 분기별 회의

출처: HMT analysis and presentation at OECD event

3) 공공자금관리지침(Managing Public Money): 영국 재무부의 예산집행 기준

4) 우발부채 승인체계(Contingent Liability Approval Framework): 2017년에 최초 발간 후 가장 최신판은 2021년 8월 발간

##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sup>5)</sup>)

- (배경) 재무부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 '중앙기관 구축'을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UKGI 내 전담부서 마련
- (설립 목적) 우발부채에 대한 정부 전반의 전문성 강화
  - 우발부채 승인체계 및 공공자금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함
- (2021. 4월 최초 서비스 개시) 정부계리사부(GAD)에서 파견된 보험계리사, 신용 위험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분석가로 구성
  - (주요 업무 1) ①위험 정량화, ②위험 완화 통합, ③신규 우발 부채 분석
    - \* 각 부처와 협력하여 위험을 정량화하고, 위험 완화를 통합하며, 정부에 이전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프리미엄을 부과하기 위해 신규 우발 부채 분석
  - (주요 업무 2) 기존 우발부채 검토
    - \* 위험 관리 및 우발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및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존 우발부채 검토
  - (주요 업무 3) 우발부채 식별 및 데이터 분석
    - \* 우발부채를 기록하는 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드물게 접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식, 분류 및 계량화하는 전문 지식이 제한됨

## □ 우발부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출처 및 채택된 방법론

- (범위) CLCC의 권한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기업으로 제한. 영국 WGA로 통합된 공공부문의 다수 제외됨
  - \* 스코틀랜드 정부 및 지방 정부기관, 비장관급 정부기관 등
  - \*\* 나머지 23개 장관급 부처 중 15개 부처만이 CLCC의 소관에 속하고 우발채무가 존재
- (데이터 출처) 각 부처별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부처별 연차 결산서, 서면 장관 성명서
- ①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현재 상태 및 마지막 보고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
  - \*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내용보다 자세한 정보 포함

5) CLCC(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city)

- ②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2009-10년부터 매년 발행됨에 따라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 가능하게 하는 추세 데이터 제공
- ③ 부처별 연차 결산서는 IAS 37에서 요구하는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희박한 우발부채 제외)에 대한 정보 제공
- ④ 구두 제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서면 장관 성명서 필요
  - \* ①정부의 상세한 정보 및 통계, ②정부 기관의 보고서 발행, ③질의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 대응, ④재무 및 통계 정보, ⑤정부 부처의 정책 및 절차 구상, ⑥조달관련

### □ 정부의 최후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역할

- (배경) 영국은 2017년 우발부채 승인체제\*를 도입 후 신규 우발부채를 관리해 왔으나, **기존의 누적된 우발부채 총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sup>6)</sup>

\* 신규 우발부채 평가의 5가지 기준 : 근거, 규모(노출액), 위험과 수익률, 위험관리와 완화, 재정여력, 3백만 파운드 이상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하며,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됨

\*\* WGA 공공부문 통합재무제표 상 우발부채는 약2,000억 파운드로 GDP 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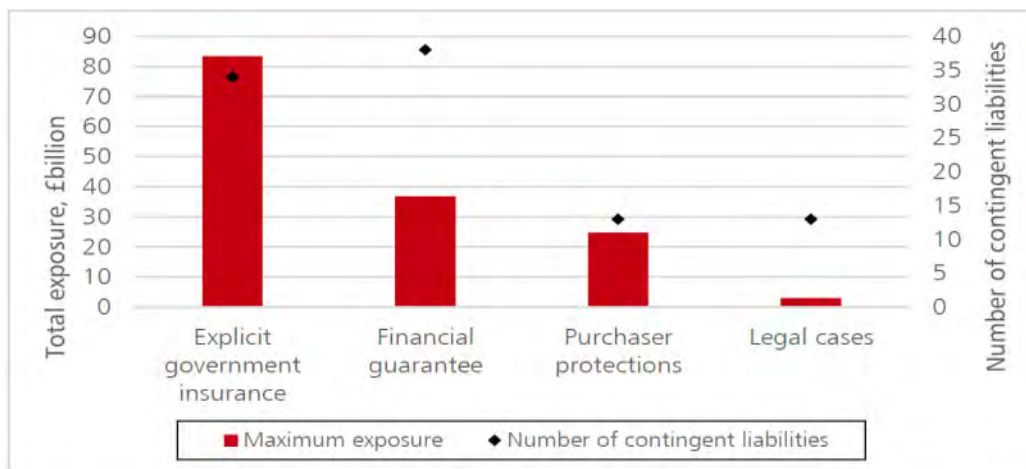
- **최후 보험자로서의 정부 우발부채 : 지급보증, 명시적 정부 보험**

\*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부상환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British Business Bank에서 운영하는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 제도가 있음

\*\* 질병으로 가축을 도축할 때 정부가 배상하는 사례와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 대표적으로 NHS(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임상 과실 청구시 정부가 비용을 총당

\*\*\* 이외 법적소송, 구매자 보호(자간 매각시) 등 기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는 대상제외

<영국의 신규 우발부채 현황 2017~2019>



출처: HMT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

6) '우발부채 승인체제 지침', HMT, 2017년 7월, '재정위험 보고서', OBR, 2019년

### 3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효과분석

- ① 우발부채 승인체계 이전의 관리, ② 우발부채 승인체계
- ③ 우발부채 관리단(CLCC)

#### 1 단계: 우발부채 승인체계 이전의 우발부채 관리

- 개별 부서는 조직 구조, 예산 책임, 부채, 총당금 및 우발 부채의 복잡성에 따라 각자의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
- 예산책임청(OBR)은 2015-16년의 잠재적 위험 노출을 분석
  - 계량화된 희박한 우발부채는 GDP 대비 23.8% 만큼 감소
    - \* 여러 위기 관련 금융부문 보증의 종료가 주원인
  - 우발부채(희박한 우발부채 제외)는 GDP의 2.8% 만큼 증가
    - \* 임상 과실 및 세금 소송 우발부채가 주원인
  - 부처별 총당부채는 GDP의 9.5%만큼 증가
    - \* 원자력 해체 총당금이 주원인

#### 2 단계: 우발부채 승인체계의 효과

-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위험 노출 증가 문제 및 2017년 재정위험 보고서에서 제기된 많은 데이터 문제 해결
- 다음과 같은 결과 나타남:
  - 처음 2년 동안(2017년~2019년) 우발부채 조사 대상은 92개
    - \* 이 중 85개가 승인되었고 7개가 승인거절
  - 2020년 11월까지 약 2,600억 파운드의 최대 노출과 함께 180개의 새로운 우발부채가 제안됨
  - 총 노출 약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우발채무는 완전히 거절

○ 승인된 우발부채의 공통적 특징

- i)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계량화 측정이 개선됨
- ii)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을 감수한 납세자를 위해 배상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변경

③ 3단계: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효과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Assistant Director와의 인터뷰 요약>

1. CLCC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책임자인 Siobhan Duffy가 이끄는 CLCC는 3개 그룹에 걸쳐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보험 및 배상
  - 지급보증(신용전문가 포함)
  - 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능

2. CLCC는 우발부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 우발부채 승인체계 지침에 따라, 300만 파운드(한화로 약 48억원) 이상 또는 신규, 논쟁의 여지, 파장이 큰 우발부채가 있는 경우 재무부에 통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따르거나 의회에 통지해야하며, 개별 정부부처는 CLCC와 협의해야함
- 영국 재무부가 만든 우발부채 승인체계 지침을 토대로 CLCC는 보험, 신용위험관리, 은행 전문지식을 활용해 개선시킴
  - 우발부채 자문 네트워크 구축 및 특정 두 부처\*를 시범으로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검토함

\* 영국 우주국(UK Space Agency),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계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정부 전반에 걸쳐 우발부채의 식별, 평가, 관리 및 기록이 전문화됨
  - CLCC의 주요 역할인 자문과 관련하여 출범 첫 해에 56건의 우발부채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35건은 특정 우발부채 제안 관련, 21건은 초기 단계의 정책 관련, 35건의 특정 우발부채 제안 중 65% 이상이 최대 노출액이 1억 파운드(약 1,600억원)를 초과함
3.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CLCC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가?
- CLCC의 범위는 주로 **지급보증과 배상**
  - 충당부채는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핵심 쟁점이 아님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목적은 우발부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가능하면 이를 정량화하는 것
    - 우발부채를 인식하면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과거지향적인 재무제표와 상반되게 미래전망적인 업무 범위
 => 따라서 우발부채의 후속처리는 관리하지 않음
4. CLCC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에게 조언이 있는가? 그 국가에게 필요한 요소는?
- 현재 입수가 가능한 회계 정보부터 시작하여 **정부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
  - **위험 노출**을 올바르게 측정하였는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
  - **암묵적 우발부채** 확인
  - **재정상의 위험**에 집중(영국에서는 예산책임청의 담당)
  - **부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평가**

## 부록 ② 별첨 (주요국 우발부채 주식 발취)

- ① 한국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주식 5
- ② 영국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식 29, 30
- ③ 미국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식 20
- ④ 호주 2020회계연도 정부 연결재무제표 주식 9A
- ⑤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정부 재무제표 주식 26
- ⑥ 캐나다 2020회계연도 공공회계 연결재무제표 주식 7



# 1 한국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주석 5

##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 - 원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310,038,727	국토교통부	20	30,534,679,482
교육부	7	9,117,369,894	해양수산부	38	467,959,961,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34,951,832,972	중소벤처기업부	808	203,068,777,279
외교부	1	150,883,468	인사혁신처	41	34,774,628,195
법무부	61	13,372,341,304	금융위원회	2,596	548,582,505,132
국방부	2	13,042,360,060	조달청	11	326,343,586
문화체육관광부	1	100,000,000	방위사업청	22	145,344,937,712
농림축산식품부	1	200,000,100	문화재청	1	231,578,380
산업통상자원부	1	1,780,072,301	산림청	9	6,460,332,983
보건복지부	4	115,270,175,563	기상청	3	1,429,828,583
고용노동부	4	1,509,050,000	해양경찰청	3	401,000,000
대법원	1	308,054,160	여성가족부	1	50,000,000

※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회	5	400,00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1	50,000,000
대법원	89	15,857,498,759	식품의약품안전처	64	3,20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535,326,800	국가인권위원회	44	2,380,000,000
기획재정부	1	5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187	2,199,503,000,000
교육부	184	22,752,589,162	금융위원회	182	88,467,468,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	123,008,511,245	국민권익위원회	75	3,883,038,000
외교부	52	28,086,108,788	원자력안전위원회	2	100,000,000
통일부	19	17,884,417,560	국세청	426	3,959,279,662,139
법무부	1,269	1,744,141,109,785	관세청	124	259,892,522,492
국방부	136	137,537,386,466	조달청	234	27,889,381,409
행정안전부	31	31,101,447,075	병무청	38	1,95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44	3,454,862,014	방위사업청	64	849,131,032,821
농림축산식품부	6	2,394,346,000	경찰청	1	71,500,000
산업통상자원부	124	469,408,847,651	문화재청	22	1,320,000,101
보건복지부	344	42,018,777,978	농촌진흥청	11	1,330,105,390
환경부	31	59,193,861,535	산림청	55	8,570,528,922
고용노동부	241	15,511,029,215	특허청	120	11,700,000,000
여성가족부	1	50,000,000	기상청	8	4,944,922,510
국토교통부	615	266,016,192,2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91,293,550
해양수산부	134	129,596,342,315	해양경찰청	57	84,197,000,000
중소벤처기업부	118	27,007,150,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3,150,630,000
국가보훈처	19	1,554,838,398	질병관리청	1	8,503,500
인사혁신처	219	14,344,023,631	새만금개발청	1	140,000,000
법제처	1	49,632,065			

※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② 담보제공자산

(단위: 원)

중앙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 이유	담보권자	차입금액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15,417,938,803	28,647,000	임차인 앞 전세권 설정	국민은행	-
금융위원회	토지, 건물 (신보 경기채권단)	9,705,316,000	3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수원중앙신협	-
	건물 (신보 의정부지점)	799,942,239	1,0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	-
중소벤처기업부	단기금융상품	4,282,151,533	3,133,639,328	전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장기금융상품	2,317,000,000	486,896,270	전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소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자산	부채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합계	340,904,906,778	(130,730,581)	421,972,536,504	(81,067,629,726)	(130,730,581)	551,184,931,194	311,690,273,879	
통화관련	소계	470,831,599,906	405,197,690	421,972,536,504	48,859,063,402	405,197,690	548,589,168,042	116,860,592,073
	통화선도	444,868,542,422	-	432,828,943,543	12,039,598,879	-	516,363,698,075	106,042,623,059
	통화스왑	23,692,728,745	405,197,690	(13,017,212,681)	36,709,941,426	405,197,690	29,347,053,547	9,888,440,123
	매입통화옵션	111,040,260	-	-	111,040,260	-	111,040,260	-
	매도통화옵션	(1,517,163)	-	-	(1,517,163)	-	-	1,517,163
	환변동보험	2,160,805,642	-	2,160,805,642	-	-	2,767,376,160	928,011,728
이자율관련	소계	(129,926,693,128)	(535,928,271)	-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이자율스왑	(129,926,693,128)	(535,928,271)	-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이자율변동보험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직전연도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소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자산	부채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합계	(1,482,556,006,837)	6,324,932,590	(1,346,414,899,570)	(136,141,107,267)	6,324,932,590	145,011,806,930	1,689,871,159,834	
통화관련	소계	(1,445,122,819,819)	5,535,885,554	(1,346,414,899,570)	(98,707,920,249)	5,535,885,554	127,138,608,852	1,621,821,422,964
	통화선도	(1,448,781,084,214)	-	(1,343,255,551,352)	(105,525,532,862)	-	122,808,608,683	1,606,714,028,233
	통화스왑	9,814,195,187	5,535,885,554	3,345,398,276	6,468,796,911	5,535,885,554	3,345,398,276	7,984,711,287
	매입통화옵션	373,210,245	-	-	373,210,245	-	373,210,245	-
	매도통화옵션	(24,394,543)	-	-	(24,394,543)	-	-	24,394,543
	환변동보험	(6,504,746,494)	-	(6,504,746,494)	-	-	611,391,648	7,098,288,901
이자율관련	소계	(37,433,187,018)	789,047,036	-	(37,433,187,018)	789,047,036	17,873,198,078	78,049,736,870
	이자율스왑	(37,433,187,018)	789,047,036	-	(37,433,187,018)	789,047,036	17,873,198,078	78,049,736,870
	이자율변동보험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④ 지급보증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0,930,00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b>1,480,000,000,000</b>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채권	10,180,000,000,000	<b>10,490,000,000,000</b>
	한국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750,000,000,000	<b>520,000,000,000</b>
합계			10,930,000,000,000	<b>12,490,000,000,000</b>

- 한편,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의 보증채무 규모는 565,492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장기저리 대부	480,136,156,963	<b>492,446,693,000</b>
	농협은행	장기저리 대부	85,355,996,429	<b>67,042,232,000</b>
합계			565,492,153,392	<b>559,488,925,000</b>

\* 국가보훈처와 피보증처의 협약에 따른 양수도 대상 채권의 양수 사유(6개월 이상 미납된 대부 원리금 등)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대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양수금액을 지급함

⑤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계약처	계약기간	비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주)남광건설 외 4개사	2019.11.01. ~ 2022.06.30.	건립용역 (59,800백만원)

□ 업무위탁계약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100% 현금출자하여 (주)상록골프앤리조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남원·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부 및 서울사옥의 경비·미화·시설관리·주차관리를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거 금융업무 위탁을 위하여 KB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며, 동 계약의 만료에 따라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재선정되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소유의 뉴서울골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기금 100% 출자 회사인 한국문화진흥(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에 각각 위탁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융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과 기금대여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산업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하약정서에 의하여 산업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자금을 기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등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18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금이 징수한 보증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당기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한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2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중소기업은행 외 11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위탁보증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융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18개 시중은행과 기금대여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18개 시중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대하약정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자금을 기일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상환 하여야 합니다.

#### □ 기타계약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관련 39백만원 보증받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

한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미술관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장기지급보증금으로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공학관 및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운영기간	총투자비	총임대료	당기임대료	당기운영비
05년 폴리텍	2008년~2027년	30,297,036,259	48,309,739,465	2,456,372,160	1,304,431,810
06년 폴리텍	2013년~2034년	66,826,960,293	97,621,141,886	4,740,734,020	2,108,778,100
07년 폴리텍	2012년~2032년	83,258,032,299	113,981,133,740	5,891,857,400	2,967,708,920
한국기술대학교	2012년~2032년	30,403,855,045	46,468,323,907	2,253,802,760	949,069,000
16년 폴리텍	2020년~2040년	52,248,157,847	64,556,481,269	3,550,605,960	1,556,384,720
17년 폴리텍	2021년~2041년	31,318,583,083	40,717,386,130	900,650,740	381,098,520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 준공('18.8.27.)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광복회'에 매년 11억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18.11.1.)하였습니다.  
※ 토지 임차료 조정: 1,155백만원('21년~'22년, 계약대비 5%)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요구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을 적기 조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등과 무기체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구분	대상	계약처	계약기간
건조계약	3000톤 경비함 1척	삼강엔앤티	2020.12.14.~2024.05.27.
건조계약	200톤급 경비정 4척	삼강엔앤티	2020.08.20.~2023.08.05.
건조계약	500톤급 예인정 2척	티엔지중공업	2020.09.23.~2023.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들과의 주파수이용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통신사	대역	계약기간	향후 수취예정금액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SKT	2.6GHz	2016.08.04~2026.12.31	166,893,750,000	203,981,250,000
	2.6GHz	2016.08.04~2026.12.31	57,560,625,000	70,351,875,000
	3.5GHz	2018.12.01~2028.11.30	287,870,625,000	351,841,875,000
	28GHz	2018.12.01~2023.11.30	27,985,500,000	34,204,500,000
	0.8GHz	2021.07.01~2026.06.30	76,680,000,000	93,720,000,000
	1.8GHz	2021.12.06~2026.12.05	184,882,500,000	225,967,5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38,948,750,000	169,826,250,000
KT	1.8GHz	2016.08.04~2026.12.31	79,278,750,000	96,896,250,000
	3.5GHz	2018.12.01~2028.11.30	228,690,000,000	279,510,000,000
	28GHz	2018.12.01~2023.11.30	28,053,000,000	34,287,000,000
	0.9GHz	2021.07.01~2026.06.30	47,688,750,000	58,286,250,000
	1.8GHz	2021.07.01~2026.06.30	184,882,500,000	225,967,5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38,948,750,000	169,826,250,000
LGU+	3.5GHz	2018.12.01~2028.11.30	191,244,375,000	233,743,125,000
	28GHz	2018.12.01~2023.11.30	27,972,000,000	34,188,000,000
	0.8GHz	2021.07.01~2026.06.30	76,680,000,000	93,720,0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47,858,750,000	180,716,250,000
	2.6GHz	2021.12.04~2026.12.03	73,203,750,000	89,471,250,000
KT 파워텔	800MHz	2019.07.01~2026.06.30	32,775,000	40,058,333
합 계			2,165,355,150,000	2,646,545,183,333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도로계정	327,027,000,000	411,616,000,000	297,100,000,000
해양수산부	교특회계	항만계정	<b>70,874,048,630</b>	102,101,771,330	42,525,763,490
계			397,901,048,630	513,717,771,330	339,625,763,490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0.11부터 20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천안-논산고속도로	2002.12부터 20년	협약수입의 82%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1부터 20년	협약수입의 77%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007.12부터 20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부산-울산고속도로	2008.12부터 30년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30년간)
			서울-춘천고속도로	2009.08부터 15년	1~5년 : 협약수입의 80%미달분
					6~10년 : 협약수입의 70%미달분
인천대교	2009.10부터 15년	11~15년 : 협약수입의 60%미달분 * 50% 미만시 미지급 (사업권가치에 포함)			
해양수산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 계정	울산신항(1-1단계)	2009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5년 : 협약수입의 50~80%
			목포신외항(1-1단계)	2004년~2024년	1~4.5년 : 협약수입의 50~9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목포신외항(1-2단계)	2004년~2024년	1~4.5년 : 협약수입의 50~8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인천북항(2-1단계)	2008년~2023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인천북항일반부두	2009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평택항 다목적부두	2010년~2025년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마산항(1-1단계)	14년간(미개장)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0%			
		11~14년 : 협약수입의 50~70%			
			포항영일만산항 (1-1단계)	2010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4년 : 협약수입의 50~80%			

\*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중 사업 재구조화(수도권제1순환 '18.3, 천안-논산 '19.12, 대구-부산 '20.12, 서울-춘천 '20.12) 이후 발생하는 재정지원 사항은 신규투자자가 부담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운용사 등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해당 약정금액은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USD)

구분	2021년	2020년
자금보충금액 한도	515,000,000	625,000,000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환경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09.9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공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채무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액	340,000,000,000	340,000,000,000	340,000,000,000	296,400,000,000	277,800,000,000

\* 2022년 예산액 : 3,400억원

\*\*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8조원의 부채는 수공의 자구노력으로 채무원금의 70%(5.55조원)를 우선 상환(2015~2036, 22년간)하고, 정부가 나머지 채무원금의 30%(2.43조원)를 지원(2016~2031, 16년간), 금융비용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대로 계속 전액 지원

○ 여성가족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장기임차(1995.11~2024.10)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420.716㎡)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원의 유출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 PSO 공익서비스 비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우발상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공공서비스의무 보상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지급액	379,561,000,000	352,800,000,000	352,800,000,000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관세청

(단위: 원)

구분	종류	금액
국고품	마스크 등	32,460,060
물수품	주류 등	27,014,800

○ 금융위원회

-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잔액은 9,127,601백만원입니다.

## 2 영국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식 29, 30

### 1. 개요

### 약정 및 우발부채

#### WGA의 부채 유형

WGA 대차대조표를 통해 5조 파운드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약정이 있다.

이러한 약정 중 일부(예: 우발부채)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는다. 계약상 의무가 있지만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약정도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약정

WGA에 포함된 약정은 총 1,968억 파운드이다. 여기에는 자본 약정 577억 파운드, 운용 리스 약정 230억 파운드, 금융 리스 81억 파운드, PFI 금융 리스 약정 371억 파운드, 기타 재정 약정 709억 파운드가 포함된다.

####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될 가능성이 없는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에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나지 않은 배상, 보증 또는 임상적 과실 부채가 포함된다.

아래 도표는 정부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우발부채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non-remote)



## 더 나은 위험 관리 지원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

1.1 WGA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우발부채로 공개된 총 최대 익스포저가 4,641억 파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락 1.200을 참조하십시오.

1.2 2020년 3월 HM 재무부는 정부 전반에 걸쳐 우발부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제안을 요약한 '최후의 보험사로서의 정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에 대한 보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서 정부가 노출되는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3 2021년 4월, 영국 정부 투자(UKGI) 내 분석 및 자문 부서로 우발부채 중심 역량(CLCC)이 출범했습니다. CLCC의 임무는 새로운 우발부채 제안의 설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험 관리 및 우발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및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존 우발 부채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정부 전반에 걸쳐 지침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홍보합니다.

1.4 CLCC가 집중할 작업 영역은 정부의 기존 우발채무 포트폴리오 관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그들의 작업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 개선에서 정부가 특히 취약한 경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더 강력한 위험 관리와 개선된 우발부채 설계가 필요한 정부 전반의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 HM 재무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발부채 승인 프레임워크도 작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는 보증 및 면책을 설계할 때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 추가, 우발부채 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향상된 체크리스트, CLCC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표지판이 포함되었으며, 이 모두는 정부의 우발부채 위험을 더 잘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주식

### 주식 29. IAS 37에 따라 공시된 우발부채

#### 계량적(quantifiable) 우발부채

총 계량적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2019-20 십억 파운드	2018-19 십억 파운드
수출보증 및 보험증권	16.6	15.7
의료 과실	49.7	50.8
이의 제기 대상 세금	2.2	2.3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2.1	3.5
EU 관련 계량화된 우발부채	1.0	-
연금 보호 기금	3.7	1.0
노동연금부	2.3	0.1
기타	7.0	6.7
<b>총 계량적 우발부채</b>	<b>84.6</b>	<b>80.1</b>

유의적인 개별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기관	우발부채	2019-20 십억 파운드	2018-19 십억 파운드
보건사회복지부	보건사회복지부는 임상 과실 혐의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피고인이다. 이 부채의 일부는 총당부채로 인식되었으며(자세한 내용은 주식 22 참조), 우발부채 482억 파운드(2018-19년: 493억 파운드)는 보건사회복지부의 부채 및 부채 관련 금액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경우를 반영한다.	48.2	49.3
영국 수출금융청	영국 수출금융청은 수출 신용을 보증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이를 갹신함으로써 수출과 투자를 지원한다. 수출금융청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업자를 위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 및 보험을 제공하며, 수출 금융을 고정금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가치는 재보험의 순금액이다. 재보험 이전의 총가치는 218억 파운드(2018-19년: 215억 파운드)이다.	16.6	15.7
교통부(DfT)	DfT는 우발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19-20년에 대해 공시된 21억 파운드의 주요 요소는 머지 게이트웨이 다리의 통행료 수입 부족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정한 14억 파운드(2018-19년: 14억 파운드)와 관련이 있다. 2019-20년에 영국 도로공사는 토지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공시 정책을 변경했다. 2018-19년 결산보고서에서 도로공사는 선호 경로를 발표하기에 앞서 잠재적인 청구 금액을 공개했다. 이에 상응하는 우발부채는 DfT의 2018-19년 결산보고서에서 총 35억 파운드 중 11억 파운드를 차지했는데, 2019-20년 결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1	3.5

국세청(HMRC)	HMRC는 납세자가 HMRC에 대해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소송 및 기타 분쟁에 관여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HMRC는 5건의 사례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례들로 인해 손실 전 잠재적 세금 상환액, 자본 수당 및 기타 세금 감면액이 1억 파운드 이상이고, 이를 포함하여 추가치는 22억 파운드(2018-19년: 6건, 23억 파운드로 추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2.2	2.3
국제개발부(DFID)	DFID는 많은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국제 기구 분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로 총 4억 파운드(2018-19년: 10억 파운드)에 달한다. 또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보증 약정이 있다. 이 총 14억 파운드에는 이라크 공화국(4억 파운드), 요르단 하심 왕국(3억 파운드), 이집트 정부(2억 파운드)에 차관해 준 대출에 대해 영국이 분담한 보증도 포함된다.	1.4	1.7
재무부	재무부는 영국 자산 해결(UK Asset Resolution, UKAR)의 노던 록 자산 관리(Northern Rock Asset Management, NRAM)와 브래드포드 & 빌링리(B&B)의 자산 구매자에게 규제, 입법 및 계약 준수를 확인해주는 특정 시장 표준 시간과 가치에 상한을 둔 보증을 제공했다(2019-20년: 14억 파운드, 2018-19년: 16억 파운드).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019년 3월 NRAM 공동 대출 판매에 대한 10억 파운드(2018-19년: 10억 파운드) 보증이다.	1.4	1.6
노동연금부	미국 노동연금부(DWP)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우발부채 23억 파운드(2018-19년: 1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법적 검토와 항소는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법무부는 법원을 통해 입법 이전의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DWP가 법적 우발부채에 대한 개별 가치의 공시가 진행 중인 소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2.3	0.1
웨일스 정부	웨일스 정부는 의료/고용주 과실 혐의에 대한 법적 청구 관련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다(2019-20년: 11억 파운드, 2018-19년: 10억 파운드). 이는 2006년 웨일스 법에 따라, NHS 기관이 없다면 웨일스 정부가 웨일스 리스크 풀(Welsh Risk Pool)의 부채를 부담해야 함을 반영한다.	1.1	1.0
버밍엄 시의회	버밍엄 시의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된 지속 책임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로서 역할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관리가 포함된다. 2018-19년 버밍엄 시의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금액 총액은 10억 파운드였지만, 2018-19년 WGA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WGA에 중요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수치는 재작성되지 않았다. 위 표에서 이 금액은 '기타' 항목 총액에 기여한다.	1.1	0.0
EU 관련 계량화된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스코틀랜드 정부(7억 파운드)와 재무부(3억 파운드)의 충당부채로 구분된다.	1.0	0.0

<p>연금 보호 기금</p>	<p>연금 보호 기금(Pension Protection Fund)은 부실기업의 연금 제도를 충당하기 위해 개입한다. PPF 보험계리사의 합리적 추정치에 따르면, 2019-2020년 PPF에 제기된 청구의 총가치는 37억 파운드(2018-19년: 10억 파운드)였다. 이 수치는 관련 제도 자산의 순가치이며, 이 순가치 역시 위의 표에 포함되어 있다. 2019년 3월 31일 이후 우발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한 해 동안 소수 대형 연금 제도의 스폰서들이 신용점수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기금에 제기되는 추가적인 청구 건 외에도, 향후 PPF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다.</p>	<p>3.7</p>	<p>1.0</p>
-----------------	--	------------	------------

**비계량적(Non-quantifiable) 우발부채**

**연금 제도 적자 관련 약정**

개별 연금 제도에서 적자를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들 제도의 연금 부채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WGA의 몇몇 기관의 약정에 따라 비계량적 우발부채가 발생했다.

**국방부**

국방부가 보유하는 비계량적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해외 사거리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삼자 배상,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현장의 오염 제거 작업에 대한 잠재적 비용, 서비스 생명 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근무 중(in-service) 사망률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부채, 고용법 및 연금 관련 잠재적 부채, 및 국제해양예인협정 관련 손실 및 청구. 이러한 비계량적 우발부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의 2019-20년 연례회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청구**

다양한 WGA 기관에 제기된 여러 법적 청구, 보상 청구 및 재판 소송의 결과로 비계량적 우발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채 추정치를 확실하게 추산할 수 없다.

**진행 중인 소송**

2018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반 통지서를 보내 영국이 2011-2017년에 관세 축소 사기로 인한 EU 예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국이 관세 27억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원회는 영국과 서신을 주고받은 후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했다. 영국 정부는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추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결산서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은 이제 종결되었지만, 지급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민간부문 원자력 부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영국 원자력청과 영국핵연료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부문 원자력 부채에 대한 책임과 국제 원자력 협정 및 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 계량적 우발자산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우발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 기관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지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시한다. 수익 실현이 확실해지면, 이때 자산은 더는 우발자산이 아니며 인식된다.

2019-20년에 WGA 기관이 보고한 유의적인 개별 우발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관	우발자산	2019-20 십억 파운드	2018-19 십억 파운드
재무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결과, 재무부는 탈퇴협정의 여러 항목이 우발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벌금 수입과 관련된다(16억 파운드). 탈퇴협정 제141조에 따라, 영국은 2020년 말까지(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 기간 이후) 이루어진 벌금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EU의 벌금 수입(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징수된 벌금 수입도 포함)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141조에 따라 영국이 벌금 수입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부는 이 수입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는 벌금이 '확정적' 정의를 충족하고, 2020년 이후 지급액을 다루는 탈퇴협정 제148조에 따라 'EU'가 '영국'에 그 가치를 통보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148조에 따른 EU의 통지는 2021년 4월과 9월에 각각 발행되어야 한다.	1.9	0.0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BEIS는 영국 광산 근로자 연금 제도(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BCSSS)와 관련된 우발자산 18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2033년 3월 3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BCSSS의 신탁관리자는 이 연금 제도에 남아 있는 잉여금에서 의무 이행을 위한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내각 장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정부보통계리부의 추정치인 18억 파운드의 흑자에 기초하여, BEIS는 이 제도로부터 이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1.8	1.7
기타	기타 우발자산	0.4	0.2
<b>총 계량적 우발자산</b>		<b>4.1</b>	<b>1.9</b>

### 주석 30. 의회에 보고된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

주석 29에 보고된 우발부채 외에도, 정부 부채는 확정될(crystallize) 위험성이 매우 낮은 우발부채를 추가로 공시한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는 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될 필요는 없지만 보증, 배상 및 지급확약서가 재정 위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여기에 보고된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계량적 우발부채

정부가 보유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계량적 우발부채의 잠재적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1일 재작성	연간 증가/ (감소)	연간 확정된 부채	연간 만료된 부채	2020년 3월 31일
	십억 파운드	십억 파운드	십억 파운드	십억 파운드	십억 파운드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PPF 우발부채	180.0	76.8	(3.4)	(3.4)	250.0
보증(EIB 제외)	38.3	3.9	(0.9)	(0.7)	40.6
배상금	33.0	0.1	-	(0.6)	32.5
지급확약서	23.8	1.0	-	-	24.8
EIB 보증	31.6	-	-	-	31.6
<b>총합계</b>	<b>306.7</b>	<b>81.8</b>	<b>(4.3)</b>	<b>(4.7)</b>	<b>379.5</b>

배상금의 개시 잔액은 교육부와 관련된 배상금 93억 파운드를 포함하도록 재작성되었다.

보증 개시 잔액은 현재 자체 항목에 표시된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관련 316억 파운드를 제거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유의적인 개별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기관	우발부채	2019-20	2018-19
		십억 파운드	십억 파운드
연금보호기금 (PPF)	<p><b>연금보호기금(PPF) 우발부채</b>            연금보호기금(PPF) 우발부채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2020년 3월 31일에 기타 모든 잠재적 청구의 총가치는 PPF 7800 지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여 2,500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PPF 7800 지수는 입증된 공식 통계 지수로서, 2007년부터 PPF에서 발표해왔다. 이것은 PPF의 적절한 영역에서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근 자금 추정치의 포지션을 나타낸다.</p> <p>PPF 7800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의 규모는 적자 상태에 있는 제도의 자산과 부채가 해당 기간에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년 동안 고정금리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기간에 따라 65~75 bp 사이).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총체적인 수준에서 부채가 증가했으며, 주식을 보유한 제도는 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p>	250.0	180.0
재무부 (통합 기금 계정)	<p><b>보증</b>            영국은 유럽투자은행(EIB)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이 가능한(callable) 자본에 대한 책임이 있다. EIB 규정 제5조에 따라, EIB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 수권자본금(subscribed capital)의 잔액 중 각국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탈퇴협정 제150조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EIB를 탈퇴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국은 탈퇴 시점에 EIB에서 보유 중이었던 조기상환이 가능한 자본에 대한 기존 우발부채를 유지할 것이다.</p>	31.6	30.6
국제개발부	<p><b>보증</b>            이 우발부채 총액 중 163억 파운드(2018-19년: 143억 파운드)는 국제금융기관(IF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기상환이 가능한 자본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본은 요구가 있을 시 자금 차입이나 보증과 관련한 IFI의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도 상환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까지 IFI에서 이러한 자본금에 대해 중도 상환 요구는 없었다.</p>	16.6	14.5
재무부 (통합 기금 계정)	<p><b>보증</b>            이는 EU 예산이 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EU 회원국, 제3국 및 민간 기업에 대한 미상환 대출로 발생하는 영국의 최대 부채를 나타낸다. 대출은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따라 발행되었다: 유럽금융안정화메커니즘(우발부채 총 106억 파운드 중 66억 파운드 기여), 제3국에 대한 보증 기금 (21억 파운드) 및 EU 전략투자펀드(14억 파운드).</p>	10.6	9.9
재무부 (통합 기금 계정)	<p><b>보증</b>            통합 기금은 유통 중인 영국 주화의 가치에 대하여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를 보유한다. 이 잠재적 부채는 주화가 반환되고 손상되거나, 교환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2019-20년에 반환, 손상 및 교환된 주화에 대해 지급된 가치는 3,370만 파운드(2018-19년: 1억 8,860만 파운드)였다. 주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p>	4.7	4.7

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	<p><b>보증</b></p> <p>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는 저렴한 주택 부문을 보증하는 제도인 저렴한 주택 보증 제도(AHGS)를 운영하고 있다. 결산일에 32억 파운드가 인출되었으며 보증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AHGS는 2016년 3월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 포트폴리오 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에 있으므로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으며 추가 승인은 없을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로 인한 추가 부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p>	3.2	3.2
교통부	<p><b>보증</b></p> <p>신규, 교체 및 연장된 여객 철도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철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기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부채. 이 부채의 가치는 철도 차량 및 차고의 잔여 가치에 기초하며, 이러한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래에 새로운 철도 차량이나 차고가 도입된다면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p>	1.3	1.9
재무부	<p><b>보증</b></p> <p>2015년 12월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주로서 영국은 여러 다른 국가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AIIB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주(영국 포함)의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p>	1.9	1.5
재무부	<p><b>보증</b></p> <p>주택구입 지원제도(The Help to Buy Scheme)는 고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신규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부채의 일부가 확정된다. 1)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 판매수익이 미지급된 원리금 상환액보다 적다. 3) 대출 기관이 그 차액을 재무부에 청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청구금을 수령한 건수는 22건이며 그 가치는 총 250,000파운드에 달했다.</p>	0.4	1.4
재무부	<p><b>보증</b></p> <p>영국 보증제도는 신용 조건이 불리하여 중단될 수 있는 기반 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p>	0.7	1.0
교육부(DFE)	<p><b>배상금</b></p> <p>표시된 수치는 교육 기관 부문의 PFI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DFE가 소유하고 있지만 기존 PFI 계약을 통해 관리하는 건물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DFE가 지방 당국에 보상하기로 합의한 결과 발생하는 우발부채이다. 이러한 부동산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한다.</p>	9.3	9.3
교통부	<p><b>배상금</b></p> <p>2012년 교통부 장관은 민첩성 컨소시엄(Agility Consortium) 및 네트워크 레일과 체결한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철도차량(Inter City Express Rolling Stock) 계약에 따라, 계약적(공시) 및 비계약적 보장, 보증, 배상 및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자금 마련에 합의했다. 이는 2043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꾸준히 감소한다.</p>	5.9	6.0
교통부	<p><b>배상금</b></p> <p>고속 1(HS1) 양허계약은 법적 또는 정부 변경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미지급 금액은 계약서에 공식화되어 있지만, 계약 종료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자본지출, 운영비 증가 및 수익손실을 포함한다.</p>	4.7	4.8

교통부	<b>배상금</b> 템즈링크(Thameslink)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보장, 보증, 보상 및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자금이 마련되었다.	0.8	1.0
국방부	<b>배상금</b> 계약 조건에 따라 국방부는 특정 분야에서 계약자의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 재산에 대한 손해, 발행된 재산에 대한 손해, 채무 불이행, 연기, 종료 및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손실이 포함된다. 이 가치는 정부 재산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잠재적 가치를 포함한다.	1.6	1.6
디지털문화미디어 체육부	<b>배상금</b> 정부보상제도(Government Indemnity Scheme)는 박물관, 갤러리 및 기타 기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연구나 전시를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관에 보상을 제공한다. 이 수치에는 왕립컬렉션에서 대여한 미술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비법정 배상금도 포함된다.	8.2	8.5
재무부 – 지급확약서 – UKAR, B&B, 노던 록	<b>지급확약서</b> 재무부는 영국 자산 해결(UK Asset Resolution, UKAR)의 노던 록 자산 관리(Northern Rock Asset Management, NRAM)와 브래드포드 & 빌글리(B&B)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시장 표준 보증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가 발생했다. 모든 부채의 확정은 보증 적용에 있어서 결함이 발생되거나 결함을 식별하는 데 달려있다. 그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	24.8	23.8

###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비계량적 우발부채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 역시 계량화할 수 없다. 가장 유의적인 부채는 다음과 같다.

#### EU 탈퇴 통지 - 제50조

지난해 WGA에서는 당시 영국이 제50조에 따라 EU 탈퇴 통지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비계량적 우발부채가 공시되었다. 영국은 2018-19 회계연도 동안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EU 탈퇴로 인한 영향은 2018-19년 WGA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월 24일 탈퇴협정이 체결되었다. 2017년 12월 EU 및 영국 정부의 협상가들이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이로써 재정 협정은 법률상 유효하게 되었다. 공동 보고서는 탈퇴협정에서 다루는 EU 의무의 범위, 영국 분담금 정산 방법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2020년 유럽연합(탈퇴협정)법에 따라 탈퇴협정이 시행된다.

위의 상황을 감안할 때 EU 탈퇴 관련 우발부채는 이제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이 주석에서 유럽투자은행의 중도상환 가능 자본 316억 파운드는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로 보고된다(재무부 통합 기금 계정).
- 추가로 10억 파운드(이 중 3억 파운드는 재무부와 관련됨)가 'EU 관련 계량화된 우발부채' 항목의 '주석 29 – 우발부채'에 포함된다.

EU 탈퇴와 관련하여 비계량적 우발부채도 입법, 규제, 자금 조달 약정 등 영역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WGA 기관 전반에 걸쳐 남아 있다.

EU 탈퇴의 재정적 영향과 정부 결산의 재정 정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유럽연합 재정’ 간행물 시리즈의 부록 E에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9-20년 WGA의 실적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 지역개발은행 및 기금

국제개발부는 지역개발은행 및 기금의 자본금에 지급된 자본의 가치 유지를 위한 비계량적 우발부채에 관여한다.

### 국민보건서비스

보건사회복지부는 다양한 보건 기관 및 민간 기업의 계량화할 수 없거나 무제한적 부채에 관여한다. 비계량적 손해배상 건은 9건이었다. 정산 시 경제적 효익이 이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IAS 37의 정의에 해당하는 우발부채는 없다.

### 원자력 물질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운송 과정에서 원자력 물질로 인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특정 청구와 관련하여 운송업체 및 영국핵연료공사에 지급하는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청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 해양 시설 해체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UNCLOS), 98/3 OSPAR 판결, 2004년 에너지법 및 1998년 석유법에 따라, 사업자가 석유, 가스 및 재생 에너지 설비의 해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러한 설비 대부분을 해체할 책임이 있다.

### 헝클리 포인트 C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를 통해 헝클리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법률 및 보험 계약의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 폐쇄되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영국 우주국

유엔(UN) 협약에 따라 영국 우주 기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 비용을 영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국 우주국은 이에 대한 비계량적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학자금대출 매도

학자금대출을 매도할 때마다 증권화 거래에서 이자를 보장하고 투자 자금에서 최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유사한 보증 및 배상이 필요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부

교통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정에 관여하는데, 위기 및 전쟁 시 민간 항공기를 NATO 임무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 항공기에 보상을 제공한다.

교통부는 모든 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교통부 책임에 대한 우발부채는 제삼자에게 판매되고 제삼자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물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이 위험을 계량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 국방부

1965년 원자력시설법(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에 따라 핵분열 물질, 핵 위험 및 위험 요소의 취급과 관련하여 여러 회사에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 브리티시텔레콤(BT) 연금 제도

1984년 BT가 민영화되었을 때, 정부는 민영화된 회사의 특정 부채를 보증했다(1984년 통신법에 포함됨). 크라운 보증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우발부채는 대략적으로 BT 연금 제도(BTPS) 적자 규모에 맞먹는다(크라운 보증은 BT가 파산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금 제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적자는 113억 파운드로 평가된다. BT는 향후 발생할 이익을 위해 2018년 6월 1일부터 BTPS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 이 날짜 이전에 발생한 이익과 관련된 부채(지수 및 법적으로 필요한 증액과 함께)에만 제한적으로 크라운 보증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채는 BT plc에 남아 있으므로 보증 범위에 대한 법률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우발부채는 주로 BTPS 기금에 대한 상당한 적자로 구성된다. 하지만 BT가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은 이제 제한적이어야 한다.

### 코먼웰스 게임 보증

영국 정부는 2022년 코먼웰스 게임 유치에 성공했다. 코먼웰스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 대회 조직 및 개최를 재정적으로 보증함으로써 우발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 테러 행위 재보험에 대한 우발부채

풀 리(Pool Re)와 풀 리(원자력)은 영국의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 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와 그에 따른 사업 중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상호 재보험 회사이다. 재무부는 풀 리와 풀 리(원자력)에서 발생한 손실이 가용 자원을 초과할 위험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한다. 이러한 약정은 1993년 재보험법(테러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약정에 따른 최대 잠재적 부채는 비계량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국가연금 연령 변경

1950년 4월 5일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은 1995년 연금법에 의해 도입된 국가 연금 연령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여성들 중 일부는 후속 법에서 이루어진 추가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연령 변경으로 인해 1950년대에 태어난 일부 여성이 그들이 차별 받았으며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2019년 10월 3일 고등법원은 연령 및/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적절한 통지에 근거하여 사법 심사 청구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법원은 여러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허가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의 계량화는 이 소송의 법원 판결에 달려있다.

**3 미국의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석 20****주석 20. 우발부채**

손실 우발부채(loss contingencies)는 실체에 미칠 손실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불확실성은 하나 이상의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을 때 결국 해결된다. 정부는 다음과 관련하여 손실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 법적 처리 및 환경적 처리
- 보험 및 보증
- 기타 우발사항

정부는 결국에는 정부에 불리한 합의나 결정으로 종결될 행정절차, 소송, 불법행위 청구소송 등의 다양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험물질의 보관 및 처리 그리고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의 운영 및 폐쇄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 정화비용에 대해 손실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섹션을 참고한다.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한다. 보험증서나 보증이 발행될 때 우발부채가 발생된다. 우발부채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즉 보험가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다.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보험 및 보증' 섹션을 참고한다.

기타 우발부채로는 의회로부터 책정금액을 배정 받지 못한 정부 공사예산(construction budget) 설립, 주정부가 불허하는 메디케이드 감사 및 프로그램 관련 항소(appeals), GSE(정부지원기업)의 인출 가능성과 연관된 우발부채가 있다. 정부는 또한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계약 당사자이다. 이러한 조약과 기타 국제협정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손실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역, 상업, 보안 및 법 집행 등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된다. 정부의 기타 손실 우발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기타 우발사항' 섹션을 참고한다.

**손실 우발사항의 회계처리**

손실 우발사항에 관한 보고는 미래 사건이 손실이나 자산 손상 혹은 부채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 가능성은 SFFAS No. 5 '연방정부 재무 회계'에 따라 개연성이 있는(probable) 정도와 합리적으로 가능한(possible) 정도 그리고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정도 등으로 분류된다. 과거 사건이나 교환 거래가 발생되어 미래 자원이 유출 혹은 희생될 가능성에 개연성이 있고 그 금액이 측정 가능하다면 이 손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 주석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재무제표에도 이 주석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음 표는 연방실체들이 손실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 비추어 손실 우발부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제시한다.<sup>1)</sup>

1) 또한 손실 우발부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과거 사건 혹은 교환거래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자원의 유출 혹은 희생 가능성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손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손실 금액 혹은 범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
<b>개연성 있음(Probable)</b> 미래 자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up>2)</sup>	부채가 발생됨. 재정상태표와 순원가표에 부채를 보고.	최상의 추정금액이나 혹은 최상의 추정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 범위 중 최소 금액을 인식하고,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 손실 범위를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을 공개하고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b>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Reasonably possible)</b>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정도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이 있는 정도보다는 낮다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 손실 범위를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을 공개하고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b>희박한 수준(Remote)</b>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손실 우발부채는 정상 운영 시 발생되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은 이러한 사안이 향후 재무제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다음 섹션에 설명한 재무제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및 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함).

일부 주요 연결 실체들은 FASB가 발행한 회계보고기준을 적용하며, SFFAS No. 47 보고실체에 따라 이들 실체는 FASAB가 발행한 재무보고 기준으로 변환하지 않은 채로 미국 정부의 연결재무제표에 연결된다.<sup>3)</sup> FASAB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는(probable)' 것으로 간주한다. FASB 기준에 따르면,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개연성이 있는(probable)' 수준으로 간주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보다 더 확실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양 회계 개념체계 아래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이 있는' 정도보다는 더 낮을 경우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한(reasonably possible)' 수준이라고 간주한다('개연성이 있는(probable)'에 관한 정의는 각 회계 개념체계에 정의되어 있다).

2) 계류 중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송과 미제기 청구소송(unasserted claims)의 경우에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3) FASAB 기준으로 전환하지 않고 FAS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연결 실체로는 FDIC, PBGC, FCSIC, TVA, 스미스소니언 협회, NRRIT, USPS 등이 있다.

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						
(단위: 10억달러)	2020			2019		
	발생 부채 <sup>1</sup>	특정 케이스의 추정 손실 범위 <sup>2</sup>		발생 부채 <sup>1</sup>	특정 케이스의 추정 손실 범위 <sup>2</sup>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개연성 있음 .....	40.1	39.4	41.9	38.4	37.4	39.1
합리적으로 가능함 .....	N/A	9.7	33.9	N/A	6.7	29.2

1 발생 부채는 재정상태표의 기타 부채로 기록 및 제시된다.  
2 총 손실범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나쁜 결과가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케이스들 중 다수가 추정 손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N/A'은 '해당사항 없음'을 나타낸다.

경영진 및 법률 고문은 일부 소송, 불법행위 청구소송,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행위가 정부에 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고',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연성 있는' 소송과 관련된 추정 부채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401억달러 및 384억달러이며, 재정상태표 '기타 부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2년 Salazar v Ramah Navajo Chapter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계약지원비용(contract support costs) 관련 후속사건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원주민 보건국(Indian Health Service)을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많은 부족들이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일부 청구신청은 지급되었고, 일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전 연도에 대해 일부 부족이 추가 청구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지원비용 추정 금액은 2020회계연도에 55억달러가 그리고 2019회계연도에 52억달러가 기록되었다.

경영진과 법률 고문이 판단하기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손실 금액 혹은 범위가 추정 가능한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기타 소송도 있다. 이러한 소송 관련 추정 손실 범위는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97억~339억달러이고,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67억~292억달러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ARRA Section 1603에 따라 특정 에너지 설비를 가동한 데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미연방 청구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이다. 재무부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일부 소송에서 약 4억 6천만 달러의 보상 판결이 내려질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에너지부는 NWSA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1998년 1월 31일까지 SNF 처리를 시작하겠다는 동의를 한 표준계약을 유틸리티 업체들과 68개 이상을 체결하였다. 에너지부는 NWSA에 따라 SNF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요구하는 대로 유틸리티 업체들의 SNF 처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에너지부는 이러한 지연의 결과로 부분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SNF 청구소송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합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30일 기준 총 부채 추정 금액은 392억달러이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합의에 따라 지불한 누적금액 86억달러를 공제하면 최종판결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부채는 약 306억달러이다. 이 금액은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285억달러였다.

과거 에너지부가 핵시설을 운영한 결과로 원고가 방사능 및 독성물질 노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과 불법행위 소송이 현재 및 이전 에너지부 계약업체들을 상대로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송으로 현재 총 12억달러의 피해금액이 청구 중이다.

예상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손실 발생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지만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소송 건도 다수 계류 중이다. 원고가 특정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들도 있다. 잠재적 손실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러한 소송들이 최종 종결될 경우 미국 정부의 재무상태나 운영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재산을 가로채고, 우선주 및 보통주 주주의 계약상 권리를 위반하고, 재무부와 각 GSE(정부 지원기업) 간의 SPSPA(시니어 우선주 매입계약) 3차 개정이 2012년 8월에 체결될 당시의 수탁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미연방 청구법원과 미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다수 존재한다. 2008년 9월 GSE가 후견제도 아래 놓이게 되고 재무부와 SPSPA를 체결할 당시 미국 정부가 원고의 재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사건도 한 건 있다. 미연방 청구법원에서 원고는 미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만을 추구한다. 미연방 청구법원에 계류 중인 일부 사건의 경우 미국 정부의 소송 각하 요청이 허용되어 청구권이 부인되었다. 소송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연방 지방법원에서 원고는 SPSPA 3차 개정을 철회하고 FHFA의 구조가 권력분립을 위반한다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 텍사스 남부지방의 미연방 지방법원에서 한 사건이 당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으며,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재무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소송 각하 결정을 확인하였으나, FHFA를 상대로 하는 청구소송 한 건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도록 허용하였다. 미네소타 지구와 미시간 서부지구의 미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당해 법원들에 의해 각하되었고, 항소가 진행 중이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구의 사건은 소송 진행 상태이며, 소송 각하 요청이 진행 중이다. 재무부는 현 시점에서 이들 사건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나 관련된 잠재적 손실을 추정할 수가 없다.

## 보험 및 보증

주식 1.M 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부채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보험 및 보증사업을 하는 연결대상실체들은 FASB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보험사업은 FASAB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회계 처리된다. 보험 및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주식 16 - 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부채 섹션을 그리고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복지에 관해서는 주식 13 -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 섹션을 참고한다.

### FASB를 기준으로 보고하는 실체

PBGC, FCSIC, 및 FDIC는 FAS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보험 혹은 보증사업을 운영하는 연결대상실체다. FASB에 따르면 실체는 손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remote) 특정 손실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PBGC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참여하는 실체들의 연금수당을 보증한다. 현행법에 따라 PBGC 부채는 PBGC 자산으로만 상환될 수 있으므로, PBGC 부채는 미국 정부가 완전 보증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PBGC의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 연금보험사업의 총자산은 각각 1,435억달러 및 31억달러였다. 2019회계연도에 PBGC는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의 연금보험사업 총자산으로 각각 1,281억달러 및 29억달러를 보고하였다.

PBGC는 단일고용주 사업과 복수고용주 사업 이렇게 두 개의 개별 연금보험사업을 운영 중이다. 단일고용주 사업에는 2020회계연도에 약 2,350만명이 참여하였고(2019회계연도 참여인원은 약 2,470만명이었음), 이 사업에 참여하여 2020회계연도에 중단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최대 연 보증 최대 수령금액은 \$69,750이었다. 단일고용주의 최대 보증급여는 고용주 파산을 지원한 날 혹은 참가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날 등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2020회계연도에 진행된 사업의 수는 약 23,200건이었다.

복수고용주 사업은 1,400여개의 보험사업에 약 10,900,000명이 참가하며, 연 최대 수령금액은 이 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에 30년을 근무한 경우 \$12,870이다. 복수고용주 사업 참가자의 최대 수령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다르고, 참가자의 근속연수가 30년 미만이면 더 낮고 30년 이상이면 더 많다. PBGC는 복수고용주 사업이 2026년 기말까지 지급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7 기말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 PBGC가 복수고용주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사업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로 한정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PBGC 재무제표를 참고한다. 2021년 3월 11일에 대통령은 '2021년 미국 구제계획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BGC 보증 복수고용인 연금제도에 특별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다. 경영진은 현재 PBGC의 채무와 우발부채 정보공개에 관한 이 법률이 미치는 영향(복수고용주 프로그램의 예상 파산일자를 포함)을 평가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주석 29 - 후속사건을 참고한다.

FCSIC는 범시스템적 채무증권(Systemwide Debt Securities) 관련 원금과 이자의 적시 지급을 보장한다.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은 영농신용은행(Farm Credit System Bank)의 일반 무담보 연대채무(unsecured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이다.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은 미국 정부의 채무가 아니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농업신용시스템에 관한 농업신용 분기보고서(Farm Credit Quarterly Information Statement of the Farm Credit)'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미상환 범시스템적 채무증권 금액은 각각 3,091억달러 및 2,829억달러이다. FCSIC가 제공하는 보험 역시 미국 정부의 채무가 아니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FCSIC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농신용은행들이 연대책임 아래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FCSIC는 보험기금 (Insurance Fund) 잔액으로 각각 54억달러와 51억달러를 보고하였다.

FDIC는 은행과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의 예금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FDIC는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 FDIC의 보험대상 예금은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각각 8조 9,266억달러 및 7조 7,369억달러이다. 보험대상 예금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화기관과 재정기관 그리고 개인, 기업, 금융기관 참가자들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다.

정부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각각 1,856억달러와 1,656억달러의 합리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를 보증한다.

PBGC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손실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민간부문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관해 PBGC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충기득급여(unfunded vested benefits)로 각각 1,855억달러와 1,655억달러를 보고하였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단일고용주 관련 PBGC의 추정 위험노출 금액은 1,762억달러이다.<sup>4)</sup> 단일고용주사업 우발부채가 215억달러만큼 증가한 주된 이유는 추정 노출위험에 사용된 이자요인이 감소하고 채권 등급이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회사들이 증가한 때문이다. 합리적

4) 단일고용주 제도에 관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추정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으로 발생 가능한 복수고용주의 위험노출에 관한 PBGC의 2020회계연도 추정금액은 93억달러로 감소하였다. 복수고용주사업 우발부채 위험이 15억달러 감소한 주된 이유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세 개의 대형 사업을 정리한 영향 때문이다.

FDIC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보험가입 실체들이 결국 파산할 경우 DIF에 추가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산업에서 확인된 추가 위험에 대해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억달러를 보고하였다.

FASAB를 기준으로 보고하는 실체

보고실체 기말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총 보험담보금액은 보유계약액(insurance in-force)으로 불린다. 보유계약액은 특정일자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련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총보험금액을 나타낸다. 보유계약액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금액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대 노출위험과 동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래 표는 SFFAS No. 51 보험프로그램에 따라 FASA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결대상실체의 추정 보유계약액을 제시한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 보유계약액		
(단위: 10억달러)	2020	2019
<b>보유계약액(Insurance In-force):</b>		
지니메이 - HUD .....	2,117.7	2,092.8
미국신용협동조합 보험기금 - NCUA .....	1,400.0	1,200.0
국가홍수보험사업 - DHS .....	1,338.9	1,330.0
연방 농작물보험 - USDA .....	127.0	109.0

지니메이는 MBS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보증함으로써 인해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니메이 MBS는 FHA, 공영 및 원주민 주택공사(Public and Indian Housing), 농촌주택청(Rural Housing Service), VA가 보증하는 모기지 론 담보부 증권이다. 따라서 미상환 MBS 관련 지니메이의 신용위험은 '주석 4 -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채권' 섹션에서 언급한 보증에 의해 크게 경감된다.

NCUA가 운영하는 NCUSIF는 FCU(Federal Credit Union) 및 적격(qualifying) 주정부인가 신용조합(state-chartered credit unions)의 멤버지분(예금)을 보증한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NCUSIF가 2,000억달러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주식시장 변동성과 CARES Act를 통한 부양책,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 크게 향상된 개인저축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 지불유예 등이다. NCUSIF는 각 멤버 계정의 잔액을 보증하며, 표준 최대 보험금액은 250,000 달러이다.

FEMA가 운영하는 NFIP는 교환거래 보험프로그램으로 간주되며, NFIP 규정을 따라 홍수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FEMA는 주요 홍수 관련 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이 재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재보험 및 자본시장의 재보험 담보금액을 보증한다.

DHS 소속인 FEMA는 NFIP의 홍수보험금과 보험금청구 관련 비용을 지급할 목적으로 최대 304억달러를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보험금과 비용 관련 기존의 채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적용된다. 징수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채무 상환에 이용된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

로 FEMA는 채무부에서 205억달러를 차입하여 99억달러를 아직 더 차입할 여력이 남아있다. 보조지원을 받은 보험료(subsidized rate)를 기준으로 FEMA가 징수한 NFIP 관련 보험료는 채무 상환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FEMA는 현 보험료를 체계로는 보험료로 채무 상환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USDA FCIC가 운영하는 연방 농작물보험사업(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은 단기거래 보험사업으로 간주된다. 농작물보험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예상치 못한 수확률 혹은 가격 인하로 인한 영향을 보증한다. 2020년 및 2019년에 농작물과 관련되어 시행 중인 보험이 약 110만건 존재하였다. 보험증권은 허가를 득한 보험회사와 농민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마련되며, FDIC는 허가를 득한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제공한다. 농작물보험은 농민이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자동 갱신된다.

FCIC는 보험기금 금액이 FCIC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농림부장관에게 상품 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기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존재하지만, FCIC는 보고기간에 상품신용공사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USDA는 보험료 지원, 인도비용, 보험료를 초과하는 손실, 연구 및 인도비용을 커버하는 데 사용될 금액을 농작물보험사업을 위해 영구적으로 무기한 책정하였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FCIC의 미상환 채무는 없다.

자세한 정보는 HUD, NCUA, DHS, USDA 재무제표를 참고한다.

'2002년 테러위험 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개정법 포함)은 참여 보험회사가 테러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위험노출에 관해 연방정부에 지원장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TRIP을 마련하였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에 제정된 이 법은 테러위험으로 인해 시장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대처하고, 테러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업 손해보험 및 재해보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민간시장이 테러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흡수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최근에 '2019년 테러위험 보험제도 재인가법(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9)'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TRIP이 인가되었다. 재무부장관이 일단 해당 사건을 '테러행위'로 인정하면 TRIP에 따라 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시된다(DHS 및 미국 법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침). '테러행위'가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 손실을 미국 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가 지정 공제 가능 금액을 충족하여 총보험손실 기준(프로그램 트리거(Program Trigger))에 도달하였음이 전제된다. 2020년 및 2019년 프로그램 트리거 금액은 각각 2억달러 및 1.8억달러였다. 프로그램 트리거는 2027년에 프로그램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2억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공제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대상 손실은 보험회사와 미국 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TRIP에는 상황에 따라 재무부가 TRIP 아래 지불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시켜 회수할 수 있는 의무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테러행위로 인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관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TRIP에 의거하여 제기된 청구 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기타 우발부채

DOT, HHS 및 재무부는 아래의 기타 우발부채를 보고하였다.

FHWA는 미국연방법전 제23편 제115(a)조항 및 미국연방규정집 제23편 제630.701조부터 제630.709조에 따라 선급공사(advance construction)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리로 인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우발부채를 갖는다. FHWA는 이러한 '선급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에 최종 자금지원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 자금을 담보하지 않는다. FHWA에 이용 가능한 자금이 생길 때 주정부는 이러

한 프로젝트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 변제를 신청할 수 있고 FHWA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 혹은 거절할 수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FHWA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687억달러 및 668억달러를 사전 허가하였다. 의회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어떠한 부채도 DOT 연결재무제표에 발생되지 않는다.

주정부가 현재 항소 중인 메디케이드 감사 및 프로그램 각하 건으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되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메디케이드 금액은 각각 37억달러 및 99억달러이다. 주정부는 HHS에 지불함으로써 자금을 되돌려주거나 혹은 주정부에 제공할 향후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HHS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대로 주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HHS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제기한 비용의 정당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할 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하의 일부 상환금액이 연기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주정부 비용에 관한 미해결 검토 건도 존재한다.

재무부는 GSE(정부지원기업)의 미래 인출과 관련된 우발부채를 갖는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발생된 개연성 있는 미래 인출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미래 인출금액은 측정 불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주석 9 - GSE(정부지원기업) 투자를 참고한다.

미국 정부가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고실체는 우발부채를 정하고 SFFAS No. 5의 지침을 따라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한다. 조약 및 기타 국제협약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9 - 약정사항을 참고한다.

## 4 호주 2020회계연도 정부 연결재무제표 주석 9A

### 주석 9A: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미래사건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과거사건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 또는 자산이다. 호주정부의 주요 우발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

#### 배상, 보증 및 담보(Indemnity, guarantee, warranty)

배상(indemnity)은 호주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다. 보증(guarantee)은 호주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수행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보증은 특정한 미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여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수반할 수도 있다. 담보(warranty)은 호주정부가 약정의 타방 당사자에게 특정한 확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비법인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호주정부를 대신한 배상, 보증 또는 담보의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PGPA법 제60조를 준수해야 한다. 금액이 3,000만호주달러 이상인 약정 또는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약정은 반드시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수상의 승인을 받거나 재무장관의 서면결정문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법적으로 연방정부와 분리되며 PGPA법 제61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자신의 정당한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다음은 수량화할 수 있는 배상, 보증 및 담보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42,162	39,021	43,061	40,261
증가	2,777	2,628	3,043	2,771
재측정	167	556	198	285
손실정리 부채	(18)	-	(18)	-
만료	(13)	(43)	(493)	(256)
<b>6월 30일 현재</b>	<b>45,075</b>	<b>42,162</b>	<b>45,791</b>	<b>43,061</b>

위 내용에 추가하여 연방정부는 다수의 배상, 보증 및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 대한 노출은 신뢰성 있게 정량화할 수 없으며 일부는 보증의 범위가 무한정이다. 다음은 수량화할 수 없는 주요 배상, 보증, 담보 및 관리 포트폴리오를 열거한 표다. 각 우발부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포트폴리오 중앙관서 및 보고실체의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량화할 수 없는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p><b>테러 관련.</b> 호주 재보험회사 ARPC(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는 2003년 테러보험법(Terrorism Insurance Act 2003)에 따라 테러사건(Declared Terrorism Incident) 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및 관련 업무중단손해에 대한 테러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호주정부는 민간부문의 재보험 잔액이 100억호주달러를 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재재보험 수재를 보증한다. 아울러 호주정부는 해외 테러로 희생된 호주국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AVTOP(Australian Victims of Terrorism Overseas Payment Scheme)을 운영한다.</p>	재무부/내무부
<p><b>의료 배상.</b> 호주정부는 2002년 연방의료손해보상보험법(Medical Indemnity Act 2002) 및 2010년 조산원 배상(연방정부 보험료)제도법(Midwife Professional Indemnity (Commonwealth Contribution) Scheme Act 2010)에 따라 잠재적 부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합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또는 보건의료제품(혈액제품과 백신 포함)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p>	보건
수량화할 수 없는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p><b>주둔지지원·복지 서비스 및 이민자수용소 서비스.</b> 호주정부는 호주 지역심사 센터의 주둔지지원·복지 서비스 제공자 및 이민자수용소 서비스 제공자와 책임제한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하였다.</p>	내무부
<p><b>중소기업(SME) 담보제도</b> 호주정부는 대주의 여신제공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적격 대주에게 담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자격 대주들은 중소기업에 최대 25만호주달러의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SME 담보제도의 상한액은 200억호주달러다.</p>	재무부
<p><b>자산 매각, 심사 및 기타 약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지원하는 주무관 및 국장.</b> 호주정부는 자산 매각, 심사 및 기타 약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지원하고자 성실하게 활동하는 부처 국장, 위원, 자문, 주무관 또는 직원에게 수시로 담보, 약속 및 배상을 제공하였다.</p>	여러 부처

그 외에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호주정부 재무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우발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의하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b>금융청구권제도 - 예금.</b> 금융청구권제도는 1959년 은행법( <i>Banking Act 1959</i> )에 따라 인가되었으며 최대 25만호주달러까지 공인예금수취기관 예금을 보증한다. 2019년 12월 31일 최종 추정 당시 금융청구권제도에 따른 적격 보증 예금은 약 9,500억호주달러였다(2018년 12월 31일: 9,200억호주달러).	재무부
<b>금융청구권제도 - 보험.</b> 보험계약자보상기금(Policyholder Compensation Facility)은 1973년 건강보험법( <i>Insurance Act 1973</i> )에 따라 의무불이행 일반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적법한 청구에 대해 유자격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재무부

호주정부는 NBN Co.가 텔스트라(Telstra) 및 옵터스(Optus)에 대해 지는 금융의무와 관련하여 가능성이 낮지만 유의한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 연방정부 2019-20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과 배상은 본 공시에서 제외하였다.

### 미불입 지분 및 출자금

호주정부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다자간투자담보기구(MIGA)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미불입 출자금을 보유 중이다. 다음은 미불입 지분 및 출자금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19,772	18,770	19,844	18,839
재측정	428	1,002	429	1,005
<b>6월 30일 현재</b>	<b>20,200</b>	<b>19,772</b>	<b>20,273</b>	<b>19,844</b>

## 클레임 및 소송

호주정부의 다양한 보고실체는 언제든지 클레임과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재판 또는 기타 절차에 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호주정부 일반보험기금, 즉 컴커버(Comcover)를 통해 보험에 부보되어 있다. 다음은 수량화할 수 있는 클레임 및 피해 우발부채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133	122	136	126
증가	150	78	152	79
재측정	146	-	146	(1)
손실정리 부채	(216)	(2)	(216)	(3)
만료	(7)	(65)	(7)	(65)
<b>6월 30일 현재</b>	<b>206</b>	<b>133</b>	<b>211</b>	<b>136</b>

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클레임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비용이 확실치 않아 그 위험 노출을 신뢰성 있게 정량화할 수 없는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년 아동성학대범죄피해보상법(*Institutional Child Sexual Abuse Act 2018*)에 의거 아동성학대피해자보상제도(National Redress Scheme)가 2018년 5월 23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동성학대피해자보상제도는 제도적 아동성학대 피해자에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책임기관의 직접적인 개인응답 및 현금지급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로는 이 제도에 따른 원가를 수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육류에 대해 201년 6월 7일 취해진 일시적 수출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호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2020년 6월 2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호주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집단소송 구성원의 피해 규모 및 현재 진행 중인 청구는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각 우발부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포트폴리오 중앙관서 및 보고실체의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복원 및 오염제거

호주정부는 가끔 환경적 우려 및 관련 우려의 잠재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복원의 규모, 성격 및 추정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 시 심층적인 검토가 뒤따를 수 있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복구 추정비용에 대해 재정에서 총당부채를 계상하였다. 복원 및 오염제거 지역 가운데 잠재적 원가를 정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는 국방부 소유 부동산,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부와 체결한 구공댐(Googong Dam) 리스약정 및 마라링가(Maralinga)의 영국핵실험지에 대한 우발부채가 있다.

호주정부는 또 자원개발에 따른 사건, 사고 이후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배상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는 액체연료 긴급사태, 선박의 해양오염, 고르곤(Gorgon)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잠재적 사고 등이 있다.

## 기타우발부채

RBA는 호주의 바젤Ⅲ 유동성 기준서 이행의 일환으로 유자격 공인예금수취기관(ADI)과 유동성공여약정(CLF)을 체결한다. CLF는 특정 조건에서 RBA와의 재구매약정에 따라 ADI에 자금공여를 약속한다. CLF는 바젤Ⅲ에 명시된 대로 ADI의 유동성 요건 충족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CLF의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호주의 경우 고품질 유동자산의 공급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 적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CLF 및 기타 수량화 가능 우발부채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6,550	6,448	224,538	229,759
증가	1,291	824	1,295	824
재측정	41	274	(16,765)	(5,049)
손실정리 부채	-	(32)	-	(32)
만료	(1,622)	(964)	(1,622)	(964)
<b>6월 30일 현재</b>	<b>6,260</b>	<b>6,550</b>	<b>207,446</b>	<b>224,538</b>

그 밖에도 몇몇 회계실체들은 종업원 간접비 과소납부와 관련하여 수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를 확인하였다.

## 5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정부 재무제표 주식 26

### 주석 26: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측정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는 현재의 부채(계량화불가능부채).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보증과 배상, 법률적 분쟁과 클레임 및 미납입자본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우발부채는 운영 및 재정상태표 위험의 혼합체이며 실현될 수 있는 규모와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발부채가 실현되거나 그 금액이 부채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성이 있을 경우 이는 운영수지와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중앙정부 순채무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일부 예비비(예: 미납입자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중앙정부 순채무에 국한될 것이다.

우발자산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했으나 자산의 금액 또는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 여부가 특정 사건 발생 시까지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자산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별도로 공시하였다. 2,000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의 수량화 가능 예비비는 “기타계량화가능(other quantifiable)” 합계에 포함시켰다. 일부 예비비는 수량화할 수 없으며 이처럼 수량화가 불가능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였다. 뉴질랜드 GAAP에 따른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우발부채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b>계량화가능우발부채</b>		
미납입자본	8,384	8,245
보증과 배상	263	190
법적절차 및 분쟁	491	734
기타계량화가능우발부채	485	488
<b>계량화가능우발부채 합계</b>	<b>9,623</b>	<b>9,657</b>
<b>재원별</b>		
중앙정부:	9,453	9,175
공공기관	89	392
공기업	210	191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129)	(101)
<b>계량화가능우발부채 합계</b>	<b>9,623</b>	<b>9,657</b>

뉴질랜드 정부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우발사태가 명백한 시점 또는 현재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수량화불가능부채) 시점에 보고하였다. 수량화불가능부채를 포함한 우발부채는 손실정리 가능성이 낮지 않은 시점에 공시하였다. 우발자산은 효익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시하였다.

**미납입자본**

아래에 열거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글로벌 금융안정과 경제안정을 보증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법에 대한 약정의 일환으로 특정 기관에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납입한다. 일반적으로 (납입된) 자본은 회원국을 위해 추가적인 차관 기금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거나 쿼터 출연금의 경우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차관 재원을 공급한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공여국들의 자본출자는 “납입자본금”과 “요구불자본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구성된다.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아시아개발은행	3,315	3,216
국제통화기금 - 약속어음	2,058	2,145
국제부흥개발은행	1,724	1,654
국제통화기금 - 차입약정	693	66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5	551
기타미납입자본	19	19
<b>미납입자본 합계</b>	<b>8,384</b>	<b>8,245</b>

*아시아개발은행(ADB)*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ADB의 지역 창립회원국 가운데 하나다. 뉴질랜드는 지역 회원국이지만 공여국의 일원으로서 ADB에서 자금을 차입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비지역 회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오직 ADB의 요구에 따라 ADB 자원에 출연한다.

*IMF 약속어음*

뉴질랜드는 IMF 출연금을 일부 현금, 일부 약속어음(미납입자본)으로 납입한다. IMF가 자금거래계획(Financial Transaction Plan, FTP)에 따라 차입국에 차관을 제공할 때 이 납입자본과 미납입자본의 비중은 바뀐다. 약속어음은 엄밀히 따지면 “청구 즉시 지불(at call)”되는 것이지만 이를 청구하기 위한 실제 능력에는 유의한 제한이 있고 지급청구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기 없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우발부채로 취급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BRD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주요 차관제공기관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188개국과 함께 세계은행그룹의 회원국이자 주주다. 지분비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자본시장에서 IBRD의 차입 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회원국으로서 IBRD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본을 출연한다.

*IMF 차입약정*

국제금융위기 발생시 IMF의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IMF 기금이 조성된다. IMF 차입약정은 불확실한 촉발사건의 발생 및 IMF의 기금 요청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것은 우발부채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뉴질랜드는 AIIB의 지역 창립회원국 중 하나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역내 인프라투자의 격차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AIIB 기금은 불확실한 촉발사건의 발생 및 AIIB의 기금 요청에 따라 조성된다.

### 보증과 배상

보증(Guarantee)은 보증인이 타방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제공하거나 타방 당사자의 지급불능 발생 시 해당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보증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이나 서비스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상(Indemnity)은 배상의무자가 타방 당사자가 입을 지 모르는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하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을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뉴질랜드 수출신용보증	127	109
OECD 종업원급여 지분	44	29
에어뉴질랜드 신용장 및 이행보증	34	31
기타 보증 및 배상	58	21
<b>보증 및 배상 합계</b>	<b>263</b>	<b>190</b>

#### 뉴질랜드 수출신용보증

뉴질랜드 수출신용관리국은 뉴질랜드 수출자의 위험관리 및 전 세계에 걸친 무역기회 자본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제품을 제공한다. 정부는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보증하며 이러한 의무는 민간부문 시설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OECD 종업원급여 지분

뉴질랜드는 OECD 회원국으로서 OECD가 정한 연금, 보건의료에 대해 종업원급여채무의 비례 책임을 갖는다. OECD는 동 채무의 측정치를 OECD 재정상태표에 53억 9,600만유로(€)로 증액하였다(이 액수 중에서 4,400만뉴질랜드달러가 뉴질랜드의 미적립 지분임). 이 책임이 언제 촉발될 것인지 또는 실제로 촉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에어뉴질랜드 신용장 및 이행보증

신용장은 주로 여객수수료 및 공항착륙료에 대해 개설된다.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보증도 있다. 이행보증은 주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대해 제출된다.

### 법적절차 및 분쟁

법적절차 및 분쟁에 대한 계량화가능우발부채 금액은 이자를 비롯하여 이러한 소송에서 패했을 때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표시하였다. 아래에 표시한 금액은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최대비용이며 이는 청구의 타당성 또는 지급 판정금액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조세소송절차	189	134
키위 궤양병 Psa-V	93	93
뉴질랜드교통청 - 계약분쟁	80	385
보건부 - 계약분쟁	47	31
교육부 - 계약분쟁	26	23
에어뉴질랜드 소송절차	25	-
기타 법적절차 및 분쟁	31	68
<b>법적절차 및 분쟁 합계</b>	<b>491</b>	<b>734</b>

*조세소송절차*

납세의무자는 분쟁과정 이후 부과된 과세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사국 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우발부채는 IRD가 그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계상하는 최대 부채를 나타낸다.

*키위 궤양병 Psa-V*

뉴질랜드의 수확 후 운영업체(post-harvest operator)인 시카(Seeka Limited)는 키위궤양병 'Psa-V'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카는 2016년 9월에 피해명세를 첨부한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액은 9,300만 뉴질랜드달러였다. 일차산업부는 배상청구를 방어하였다.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2018년 6월 27일에 일차산업부가 시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시카는 일차산업부가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교차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동 교차항소를 기각하였다. 시카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하였다. 이 우발부채 9,300만뉴질랜드달러는 일차산업부가 동 사건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부채를 나타낸다.

*뉴질랜드교통청 - 계약분쟁*

법적절차와 분쟁은 국도 건설과 유지보수 및 기타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아울러 뉴질랜드교통청과 그 계약자 사이에 쌍방간의 분쟁에서 초래될 기술적, 상업적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부 - 계약분쟁*

법적절차 및 분쟁은 주로 병원 건설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보건부는 쌍방간의 분쟁에서 초래될 기술적, 상업적 문제에 대해 보건부 계약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 계약분쟁*

법적절차 및 분쟁은 주로 법에서 정한 교육부 역할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에어뉴질랜드 - 법적절차*

뉴질랜드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이 2020년 4월에 내린 결정은 에어뉴질랜드가 2003년 휴가법에 의거 제3자에 대한 수급권을 계산하고 단기인센티브제도에 따라 지불금을 처리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제3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에어뉴질랜드의 임의적인 단기인센티브제도 지불금 관련 입장은 항소법원의 공판 및 판결 이후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고용법원의 추론이 인정되어 에어뉴질랜드의 단기인센티브제도에 적용된다고 결정될 경우, 앞서 6년간의 의무와 관련하여 약 2,500만뉴질랜드달러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기타계량화가능우발부채**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미청구휴면예금	183	174
일차산업부 - 보나미아 오스트레(Bonamia ostreae) (주: 납작굴에 기생하는 전염성 기생충)	132	138
트랜스파워 - 경제적 이익	80	2
에어뉴질랜드 파트너십	70	155
기타우발부채	20	19
<b>기타우발부채 합계</b>	<b>485</b>	<b>488</b>

*미청구휴면예금*

1971년 미청구휴면예금법(Unclaimed Money Act 1971)에 따라 회계실체들(예: 금융기관, 보험회사)은 6년 이상 미청구 휴면예금을 IRD로 귀속시켜야 한다. 해당 자산은 본인 확인을 거쳐 예금주에게 지급된다.

*일차산업부 - 생물안전법에 따른 보상*

1993년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1993) 제162A조는 정부의 생물체 관리 또는 근절을 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 재물 파손 또는 개인의 재화 이동제한에 따른 검증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

는 보상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 일차산업부의 고시에 따르면 완두콩 바구미, 보나미아 오스트레, 카우리 다이백병(kauri dieback), 기타 침입외래종에 대한 대응조치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또한 격리검역장(Post Entry Quarantine)이라고 알려진 시설의 대응조치에 따라 식물 모종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와의 논의에 따라서는 IBD(Infectious Bursal Disease) 바이러스 피해에 따른 청구도 예상된다. 이러한 청구를 수량화할 수는 있지만 총당부채 인식을 위한 평가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 *트랜스파워(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 경제적 이익*

트랜스파워는 주주에게 귀속된 경제적 손익과 고객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익을 분석하는 경제적 가치(EV) 체계 내에서 수익설정방법을 운영한다. 뉴질랜드통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트랜스파워는 규제관리기간 2(Regulatory Control Period 2)의 마지막 시점에 고객 잔액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이전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잔액을 청구받는다. 트랜스파워의 우발부채는 2020년 6월 30일 현재 EV 계정의 잠정적인 잔액을 포함한다. 이 잔액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 *에어뉴질랜드 파트너십*

에어뉴질랜드그룹은 프랫앤휘트니(Pratt and Whitney)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에어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엔진 센터(CEC)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되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몇 가지 공동 부채가 존재한다. 한편, 우발부채는 에어뉴질랜드의 CEC 부채 지분을 의미한다.

### 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

재무제표상의 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는 배상, 법률적 분쟁 및 기타우발부채 범주에서 보고한 수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를 열거한다. 단,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는 제외한다.

### 배상

배상은 배상의무자가 타방 당사자의 잠재적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하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을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본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회계실체에 대해서는 특정 손실로부터 해당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해준다. 만약 이러한 배상을 정리하여 개별 실체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비용과 순채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운영수지와 순자산의 합계는 배상 그 자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보다는 손실을 보전받은 조직이 발생시킨 구체적인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손실을 보전받는 당사자	배상 증서	손실을 보전받는 행위
컨택트 에너지 (Contact Energy Limited)	컨택트 에너지의 미지급 대지권 및 와이라케이(Wairakei) 지열발전소 자산을 전액 청산하기 위해 컨택트 에너지와 서명한 다수의 문서	동 문서는 타방 당사자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당사자 자산의 특정 손실 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컨택트 에너지에 대해 두 건의 상호배상 조항을 둠.
지진위원회(EQC)	1993년 지진위원회법 제16조	1993년 지진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EQC가 재무부장관이 정한 조건으로 금융부채를 담보할 수 있도록 EQC 자산의 결손을 보전해야 함.
제네시스에너지 (Genesis Energy Limited)	제네시스에너지의 테카포(Tekapo) A 및 B 발전소 인수	운영 지역권을 전제로 호수바닥과 강바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보안판사, 치안판사 및 소액분쟁재판소 심판관	2016년 지방법원법 제50조, 1957년 치안판사법 제4F조 및 1988년 소액분쟁재판소법 제58조	판사와 심판관의 판결이 관할권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그 결과로 해당 판사와 심판관이 입는 피해와 비용. 단, 고등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함. 즉, 하급심이 단지 선의에서 관할권 범위를 초과 하였으므로 판사의 손실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판결해야 함.
마우이 파트너스 (Maui Partners)	천연가스 매장량 정보와 관련하여 마우이 파트너스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뉴질랜드알루미늄 제련소와 코말코 (Comalco)	현재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타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 드로스(dross)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과 2004년 2월에 재무부장관이 체결한 배상계약	관련 당국의 요구로 알루미늄 드로스를 타 지역으로 이동,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

<p>뉴질랜드지방당국 (New Zealand Local Authorities)</p>	<p>2002년 민방위긴급조치법 제39조 - 민방위비상관리계획</p>	<p>민방위비상관리계획 지침(‘지침’)에 의하면 지방당국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지방 또는 국가 비상급 사태로 인해 발생한 특정 종류의 대응비용 및 복구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음. 이 지침의 승인 및 공표 책임자는 민방위비상관리청장임.</p>
---	--	--

손실을 보전받는 당사자	배상 증서	손실을 보전받는 행위
<p>뉴질랜드철도공사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p>	<p>1990년 재정법 제10조</p>	<p>뉴질랜드철도공사의 모든 부채와 스왑의무를 보증함.</p>
<p>뉴질랜드교통청 (NZTA)</p>	<p>1989년 공공재정법 제65ZD조에 따른 배상증서</p>	<p>마오리 청구(Māori Claim) 또는 자연재난사건(Natural Disaster Event)의 지급불능, 트랜스미션 걸리(Transmission Gully) 국도와 푸호이(Pūhoi)-워크워스(Warkworth)간 국도건설사업계약의 만료 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등, 추가적인 지급금과 관련하여 NZTA의 손실을 보전함.</p>
<p>준비은행</p>	<p>구상채권의 대규모자산매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을 위해 정부가 준비은행에 제공하는 손실보증증서</p>	<p>2020년 3월, 정부는 준비은행의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을 보증하기로 합의함. 2020년 5월에는 보증 규모가 증가함.</p>
<p>캔터베리지진피해 복구공사 (SRES)</p>	<p>배상증서</p>	<p>SRES는 캔터베리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AMI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하지만 일부 청구 건은 정상적인 내부절차 또는 외부의 조력 (예: 중재)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SRES는 특정 소송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25일에 배상증서를 제공받음.</p>
<p>뉴질랜드합성연료공사-와이타라 폐수배출 배상</p>	<p>뉴질랜드합성연료공사(Synfuel)의 공장과 운영권을 뉴질랜드액화연료 투자공사(NZLFI)에 매각(1990년)</p>	<p>정부는 와이타라(Waitara) 육류가공공장 지역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보스웁-CWS(및 그 이후의 소유권자)간에 체결한 배상증서의 효익과 의무를 NZLFI로 이전함. 정부는 NZLFI로부터 면책보증(역보증)의 효익을 획득하였고 그 이후에 이 보증을 메타넥스 모투누이(Methanex Motunui Limited)로 이전함.</p>
<p>웨스트팩(Westpac) 뉴질랜드리미티드 (New Zealand Limited)</p>	<p>국내거래금융서비스 표준약관</p>	<p>정부와 웨스트팩뉴질랜드리미티드 사이에 2015년 9월 24일 체결된 거래금융서비스약관 정부는 다음 항목에 대해 웨스트팩 뉴질랜드리미티드의 손실을 보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를 대신하여 발행된 신용장에 따라 웨스트팩뉴질랜드가 지급한 금액 일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특정 비용, 피해 및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인가, 위조 및 변조 지급지시</li> <li>- 미인가 또는 부정확한 자동이체 지시</li> <li>- 정부를 수취인으로 하는 대신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잘못 발행한 수표</li> </ul> </li> </ul>
--	--	--

### 법적 청구 및 절차

현재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 중 대다수는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으며 설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그 영향이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모든 소송을 개별적으로 공시하지는 않았다. 개별 공시가 이루어진 청구는 비록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비용 면에서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 사고보상공사(ACC) 소송

ACC가 연루되는 소송은 주로 ACC가 내린 업무적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 및 상소절차를 통해 이의가 제기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쟁은 제기된 소송의 쟁점을 기반으로 하며 ACC의 능동적인 소송관리는 분쟁 중인 쟁점의 본안에 따라 합의 아니면 방어가 될 것임을 의미하므로 우발부채가 발생한 것은 없다. ACC 이사회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항소의 해결이 ACC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수산양식소송 합의

2004년 마오리양식업피해소송합의법(Māori Commercial Aquaculture Claims Settlement Act 2004)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이위(Iwi: 부족)에게 향후 수산양식업 성장가치의 20%에 해당하는 총당부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까지 연속되는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뉴질랜드의 양식업은 성장 추세에 있어 이 지급의무는 증가할 예정이다. 이위는 협상 과정에 따라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어업권 또는 두 가지의 조합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 금액과 시기는 이 부문의 성장 및 어떤 합의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잠재적 의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 캔터베리 보험 분쟁

캔터베리지진피해복구공사(SRESL)는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배상청구 합의와 관련하여 수시로 법적 청구 및 분쟁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고 있다.

2020년 9월 7일,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SRESL이 2019년 8월 16일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주문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배상청구의 합의와 관련하여 도드씨 부부(Mr and Mrs Dodds)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재무부장관은 정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항소법원 결정의 원칙을 통보받은 정부와 SRESL은 도드씨 부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다른 보험계약자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 계정에 발생할 의무는 수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각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항소법원 결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29일에 SRESL을 상대로 집단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SRESL은 이 배상청구 사건을 방어하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결과의 범위를 신뢰성 있게 수량화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소송 결과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한 것은 없다. 이 소송의 결과로 나타나는 추정 잠재 의무는 그 불확실성이 크다.

#### *키위 궤양병 Psa-V*

125 페이지에 언급한 시카(Seeka Limited)의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스트래보스키위(Strathboss Kiwifruit Limited)가 대표하는 약 210개 키위농가는 자신들이 입은 키위궤양병, Psa-V의 생물안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년 6월 27일, 고등법원은 일차산업부가 스트래보스와 심판청구인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반복하여 일차산업부가 스트래보스와 심판청구인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스트래보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상고를 허가하였다. 손실의 규모는 고등법원의 2심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스트래보스의 배상청구를 수량화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일차산업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지 않는 한 2심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청구 액수의 수량화는 불가능하다.

#### *일차산업부 - 생물안전법에 따른 보상*

1993년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1993) 제162A조는 정부의 생물체 관리 또는 근절을 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 재물 파손 또는 개인의 재화 이동제한에 따른 검증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피해업계로부터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Mycoplasma Bovis) 감염의 정부 대응 이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일차산업부는 1993년 생물안전법에 따른 정부의 조치 결과 발생한 시간손실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 감염에 기인한 우발부채는 수량화할 수 없다.

#### *와이탕이 조약 배상청구*

1975년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모든 마오리는 과거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 설치와 조약의 원칙에 대한 반소(counteraction)를 제기할 수 있다. 와이탕이 재판소에서 배상청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에 들어가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정부가 공기업, 대학, 와낭가 또는 NZIST에 양허한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권고 또는 1989년 국공유 지산림자산법(Crown Forest Assets Act 1989)의 적용을 받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때로 마오리 심판청구인들은 상급법원을 통해 배상청구의 해결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상급심 항소의 성공적인 방어에 실패할 경우 역사적 조약에 관한 부채로 귀결되며 그 액수는 현재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 와카투(Wakatu)

뉴질랜드 정부법률사무소는 뉴질랜드 정부의 권한으로 와카투 토지 소유주 대 법무장관 사건(Proprietors of Wakatu v Attorney-General)(CIV 2010-485-181)에서 법무장관을 대리한다. 이 사건은 1840년대 초 뉴질랜드 남섬의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부가 신탁, 수탁 및 기타 형평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정부가 토지 원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신탁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되찾고 정부의 신탁, 수탁 및 기타 형평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받고자 한다. 2017년 2월, 대법원은 수탁자가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지키는 하지만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결하고 방어와 배상에 대한 추가 공판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해결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 기타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

### 사고보상공사(ACC) 민감성 배상청구(sensitive claim)

ACC는 성폭력 및 성학대 범죄로부터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카운셀링 서비스, 주간보상금 및 기타 수급권과 같은 배상청구(민감성 배상청구)를 지원한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처의 성격상,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피해자가 치료를 시작하는 수가 많다. 2001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제36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최초로 정신적 상처를 치료받은 날짜를 해당 상처를 입은 날짜로 기록한다. 일단 고객이 치료를 시작하면 ACC는 미지급보험금 계정에 부채를 기록하고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였다. ACC는 현재 보유한 배상청구 관련 정보만 가지고는 정신적 상처와 관련한 민감성 배상청구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보고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미지급보험금부채를 기록하지 않았다.

### 형사절차(구제)법

법무부는 2009년 형사절차(구제)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은 자산제한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정부가 구제하도록 요구한다. 법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환경부채

정부는 보통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따라 정부 활동이 환경에 미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주요 정부자산을 관리하는 보고실체들은 잠재적 오염지역을 식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PBE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에 의거, 신뢰성 있는 비용 측정이 가능한 오염지역을 재정상태표에 충당부채로 포함하였다.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로 공시하였다.

#### 2003년 휴가법 준수

근래에 많은 정부 보고실체가 2003년 휴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정값 재검토에 착수하거나 검토를 완료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능한 경우, 당기 또는 전기의 재검토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그러한 의무를 합리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범위에서 수량화불가능 예비비가 존재한다. 각 보고실체들은 잠재적 부채 계산을 위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기관(예: 지역보건부와 학교)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여 문제의 해결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 *와이탕이 조약 배상청구 - 협상에 따른 상대성 지급금*

뉴질랜드 정부가 과거 와이카토 타이누이(Waikato-Tainui) 부족 및 가이 타후(Ngāi Tahu) 부족과의 협상 끝에 서명한 협상증서(Deeds of Settlement)는 상대성 메커니즘(Relativity Mechanism)이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 상대성 메커니즘은 현재 모든 역사적 조약 청산을 위한 총배상금이 1994년 현재가치 금액으로 10억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가이 타후와 와이카토 타이누이 협상의 실제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모든 와이탕이 조약 협상 대비)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상대성 비율은 와이카토 타이누이가 17%, 가이 타후가 약 16%다. 따라서 상대성 배상지급 비용의 시기와 액수가 재정 예측에 포함된 시기 및 액수와 다를 수 있다는 데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 상대성 메커니즘의 해석에 관한 여러 분쟁을 어떻게 타결지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 6 캐나다 2020회계연도 공공회계 연결재무제표 주석 7

### 주석 7. 우발부채

정상적인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 중에 그 궁극적인 성향을 알 수 없는 부채가 우발부채이다. 우발부채는 잠재적 부채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잠재적 부채는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하나 이상의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실제 부채가 될 수 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p>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서 합리적인 추정치를 산정할 수 있을 때 총당부채를 설정하였고 비용은 기타비용 항목에 기록하였다.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가능성이 있지만 액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우발부채를 표시하였다.</p> <p>보증의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 총당 액수를 추정할 수 있을 때 총당부채를 기록하였다. 계속기준으로 총당부채를 재평가하고 총당금의 변동은 그것이 알려지는 연도에 기타비용으로 기록하였다.</p>
측정의 불확실성
<p>우발부채는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치와 잠재적손실 가치의 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청구총당금 추정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최근 법원과 행정심판소의 최근 처분과 결정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재평가 및 조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된 여타 소송에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이 또한 이미 기록된 우발부채에 유의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p> <p>보증에 대한 추정치는 보증의 성격, 손실 경험, 개별 기업의 평가, 특정 분야 또는 시장뿐 아니라 더 넓게는 캐나다 경제와 세계 경제를 고려하며 이는 이미 기록된 우발부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p>

다음은 우발부채에 대한 총당부채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표이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청구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기타 청구 <sup>1</sup>	6,653	10,724
특정 청구	10,788	9,099
포괄적토지청구 <sup>1</sup>	6,726	6,347
정부보증총당부채	761	277
기록된 총당부채 합계	24,928	26,447

<sup>1</sup> 비교수치를 당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재분류하였다(주석 2).

#### (a) 청구

정부의 청구총당금 추정치는 역사적 경험, 사실 및 상황을 기초로 결정하였다. 손실의 추정이 일정 범위의 금액에 근거를 둔 상황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금액은 경영진이 잠재적손실에 대해 내린 최선의 추정치로서 이 금액은 해당범위의 최대값 미만의 금액일 수도 있다. 기존에 발생한 액수를 초과하는 유의한 부채노출이 존재할 수 있다.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청구 및 금액이 발생되지 않은 청구를 약 46억 4,800만캐나다달러(2019년은 85억 2,800만캐나다달러)로 추정하였다.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기타 청구:** 정부를 상대로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미지급청구가 수천 건 있다. 상기 청구는 소담금액이 있는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한다. 이들 소송의 청구 총액은 유의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 결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기록된 증당부채는 잠재적손실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한다.

**특정 청구:** 특정 청구는 역사적 조약에 명시된 캐나다의 채무와 관련한 캐나다 원주민의 과거 불만사항 또는 캐나다가 원주민 기금이나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다루고 있다. 과거 불만사항은 법률체계 또는 특정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소송절차일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소송에서 미지불 법적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원주민과 청산협정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재 593건(2019년은 567건)의 특정 청구가 협상, 협상 수락 또는 심의 중에 있다. 정량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된 청구에 대해서는 부채를 추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추정치는 유사한 청구에 대한 역사적정산을 및 정산비용에 기초한 예상,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한다.

**포괄적토지청구:** 포괄적토지청구는 원주민의 원천적인 토지소유권이 조약 또는 기타 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현재 84건(2019년은 79건)의 포괄적토지청구가 협상, 협상 수락 또는 심의 중에 있다. 정량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된 청구에 대해서는 부채를 추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추정치는 유사한 청구에 대한 역사적정산을 및 정산비용에 기초한 예상도 포함한다.

(b) 정부보증증당부채

정부보증증당부채에는 국유기업과 기타 정부경영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정부 또는 에이전트국유기업이 관리하는 보험프로그램 및 기타 명시적 보증 등이 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정부보증증당부채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미상환원금	미상환원금
인정한도가 있는 보증 (2020년 한도: 411,823캐나다달러, 2019년 한도: 409,125캐나다달러)	254,389	256,602
인정한도가 없는 보증(에이전트국유기업과 기타 정부경영기업의 차입금 포함)	309,909	294,734
합계	564,298	551,336
차감: 보증증당부채	761	277
보증에 따른 순노출	563,537	551,059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 제11절(감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정한도는 입법, 법률계약 또는 기타 일정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에 명시된 정부 기관의 다양한 종류의 권한의 총합계를 나타낸다. 미상환원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증당된 보증의 총액을 나타낸다.

(c) 기타

**불복청구세액:** 우발부채는 과거 과세된 연방세에 대해 캐나다조세심판원, 캐나다연방법원 또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에 불복청구가 제기된 세금을 포함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43억 7,300만캐나다달러 (2019년은 44억 6,700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불복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손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불복추계액을 국세관련미지급액 또는 납세자미수액감면

계정에 기록하였다.

*국제기구*: 정부는 특정 국제기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수의상환주식자본을 보유 중이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수의상환주식자본은 365억 3,3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347억 5,000만캐나다달러)에 이른다. 수의상환주식자본의 지급을 요청한 국제기구는 없었고 정부가 지급한 금액도 없었다(2019년에도 없음).

*에이전트국유기업의 보험프로그램*: 정부에 대해 보험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에이전트국유기업은 네 곳이다. 에이전트국유기업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한다.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는 회원은행, 신탁 또는 대출회사의 예금자에게 최대 10만캐나다달러의 적격 예금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한다. 캐나다주택금융공사는 캐나다 민간건설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보험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근거하여 주택저당증권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투자자 및 캐나다주택담보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주택신탁이 발행한 채권 투자자의 원리금 적시 납부를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보증기금을 운영한다. 캐나다수출개발공사는 수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거래 및 해외투자보험을 제공한다. 캐나다농업조합금융은 주요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단체신용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액은 총 1조 8,021억 4,3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1조 7,727억 8,500만캐나다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4개 공사 모두 현재청구비용과 미래청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석8. 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

환경부채는 오염지역을 현재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자산복구의무는 유형자본자산의 수명기간 종료 시점에 이를 폐기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p><b>유의적인 회계정책</b></p>
<p>오염지역의 복원을 위한 환경부채는 첫째, 환경기준이 존재하고, 둘째, 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 하며, 셋째,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수용하며, 넷째,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추정액이 산출된다는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하였다. 환경부채는 오염지역을 오염 이전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 즉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부채의 청산 또는 소멸에 요구되는 미래현금흐름이 추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복원 완료에 대해 추정된 연수를 감안한 정부의 차입비용을 반영한다.</p> <p>불발탄(UXO) 피해유산지역에 대한 부채는 적절한 측정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시점에 인식하였다. 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현재의무이며 그 청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희생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한다.</p> <p>자산복구의무는 첫째, 정부가 유형자본자산에 대한 폐기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합의, 계약, 입법 또는 의제의무 또는 형평법적 의무가 있고, 둘째, 폐기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고, 셋째, 정부가 자산의 폐기를 위해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째, 합리적인 추정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네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폐기비용은 자산에 대한 잔여내용연수의 추정을 기반으로 자본화하여 상각하였다.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면 자산의 폐기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산복구의무는 자산의 폐기에 요구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서 그 액수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며 관련 지역, 시설 또는 자산이 용역 제공에서 벗어날 때 자산복구의무가 청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예측합의치와 캐나다은행의 역사적 인플레이션율 및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였다. 할인율은 의무의 최초인식일에 계산된 의무 청산까지의 기간 및 추후 예상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부 차입비용의 가중평균율이다.</p> <p>기록된 부채는 필요에 따라 현재가치조정, 인플레이션, 새로운 의무 및 경영진이 도출한 추정치의 변화와 실제 발생비용에 대해 매년 조정하였다.</p> <p>정부 책임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였다.</p>
<p><b>측정의 불확실성</b></p>
<p>환경부채와 자산복구의무는 오염지역 복원활동 또는 자산폐기에 사용되는 신기술, 추정미래비용에 대한 현재가치할인법의 사용, 그리고 모든 지역이 복원 또는 자산폐기비용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완전한 평가를 완료하지는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측정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기본가정의 변경, 지출의 시차, 적용된 기술, 환경기준의 개정 또는 규제요건의 변화는 기록된 환경부채에 유의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p>

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오염지역 총복원부채	7,325	6,478
차감: 예상회수금	(25)	(23)
오염지역 순복원부채	7,350	6,455
기타 환경부채	110	115
자산복구의무	7,186	6,692
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 합계	14,646	13,192

(a) 오염지역의 복원

정부의 “연방오염지역행동계획(Federal Approach to Contaminated Sites)”은 위험기반 접근법에 기반한 오염지역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이 정책에 따라 정부는 연방토지에서 확인된 오염지역 또는 정부가 복원의 책임이 있는 토지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일관성 있게 분류, 관리 및 기록하였다. 이 체계적 접근법은 고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한정된 국가자원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가장 큰 위험을 제기하는 고위험 지역에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오염이 존재할 수 있어 평가, 복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6,860개 지역(2019년에는 7,011개 지역)을 식별하였다. 그 가운데 2,444개 지역(2019년에는 2,433개 지역)은 조치가 요구되어 총 71억 1,7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2억 3,000만캐나다달러)를 부채로 계상하였다. 이 추정부채는 환경전문가들이 수행한 현장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또한 복원에 착수해야 할 오염지역의 수를 예측하는 통계모형에 현재 비용과 역사적 비용을 적용하여 미평가 오염지역군의 부채를 추정하였다. 미평가 오염지역군은 3,562개 지역(2019년에는 3,673개 지역)으로 그 중 1,464개 지역(2019년에는 1,478개 지역)이 복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명목으로 추정부채 2억 5,8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2억 4,800만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두 추정부채를 합친 73억 7,5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4억 7,800만캐나다달러)는 2020년 3월 31일에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오염 이전의 토지 사용을 위한 현행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데 요구되는 경영진의 최선추정부채를 나타낸다.

나머지 854개 지역(2019년에는 905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복원지역 가운데 일부는 다양한 시험 및 평가단계에 와 있으며 복원이 요구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치가 결정되는 대로 부채를 보고할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정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포기를 예상하지 않는다(유의한 환경영향 또는 국민건강위협이 없을 가능성이 큼). 이들 지역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하는 시점에 복원부채를 인식할 예정이다.

추정부채가 미래현금요구에 근거할 경우 부채금액은 예상 CPI 상승률 2.0% (2019년에는 2.2%)를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비할인 금액에 포함된다. 추정미래지출의 할인에는 캐나다 정부국채 제로쿠폰(zero-coupon) 실제 수익률곡선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차입비용을 적용하였다. 2020년 3월 할인율은 1년물 0.37%(2019년에는 1.55%)에서 30년물 이상 1.37%(2019년에는 1.92%)의 분포를 나타낸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총 지역수	부채가 있는 지역수	추정 부채	총추정 비할인 지출	추정 회수액	총 지역수	부채가 있는 지역수	추정 부채	총추정 비할인 지출	추정 회수액
과거 광물 채광지역 <sup>1</sup>	127	106	4,319	6,305	25	129	109	3,325	6,168	23
방사성물질 <sup>2</sup>	7	6	881	966	-	9	7	1,059	1,172	-
군사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sup>3</sup>	443	214	410	422	-	449	210	437	539	-
연료 관련 관행 <sup>4</sup>	1,738	1,140	399	406	-	1,769	1,186	387	377	-
해양시설/수생지역 <sup>5</sup>	2,344	1,127	589	610	-	2,453	1,118	525	548	-
매립지/폐기장 <sup>6</sup>	1,061	720	235	241	-	1,063	715	252	212	-
기타 <sup>7</sup>	1,140	595	542	551	-	1,139	566	493	511	-
합계 .....	6,860	3,908	7,375	9,501	25	7,011	3,911	6,478	9,527	23

- 1 중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등의 광업활동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 2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등 과거 원자력 운영으로 인한 오염.
- 3 유류 취급 및 보관 활동, 폐기장, 건축물에 사용된 금속/PCB 함유 페인트 등의 활동이 석유계탄화수소, PCB, 중금속과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우발적 오염을 초래한 군사활동 및 과거 군사지역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 4 연료 보관 탱크의 누출사고 등 주로 연료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한 오염 또는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및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과거의 연료 취급 관행으로 인한 오염.
- 5 부두 시설, 항만, 항법시스템, 등대, 수문관측소의 연료 보관/취급, 등대의 금속 기반 페인트 사용이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등 해양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 6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BTEX, 기타 유기오염물 등 과거의 매립지/폐기장으로 인한 오염 또는 매립지/폐기장 퇴적물질의 침출로 인한 오염.
- 7 농업지역의 살충제, 제초제, 비료 사용, PCB 사용, 또한 소방훈련지역, 사격장 및 훈련장, 공항, 철도, 도로의 자산운영에서 연료 보관/취급, 폐기장 및 화학물질 보관지역의 활동이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BTEX 및 기타 유기오염물과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발생원으로 인한 오염.

또 2020년에 복원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염지역에 대한 부채를 기록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386개 지역(2019년에는 589개 지역)을 폐쇄하였다.

(b) 기타 환경부채

정부는 제거작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UXO) 의심지역 약 484개소(2019년에는 532개소)를 식별하였다. 그 중 43개소(2019년에도 43개소)가 UXO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UXO 확정 지역 9개소(2019년에도 9개소)의 제거 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1억 1,1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1억 1,500 캐나다달러)를 부채로 계상하였다. 올해 복원이 완료된 지역은 없다(2019년은 1개소). 나머지 475개 의심지역(2019년에는 523개소)은 현재 평가단계에 있으며 합리적인 추정치는 결정할 수 없다. 의심지역 중에서 23개소에 대해서는 제거 활동을 위한 부채의 계상 가능성이 크고 50개소는 확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402개소는 가능성이 낮다.

(c) 자산복구의무

자산복구의무는 71억 8,6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6억 2,200만캐나다달러)로 그 중에서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원자력시설 해체에 71억 8,5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6억 1,400만캐

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당해연도 자산복구의무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기초잔액	6,622	6,482
부채 청산	(391)	(353)
추정치 변경	701	242
자동증가비용 <sup>1</sup>	254	251
기말잔액	7,186	6,622

1 자동증가비용이란 자산복구의무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채를 구성하는 계획 프로젝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된 비할인 미래지출은 162억 6,300만캐나다달러(2020년 3월 31일에는 159억 100만캐나다달러)다.

총당부채 결정에 사용된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2020	2019
가중평균할인율	3.78%	3.84%
할인기간	165년	145년
장기 인플레이션율	1.70%	1.70%

오염지역, UXO 피해지역 및 자산복구의무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환경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